

연구보고 2019-37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2019.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 제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 현 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 성 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시 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조사기관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
-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 발생 양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등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이전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요인 등에 대해 분석
-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 양상에 따라,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성폭력 예방,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선제적인 범죄 대응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향상

□ 조사설계

〈요약 표 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19세~64세 일반국민
	조사 모집단	-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제외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제외
표본추출틀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
표본크기		- 10,000명(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98%p)
표본 조사구		- 1,000 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가구당 1명)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 : 특/광역시 11개, 도지역 11개)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동부 내 아파트/일반

구분	내용
표본배분	-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
표본추출	- 1차 추출 단위: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 2차 추출 단위: 가구 → 계통추출 - 3차 추출 단위: 가구원 → 배분법
가중치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1인 가구 보정, 가구원 추출률 보정, 사후 가중치 값 작성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

2. 조사 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징

- 전체 응답자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0,106명
- 성별 분포는 여성 48.7%, 남성 51.3%
- 연령 분포는 19세~35세 미만 30.9%, 35세~50세 미만 34.7%, 50세~65세 미만 34.4%
-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4.0%, 고등학교 졸업 43.8%, 대학교 졸업 이상 52.2%
- 결혼상태는 미혼 31.5%, 결혼해서 함께 거주 60.0%, 기타(사실혼, 별거, 이혼, 사별 등) 8.5%로 나타남.
-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14.6%,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 가구 62.3%,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49.5%,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22.7%, 기타(형제자매, 손자녀 등) 14.2%로 나타남.
- 취업여부는 조사대상자 중 78.3%가 취업상태였고, 21.7%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0%, 500만원 이상이 28.7%, 소득 없음이 0.6%로 나타남.

□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 중 72.0%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4.3%, '전혀 모른다' 13.7% 순으로 응답하였음. 남성 응답자의 경우 69.7%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15.6%가 '전혀 모른다', 14.7%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가장 많이 접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5%가 'TV'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인터넷, SNS'로 26.4%였음.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여성의 64.9%와 남성의 62.1%가 'TV'를 통해, 여성의 25.6%와 남성의 27.2%가 '인터넷, SNS'를 통해 정부의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다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여성 90.0%, 남성 90.6%),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여성 90.0%, 남성 90.6%),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이다'(여성 86.8%, 남성 86.1%)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여성 63.6%, 남성 63.7%),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친고죄 폐지)으로 변경되었다'(여성 66.5%, 남성 68.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68.0%)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입소시설)'(49.8%), '여성긴급전화 1366'(49.0%),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45.0%),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제도'(43.7%) 순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25.9%)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27.4%)에 대한 인지도는 20%대로 다른 공공서비스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2019년에 처음 포함된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제도'에 대해 여성은 31.6%, 남성은 29.0%가 안다고

응답하였음.

-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조사결과를 2013년, 2016년과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13년 43.2%, 2016년 44.3%, 2019년 49.0%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2013년 35.2%, 2016년 35.4%, 2019년 45.0%로, 매 조사마다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2013년 25.7%에서 2016년 20.5%로 인지도가 감소했으나, 2019년에 35.2%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음. 가장 중요한 정책 순위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과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음. 3순위부터는 순위별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3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4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3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5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로 응답하였음. 6순위는 남녀 모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7순위로 여성은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남성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 성폭력 관련 인식을 1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함.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의 구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함. 전체 응답자 평균은 2.0점이며 여성은 2.0점, 남성은 2.1점으로 나타남.
-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은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53.2%)',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52.3%)'인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3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은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39.9%)',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7.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36.2%)',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32.7%)' 4개 항목으로 나타남.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에 52.6%가 '그렇다'고 응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여성과 남성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을 50% 이상이 인식하고 있음.

-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15개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10%p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2개 항목으로,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에 여성은 26.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38.8%가 '그렇다'고 응답해 12.7%p 차이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의사표시에 대해 남성이 좀 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항목에서는 여성은 46.4%가, 남성은 57.9%가 '그렇다'고 응답해 11.5%p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9년에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3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인식을 조사함.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에 8.4%가,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에 7.4%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촬영물 범죄에 있어 성관계의 동의가 촬영에 동의가 아니라는 점, 촬영에 동의가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목에 20.5%가 '그렇다'고 응답해 불법촬영물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있음이 나타남.

□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은 2019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현재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로 7점 척도 문항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함.
- 지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을 7점 척도(매우 감소했다(1점),

그대로이다(4점), 매우 증가했다(7점))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가 4.7점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3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증가했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이 56.5%로 과반을 차지함. 그 뒤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잘 되지 않음(18.3%)’,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16.8%)’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7점 만점에 평균이 5.0점으로 나타남. 여성 응답자의 평균은 5.2점, 남성 응답자의 평균은 4.8점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있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총 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음.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73.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3.9%,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62.0%,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58.1%,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48.6%,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46.5%,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45.8%,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41.7%,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34.3%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20.6%,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13.4%,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13.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2.6%,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2.1%,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11.2%,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1.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11.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10.7%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 지난 1년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0.7%, 음란전화 등 수신 2.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0.6%, 성희롱 0.8%로 나타남. 강간미수,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2.3%, 성기노출 0.1%로 나타났으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0.1%, 불법촬영, 성희롱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평생동안 성폭력 피해율

- 평생동안의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나눠서 보면 여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7%, 강간미수 0.6%, 강간 0.2%였고,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수반 모두),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18.5%였음.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등 22.9%, 성희롱 9.8%였음. 남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2%,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1%, 음란전화 등 10.5%,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1.9%, 성희롱 1.6%였음.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피해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 PC,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음란 전화 등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2.1%, 35세~50세 미만 23.7%, 19세 미만 14.8% 순이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에서는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43.8%,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42.9%,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36.7%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6.3%,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3.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6.9% 순이었음.
-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49.0%, 35세~50세 미만 27.7%, 19세 미만 12.4% 순이었음. 보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53.0%,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36.9%,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30.5%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65.2%,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6.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4.8% 순이었음.

○ 불법촬영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64.6%)이 가장 높고, 35세~50세 미만 17.9%, 19세 미만 13.4%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4.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4.6%였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음.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

-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남성 응답자 중 피해 경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로 나타남.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49.0%,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45.6%, '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12.4%,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6.1%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51.8%,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48.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38.5%였음.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복수응답)는 '인스턴트 메신저' 5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38.5%, '블로그' 33.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5.5%, 'P2P 사이트' 6.9% 순이었고, '기타' 응답도 16.8%가 있었음.

○ 성기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노출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69.6%, 19세~35세 미만 23.6%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8.1%, 3회 이상 31.3%, 2회 30.6% 순이었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및 학교 주변 59.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39.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0.6% 순이었음.
-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57.6%, 19세~35세 미만 30.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1.5%, 2회 30.7%, 3회 이상 27.8% 순이었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및 학교 주변 39.1%,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23.2%, 인구 밀집 상업지 17.8% 순이었음.

○ 성희롱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8.4%, 19세 미만 24.2%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49.5%, 1회 25.4%, 2회 25.0%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113.3%, 전혀 모르는 사람 35.1%였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인구 밀집 상업지 49.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3.0%,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9.2%, 학교 및 학교 주변 25.9% 순이었음.
-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82.9%, 19세 미만 16.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68.6%, 1회 16.1%, 2회 15.3%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103.1%, 전혀 모르는 사람 10.4%였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0.9%, 인구 밀집 상업지 22.3% 순이었음.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2%, 19세 미만 32.4%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7.7%, 2회 32.4%, 3회 이상 29.9%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81.1%,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9.4% 순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81.0%, 인구 밀집 상업지 20.9% 순이었음.
-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6.5%, 19세 미만 24.8%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4.6%, 3회 이상 33.4%, 2회 21.9%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83.7%, 전혀 모르는 사람 37.0% 순이었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5.8%, 인구 밀집 상업지 34.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22.5% 순이었음.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피해 경험

-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8.4%, 19세 미만 22.8% 순으로, 35세 미만이 대다수였음. 피해 횟수는 1회 50.2%, 3회 이상 26.4%, 2회 23.4%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1.8%, 전혀 모르는 사람 19.4% 순이었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인구 밀집 상업지 46.7%,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5%, 집 18.0%,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10.4% 순이었음.

○ 강간미수 피해 경험

- 남성 응답자 중 강간미수 피해 경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7.4%, 19세 미만 25.5%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73.3%, 2회 20.0% 순으로 1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68.7%, 전혀 모르는 사람 31.3%였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42.4%, 집 23.9%, 인구 밀집 상업지 19.5%,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15.1% 순이었음.

○ 강간 피해 경험

- 남성 응답자 중 강간 피해 경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0%, 19세 미만 28.3%, 35세~50세 미만 12.7%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58.9%, 2회 21.1%, 3회 이상 20.0% 순이었음.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0.9%, 전혀 모르는 사람 17.7%, 친인척(가족포함) 12.7%였음.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집 45.2%, 인구 밀집 상업지 42.8%,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13.5% 순이었음.

□ 성폭력 피해 영향

○ 신체적 문제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6.9%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고, 3.1%는 있다고 응답했음. 여성의 경우 3.7%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성 응답자 중에서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였음.
- 신체적 문제를 입었던 경우에 대해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을 여성 응답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통 경험 57.3%, 수면 장애를 겪음 49.3%,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14.9%, 섭식장애를 겪음 8.3%, 성기에 상처를 입음 6.2%, 복통 경험 4.7%, 성병에 걸림 2.4%, 임신 1.1% 순이었음.
-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병원치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 9.1%가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치료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 10.6%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렸다고 응답함.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시간적 손실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시간적 손실 기간을 살펴보면, 2주 미만 37.9%, 2주~4주 미만 35.2%, 4주 이상 26.8%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의 정신적 영향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7%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 응답자 중 24.4%가, 남성 응답자 중 7.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여성 응답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적 고통의 내용(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4%,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6%,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6.8%, ‘불안 및 우울’ 20.7%,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3.1%,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1.8%,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0.2% 순이었음. 남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2%, ‘불안 및 우울’ 30.1%,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27.3%,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4.9% 순이었음. 여성의 경우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3.4%, 남성 응답자 중 6.5%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심리치료 및 상담 84.3%, 약물 치료 29.0%,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22.2% 순으로 나타남.

○ 2차 피해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11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2차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
-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6.3%,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6.2%,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6%,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3.8%,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7% 순으로 나타났음.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3.7%,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8%,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2.6% 순이었음.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7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생활하는 중에 2차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
-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4%,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0.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8%,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0.6% 순이었음.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1.8%,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6% 순이었고,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나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를 경험한 남성 피해자는 없었음.

○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제시된 16개 항목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했지만, 남성은 10개 항목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27.3%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고, 남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49.8%,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2.9%,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19.5%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음.

□ 성폭력 피해 대응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 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방법(복수응답)으로 여성의 경우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64.1%, ‘소리를 질렀다’ 22.1%, ‘화를 냈다’ 17.6%, ‘몸을 빼거나 화제를 돌렸다’ 13.7%,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11.1%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59.9%,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16.8%,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갔다’ 14.9%, ‘화를 냈다’ 13.5% 순이었음.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 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9%,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5%, ‘공포 심에 몸이 굳어서’ 11.1%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가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2.3%,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5% 순이었음.

○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61.7%가 본인인, 40.1%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여성 40.1%가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함이나 불쾌한

상황을 겪었다고 응답함.

-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음' 57.1%,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음' 46.0%, '불쾌함/수치심을 느낌' 45.9% 등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경험한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남.
-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2.4%,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5% 순으로, 남성 응답자의 경우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0% 순으로 응답하였음.

○ 관련 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각 대상별로 도움 요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이웃이나 친구' 61.7%, '가족이나 친척' 39.6%, '선후배' 16.7%,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7.1%,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7.0%,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2.7%, '여성긴급전화 1366' 2.1%, '해바라기센터' 1.8%,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1.4% 순으로 나타났음. 남성은 '이웃이나 친구' 52.7%, '선후배' 43.2%,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18.3%, '가족이나 친척' 14.0% 순이었고, 이 외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6.4%,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22.0%,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14.9%,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6.7% 순으로 나타났음. 남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각각 18.0%,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1.4% 순이었음.

3. 정책제언

□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과 수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인지도가 낮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지속적 협력이 필요함.

-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 특성을 반영한 예방정책 추진
 -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안전' 관점에서 선제적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짐.
 - 또한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대응이 요구되며,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성폭력 피해를 가중하는 무거운 범죄 임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지원정책 내실화
 - 피해 지원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가 여러 피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인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성폭력은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을 야기하는 위험한 요인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성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

○ 중장기적 관점의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 체계 구축

- 미투 이후 범정부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되는 등 성폭력 현안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여성폭력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지속적 정책과제 개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임.

□ 향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

-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성폭력 실태조사는 많은 내용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당해 연도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만큼 앞선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 시점에 따른 성폭력의 실태 및 인식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조사 연도의 1차적인 결과보고서 이후, 다음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심층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피해 경험의 과소추정 문제 해소

- 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꾸준히 표본 수를 늘려왔으나, 피해 경험 유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 설계의 한계 때문에 피해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 피해 경험의 과소추정을 해결하고 가능한 현실성 있는 피해율을 조사에서 밝히기 위해서 표본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선별 문항을 이용해 실제 응답률과의 차이를 비교해 실태를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II.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9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11
가.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동향	11
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범죄자) 현황	16
다. 성폭력 피해자 현황	19
2.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27
가. 성폭력 관련법	27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30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현황	39
가. 성폭력 상담소	39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43
다. 해바라기 센터	46
라. 여성긴급전화 1366	50
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2
III. 조사설계	55
1. 조사개요	57
가. 표본설계 개요	57
나. 모수추정	65
2. 조사내용	72
가. 조사표 개발	72
나. 조사표 내용	74

3. 조사방법	79
4. 무응답 분석	81
가. 응답률 산정 방법	82
나. 무응답 분석	85
5. 오차분석	91
가. 오차분석 방법	91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92
IV. 조사결과	97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00
2.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04
가.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인지도	104
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108
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10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112
가.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112
나.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17
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21
4. 성폭력 피해 실태	127
가. 성폭력 피해율	128
나.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144
5. 성폭력 피해 영향	167
가. 신체적 문제	167
나. 정신적 고통	175
다. 2차 피해	183
라.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187
6. 성폭력 피해 대응	188
가. 성폭력 대응방법	188
나.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190
다. 관련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193

V. 정책 방안	197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199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199
나.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99
다. 성폭력 관련 인식	201
라. 성폭력 피해실태	204
마. 성폭력 피해 영향	208
바. 성폭력 피해 대응	211
2. 정책제언	212
가.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12
나. 향후 실태조사 개선방안	215
■ 참고문헌	217
■ 부 록	219
부록 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지	221

표 목 차

〈표 I-1〉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개요	7
〈표 II-1〉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12
〈표 II-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8-2017)	13
〈표 II-3〉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14
〈표 II-4〉 풍속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15
〈표 II-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16
〈표 II-6〉 강제추행 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17
〈표 II-7〉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18
〈표 II-8〉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18
〈표 II-9〉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19
〈표 II-10〉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19
〈표 II-11〉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	20
〈표 II-12〉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21
〈표 II-13〉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3
〈표 II-14〉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3
〈표 II-1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24
〈표 II-16〉 강제추행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25
〈표 II-17〉 성폭력 관련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	28
〈표 II-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31
〈표 II-19〉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09.26.)	33
〈표 II-20〉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7.11.14.)	34
〈표 II-2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2017.11.29.)	35
〈표 II-2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02.22.)	35
〈표 II-2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02.27.)	36
〈표 II-24〉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07.)	37
〈표 II-25〉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01.24.) ...	38

〈표 II-26〉 성폭력 상담소 현황(2014-2019)	39
〈표 II-27〉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0-2017)	40
〈표 II-28〉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8)	41
〈표 II-29〉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2010-2018)	42
〈표 II-30〉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피해 유형(2010-2018)	43
〈표 II-31〉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2010-2018)	44
〈표 II-3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2010-2018)	45
〈표 II-3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0-2018)	45
〈표 II-34〉 해바라기 센터 현황(2010-2019)	47
〈표 II-35〉 해바라기센터 지원현황(전체)(2013-2018)	48
〈표 II-36〉 해바라기 센터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2013-2018)	48
〈표 II-37〉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이용 현황(2013-2018)	49
〈표 II-38〉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2013-2018)	50
〈표 II-39〉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1인당 지원 건수(2013-2018)	50
〈표 II-4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현황(2010-2019)	51
〈표 II-4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 유형(2010-2018)	51
〈표 II-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8년 지원 현황	52
〈표 II-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지원 현황(1.1~6.30)	53
〈표 II-4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세부 현황(1.1~6.30)	53
〈표 II-4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유형별 현황(1.1~6.30)	54
〈표 II-4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1.1~6.30)	54
〈표 III-1〉 시/도별 모집단 현황	58
〈표 III-2〉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59
〈표 III-3〉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60
〈표 III-4〉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 특성	60
〈표 III-5〉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61
〈표 III-6〉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62
〈표 III-7〉 층별 표본배분 결과	63
〈표 III-8〉 접촉 우선 예시	65
〈표 III-9〉 2019년 본 조사 항목 수정 검토(안)	72
〈표 III-10〉 예비조사 설계 개요	74

〈표 III-11〉 2016년과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문항 수 비교	74
〈표 III-12〉 2016년 대비 2019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76
〈표 III-13〉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78
〈표 III-14〉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81
〈표 III-15〉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83
〈표 III-16〉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86
〈표 III-17〉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88
〈표 III-18〉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93
〈표 III-19〉 여성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94
〈표 III-20〉 여성의 학력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94
〈표 III-21〉 여성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95
〈표 III-22〉 여성의 혼인상태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95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표 IV-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102
〈표 IV-3〉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104
〈표 IV-4〉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105
〈표 IV-5〉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인지경로)	106
〈표 IV-6〉 성폭력 관련법·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107
〈표 IV-7〉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109
〈표 IV-8〉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2013, 2016, 2019)	110
〈표 IV-9〉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111
〈표 IV-10〉 성폭력 관련 인식 : 전체	113
〈표 IV-11〉 성폭력 관련 인식 : 여성	116
〈표 IV-12〉 성폭력 관련 인식 : 남성	117
〈표 IV-13〉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18
〈표 IV-14〉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	119
〈표 IV-15〉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	120
〈표 IV-16〉 현재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120
〈표 IV-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체	122
〈표 IV-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여성	123

〈표 IV-19〉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남성	124
〈표 IV-20〉 범죄피해두려움 문항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2016년 2019년 결과 비교	126
〈표 IV-2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29
〈표 IV-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체	131
〈표 IV-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여성	133
〈표 IV-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남성	134
〈표 IV-25〉 평생 성폭력 피해율	136
〈표 IV-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전체	137
〈표 IV-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여성	140
〈표 IV-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남성	141
〈표 IV-29〉 2013년, 2016년, 2019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143
〈표 IV-30〉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44
〈표 IV-31〉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45
〈표 IV-32〉 음란전화 등의 피해 경험	147
〈표 IV-33〉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50
〈표 IV-34〉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평생	151
〈표 IV-35〉 불법촬영 피해 경험	151
〈표 IV-36〉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	153
〈표 IV-37〉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54
〈표 IV-38〉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54
〈표 IV-39〉 성기 노출 등 피해 경험	155
〈표 IV-40〉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56
〈표 IV-41〉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평생	157
〈표 IV-42〉 성희롱 피해 경험	158
〈표 IV-43〉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159
〈표 IV-44〉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59
〈표 IV-4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160
〈표 IV-4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62
〈표 IV-47〉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피해 경험	162
〈표 IV-48〉 강간미수의 피해율 추이: 평생	164

〈표 IV-49〉 강간미수 피해 경험	164
〈표 IV-50〉 강간의 피해율 추이: 평생	165
〈표 IV-51〉 강간 피해 경험	166
〈표 IV-52〉 신체적 문제 유무	167
〈표 IV-53〉 신체적 문제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168
〈표 IV-54〉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의 관계	169
〈표 IV-55〉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	170
〈표 IV-5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171
〈표 IV-57〉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172
〈표 IV-58〉 신체적 문제 관련 병원치료 유무	173
〈표 IV-59〉 신체적 문제 관련 총 치료기간	173
〈표 IV-60〉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피해사실 고지 여부	173
〈표 IV-61〉 피해자가 부담한 신체적 문제 관련 치료비용	174
〈표 IV-62〉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174
〈표 IV-63〉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175
〈표 IV-64〉 정신적 고통 유무	175
〈표 IV-65〉 정신적 고통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176
〈표 IV-6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177
〈표 IV-67〉 정신적 고통 내용(복수응답)	178
〈표 IV-68〉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179
〈표 IV-69〉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 유형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180
〈표 IV-70〉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무	181
〈표 IV-71〉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형(복수응답)	182
〈표 IV-72〉 평생 성폭력 피해자가 부담한 정신적 고통 관련 치료나 상담비용	182
〈표 IV-73〉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183

〈표 IV-74〉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183
〈표 IV-75〉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들은 경험)	184
〈표 IV-76〉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생활에서의 경험)	186
〈표 IV-77〉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변화(복수응답)	188
〈표 IV-78〉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경우, 대응방법(복수응답)	189
〈표 IV-79〉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	190
〈표 IV-80〉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유무	190
〈표 IV-81〉 경찰에 신고한 사람(복수응답)	191
〈표 IV-82〉 경찰 신고 시기(복수응답)	191
〈표 IV-83〉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지 유무	192
〈표 IV-84〉 수사/사법체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불편함(복수응답)	192
〈표 IV-8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93
〈표 IV-86〉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	194
〈표 IV-87〉 주위 도움 요청 대상	194
〈표 IV-88〉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95

그림 목 차

[그림 II-1]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2017)	11
[그림 II-2] 성폭력 이외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2008-2014)	12
[그림 III-1] 전체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86
[그림 III-2]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89
[그림 III-3] 방문횟수별 응답률	90
[그림 III-4]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91
[그림 IV-1] 성폭력 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비교(2016, 2019)	108
[그림 IV-2]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전체 응답자의 '그렇다' 응답)	114
[그림 IV-3] 성별 성폭력 관련 인식 차가 큰 항목('그렇다' 응답 차 8%p 이상) ..	115
[그림 IV-4]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그렇다' 응답 기준)	122
[그림 IV-5]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2016, 2019)	125
[그림 IV-6] 성별 음란전화 등의 피해 유형	146
[그림 IV-7] 음란 전화 등의 가해자 유형 비교(2016년, 2019년)	147

I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 또한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²⁾,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결과가 향후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현재 한국의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 발생 양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등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이전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국정과제 66-4)”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1.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대응, 2.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내실화,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4.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5개 대과제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월 촉발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 경험을 폭로하고 피해사실에 공감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종식을 원하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발생 실태와 피해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2013년 2.4점에 비해 2016년 2.0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최종검색일: 2019.12.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최종검색일: 2019.12.10.)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의 근거 마련, 수사 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및 차단하는 'FAST TRACK' 시행, 긴급 '신고' 버튼 설치 등 불법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 전방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공식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29,090건이었으나 2015년 31,063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 29,357건으로 조금 감소했으나 2017년 32,824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비중은 2005년 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0.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성폭력에 관련한 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발생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공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그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성폭력 예방,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선제적인 범죄 대응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연구 진행을 위해 우선 성폭력 관련 실태 및 통계자료,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범죄분석 및 범죄통계, 범죄 피해자조사 등 성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통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새로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 관련 개정사항과 2018년 이후 발표된 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참고하여 이를 성폭력 실태조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 및 추가하였다. 최근 사회환경 및 법 제도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성폭력 발생 양태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

하여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하되,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자료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에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보완하였다. 또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조사 특성상 발생하는 응답 부담 및 응답 거부, 불충실한 응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 및 평생동안 성폭력 경험률과 함께 2019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률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평생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기준으로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 인식 문항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통념에 대해 분석하였고,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도 정도, 범죄피해 두려움 등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시행될 2022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개선될 방안을 제시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시행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성폭력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관련 통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조사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설계하고 추진하였다.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연구 기획, 운영을 총괄하고 조사설계 및 조사항목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한국 께럽’에서 실태조사의 실사 전반을 담당하고, 표본 설계 등의 조사 관련 기술 지원을 하는 협업체제로 연구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만 19세~만 64세 일반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의 2017년 등록센서스를 이용하여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을 마련하고,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표본 가구는 계통 추출법으로 10가구를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 불응, 불능 등을 고려하여 예비 표본 가구를 병행하여 관리하였다. 가구 내 가구원은 2개 조사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배분표에 따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적격 가구원 중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8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장 실사는 한국갤럽연구소의 직영 지방 실사조직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사전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 방식을 충분히 습득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후 성별, 연령별 배분표 순서에 따라 응답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내용의 특성상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조사원 면접으로 진행하여 불성실 응답에 대응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최소 4회 이상 재방문하도록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였으며, 그 이후에도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비 표본 가구 명부에 따라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구축한 실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조사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보다 내실있게 조사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조사설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Ⅲ. 조사설계'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셋째, 조사표 보완 및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실무자 간담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현황을 조사 항목에 담고,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 목표로 해야 할 점 등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조사 운영 및 원활한 진행, 실태조사 과정 관리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1〉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19세~64세 일반국민
	조사 모집단	-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제외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제외
표본추출틀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
표본크기		- 10,000명(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0.98\%$)
표본 조사구		- 1,000 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가구당 1명)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 : 특/광역시 11개, 도지역 11개)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동부 내 아파트/일반
표본배분		-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
표본추출		- 1차 추출 단위: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 2차 추출 단위: 가구 → 계통추출 - 3차 추출 단위: 가구원 → 배분법
가중치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1인 가구 보정, 가구원 추출률 보정, 사후 가중치 값 작성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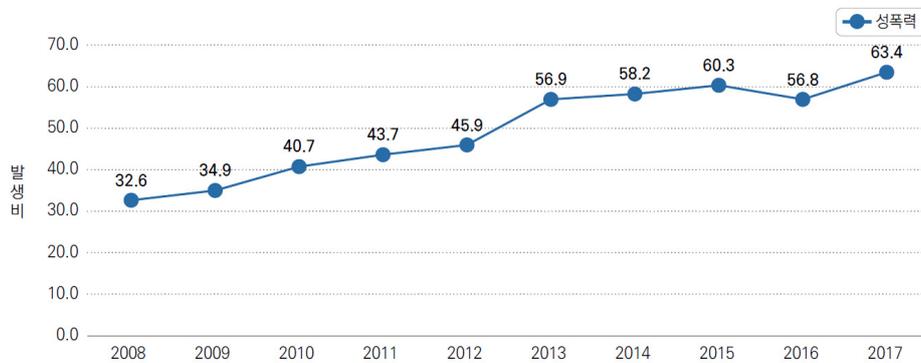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11
2.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27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현황	39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가.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동향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2018)」에 따르면 2017년 성폭력 범죄는 32,824건 발생했으며, 인구 10만명당 63.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그림 II-1]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³⁾는 2008년 32.6에서 2017년 63.4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다.



출처: 대검찰청(2017). 「범죄분석」 p.14

[그림 II-1]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 추이(2008~2017)

또한 <표 II-1>의 강력범죄(흉악)의 발생 건수와, [그림 II-2]의 성폭력 이외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를 [그림 II-1]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른 강력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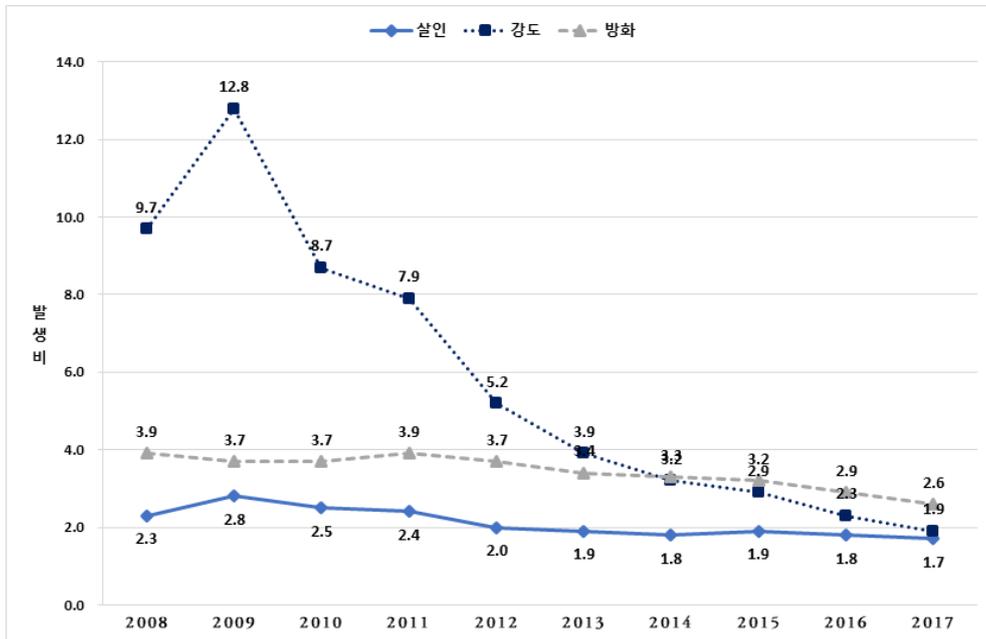
3)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비율

〈표 II-1〉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2008	24,023	1,120	4,828	16,129	1,946
2009	27,014	1,390	6,381	17,377	1,866
2010	28,134	1,262	4,402	20,584	1,886
2011	29,382	1,221	4,021	22,168	1,972
2012	28,895	1,022	2,626	23,365	1,882
2013	33,780	959	2,001	29,090	1,730
2014	34,126	938	1,618	29,863	1,707
2015	35,139	958	1,472	31,063	1,646
2016	32,963	948	1,181	29,357	1,477
2017	36,030	858	990	32,824	1,358

출처: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출처: 대검찰청(2017). 「범죄분석」 자료로 연구진 작성

[그림 II-2] 성폭력 이외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2008-2014)

성폭력 범죄를 10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2.5%에서 2017년 16.9%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강제추행의 경우 2008년 37.7%에서 2012년 46.9%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 48.7%로 현재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2008년 3.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4.9%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20.2%로 성폭력 범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8-2017)

(단위: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 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계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 (-)	378 (2.3)	854 (5.3)	16,129 (100.0)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	761 (4.4)	934 (5.4)	17,377 (100.0)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	1,031 (5.0)	1,593 (7.7)	20,584 (100.0)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	911 (4.1)	1,750 (7.9)	22,168 (100.0)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	917 (4.0)	1,332 (5.7)	23,365 (100.0)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7 (100.0)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100.0)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100.0)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100.0)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100.0)

※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간 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출처: 대검찰청(2018), 「범죄분석」 p.15.

경찰청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건수는 23,478건, 검거건수는 22,644건이었다. 발생건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4,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검거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3,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단위: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4년	계	21,055	20,031	20,499
	강간	5,078	5,051	5,517
	유사강간	375	359	389
	강제추행	14,611	13,584	13,400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991	1,037	1,193
2015년	계	21,286	20,525	21,330
	강간	5,151	5,101	5,621
	유사강간	518	514	535
	강제추행	15,059	14,355	14,488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58	555	686
2016년	계	22,200	21,457	22,964
	강간	5,155	5,097	5,829
	유사강간	583	568	598
	강제추행	16,054	15,384	16,016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08	408	521
2017년	계	24,110	23,289	25,280
	강간	5,223	5,134	5,943
	유사강간	636	631	694
	강제추행	17,947	17,219	18,272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04	305	371
2018년	계	23,478	22,644	24,884
	강간	5,293	5,206	5,947
	유사강간	776	758	848
	강제추행	17,053	16,324	17,631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56	356	458

출처: 경찰청(2018), 「2018 범죄통계」 p.34.

경찰청은 범죄통계 중 ‘풍속 범죄’를 따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발생건수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8년 1,3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 6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2015년 7,6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6년 5,170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 풍속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2014년-2018년)

(단위: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4년	계	8,348	8,005	4,383
	통신매체이용음란	1,250	1,185	1,087
	카메라등이용촬영	6,635	6,379	2,92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63	441	372
2015년	계	9,281	9,002	5,496
	통신매체이용음란	1,130	1,065	1,065
	카메라등이용촬영	7,616	7,430	3,95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35	507	472
2016년	계	6,749	6,374	6,095
	통신매체이용음란	1,109	1,041	1,163
	카메라등이용촬영	5,170	4,891	4,49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70	442	441
2017년	계	8,128	7,757	6,763
	통신매체이용음란	1,249	1,142	1,186
	카메라등이용촬영	6,465	6,220	5,17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14	395	403
2018년	계	7,929	7,412	7,703
	통신매체이용음란	1,365	1,218	1,581
	카메라등이용촬영	5,925	5,613	5,49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639	581	627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재구성

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범죄자) 현황

강간의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95%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19-30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35.4%로, 2014년 33.9%에서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8세 이하인 경우는 2014년 14.9%에서 2018년 12.7%로 감소하였다. 한편,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연령이 성인인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18세 이하인 경우가 2015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검거 인원		2015년 검거 인원		2016년 검거 인원		2017년 검거 인원		2018년 검거 인원	
	남성	여성								
계	5,828 (100.0)	78 (100.0)	6,090 (100.0)	66 (100.0)	6,353 (100.0)	74 (100.0)	6,551 (100.0)	86 (100.0)	6,685 (100.0)	110 (100.0)
14세 미만	0 (0.0)	0 (0.0)	3 (0.0)	0 (0.0)	1 (0.0)	0 (0.0)	-	-	-	-
14-18세	866 (14.9)	28 (35.9)	813 (13.3)	12 (18.2)	814 (12.8)	20 (27.0)	845 (12.9)	24 (27.9)	849 (12.7)	31 (28.2)
19-30세	1,978 (33.9)	12 (15.4)	1,991 (32.7)	15 (22.7)	2,166 (34.1)	20 (27.0)	2,338 (35.7)	16 (18.6)	2,365 (35.4)	30 (27.3)
31-40세	1,172 (20.1)	10 (12.8)	1,317 (21.6)	10 (15.2)	1,305 (20.5)	11 (14.9)	1,338 (20.4)	20 (23.3)	1,259 (18.8)	17 (15.5)
41-50세	954 (16.4)	12 (15.4)	1,007 (16.5)	18 (27.3)	1,034 (16.3)	10 (13.5)	1,006 (15.4)	10 (11.6)	1,027 (15.4)	16 (14.5)
51-60세	599 (10.3)	15 (19.2)	671 (11.0)	8 (12.1)	701 (11.0)	7 (9.5)	694 (10.6)	11 (12.8)	767 (11.5)	10 (9.1)
61세 이상	243 (4.2)	1 (1.3)	277 (4.5)	3 (4.5)	326 (5.1)	6 (8.1)	326 (5.0)	5 (5.8)	411 (6.1)	6 (5.5)
미상	16 (0.3)	0 (0.0)	11 (0.2)	0 (0.0)	6 (0.1)	0 (0.0)	4 (0.1)	0 (0.0)	7 (0.1)	0 (0.0)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남성이 가해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2014년에는 24.3%로 41-50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19-30세의 비중이 2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51-60세 및 60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2014년에는 41-50세의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19-30세의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II-6〉 강제추행 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검거 인원		2015년 검거 인원		2016년 검거 인원		2017년 검거 인원		2018년 검거 인원	
	남성	여성								
계	13,155 (100.0)	245 (100.0)	14,229 (100.0)	259 (100.0)	15,657 (100.0)	359 (100.0)	17,785 (100.0)	487 (100.0)	17,068 (100.0)	563 (100.0)
14세 미만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1 (0.0)	0 (0.0)	0 (0.0)	0 (0.0)
14-18세	866 (6.6)	17 (6.9)	830 (5.8)	29 (11.2)	928 (5.9)	53 (14.8)	912 (5.1)	54 (11.1)	923 (5.4)	49 (8.7)
19-30세	2,886 (21.9)	62 (25.3)	3,127 (22.0)	70 (27.0)	3,437 (22.0)	85 (23.7)	4,169 (23.4)	128 (26.3)	4,061 (23.8)	172 (30.6)
31-40세	2,615 (19.9)	42 (17.1)	2,852 (20.0)	55 (21.2)	3,036 (19.4)	63 (17.5)	3,379 (19.0)	101 (20.7)	3,122 (18.3)	91 (16.2)
41-50세	3,191 (24.3)	69 (28.2)	3,311 (23.3)	55 (21.2)	3,475 (22.2)	93 (25.9)	3,754 (21.1)	97 (19.9)	3,518 (20.6)	125 (22.2)
51-60세	2,351 (17.9)	48 (19.6)	2,588 (18.2)	41 (15.8)	2,989 (19.1)	44 (12.3)	3,384 (19.0)	83 (17.0)	3,313 (19.4)	92 (16.3)
61세 이상	1,238 (9.4)	7 (2.9)	1,517 (10.7)	7 (2.7)	1,783 (11.4)	20 (5.6)	2,181 (12.3)	24 (4.9)	2,116 (12.4)	33 (5.9)
미상	8 (0.1)	0 (0.0)	4 (0.0)	2 (0.8)	8 (0.1)	1 (0.3)	5 (0.0)	0 (0.0)	15 (0.1)	1 (0.2)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표 II-7〉의 강간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가해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가해자 중 전과가 없었던 가해자의 비중이 29.9%였으나, 2018년에는 26.8%로 나타난다. 이는 전과가 있는 가해자의

비중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전과 여부를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7〉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과 없음	1,764 (29.9)	1,772 (28.8)	1,842 (28.7)	1,930 (29.1)	1,819 (26.8)
재범 총계	2,910 (49.3)	2,920 (47.4)	2,972 (46.2)	2,924 (44.1)	2,829 (41.6)
검거인원	5,906	6,156	6,427	6,637	6,795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한편, 〈표 II-8〉의 강간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재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8〉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종재범	236 (8.1)	212 (7.3)	189 (6.4)	262 (9.0)	409 (14.5)
이종재범	2,674 (91.9)	2,708 (92.7)	2,783 (93.6)	2,662 (91.0)	2,420 (85.5)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강간과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가해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가해자 중 전과가 없었던 가해자의 비중이 34.7%였으나, 2018년에는 33.2%로 나타난다.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54.0%였으나 2018년에는 48.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9〉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비율(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과 없음	4,650 (34.7)	5,150 (35.5)	5,613 (35.0)	6,330 (34.6)	5,858 (33.2)
재범 총계	7,239 (54.0)	7,593 (52.4)	8,268 (51.6)	9,168 (50.2)	8,501 (48.2)
검거인원	13400	14488	16016	18272	17631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한편, 〈표 II-10〉의 강제추행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재범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다 이후 2018년까지 다시 동종재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0〉 강제추행 범죄자 재범 현황(2014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종재범	784 (10.8)	788 (10.4)	772 (9.3)	1033 (11.3)	1092 (12.8)
이종재범	6,455 (89.2)	6,805 (89.6)	7,496 (90.7)	8,135 (88.7)	7,409 (87.2)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다. 성폭력 피해자 현황

강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여성 피해자의 경우 16-20세인 경우가 1,281명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1-30세가 1,981명으로 33.7%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50% 이상이 16세 이상 30세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21-30세인 경우는 2014년 29.3%에서 2018년 3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 51세 이상인 경우도 2014년 7.9%에서 2018년 10.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피해자의 수는 전체 피해자에서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세 이상 30세 이하인 경우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2014년에는 16세 이상 30세 이하인 피해자의 비율이 38.3%였던 것에 비

해 2018년에는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15세 이하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에 2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II-11〉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단위: 건, %)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합 계	5,437	5,669	5,738	5,859	6,069	
여성	소계	5,343(100.0)	5,551(100.0)	5,571(100.0)	5,729(100.0)	5,875(100.0)
	6세 이하	6(0.1)	18(0.3)	11(0.2)	14(0.2)	4(0.1)
	7-12세	125(2.3)	159(2.9)	157(2.8)	158(2.8)	188(3.2)
	13-15세	633(11.8)	552(9.9)	477(8.6)	441(7.7)	354(6.0)
	16-20세	1,261(23.6)	1,223(22.0)	1,166(20.9)	1,309(22.8)	1,281(21.8)
	21-30세	1,564(29.3)	1,670(30.1)	1,785(32.0)	1,962(34.2)	1,981(33.7)
	31-40세	754(14.1)	799(14.4)	799(14.3)	743(13.0)	806(13.7)
	41-50세	569(10.6)	627(11.3)	637(11.4)	611(10.7)	638(10.9)
	51-60세	321(6.0)	361(6.5)	388(7.0)	337(5.9)	401(6.8)
	61세 이상	103(1.9)	138(2.5)	144(2.6)	143(2.5)	186(3.2)
	미상	7(0.1)	4(0.0)	7(0.1)	11(0.2)	36(0.6)
남성	소계	94(100.0)	115(100.0)	133(100.0)	93(100.0)	132(100.0)
	6세 이하	3(3.2)	4(3.5)	0(0.0)	1(1.1)	1(0.8)
	7-12세	13(13.8)	23(20.0)	18(13.5)	12(12.9)	18(13.6)
	13-15세	19(20.2)	21(18.3)	35(26.3)	15(16.1)	12(9.1)
	16-20세	17(18.1)	17(14.8)	24(18.0)	15(16.1)	28(21.2)
	21-30세	19(20.2)	23(20.0)	29(21.8)	26(28.0)	44(33.3)
	31-40세	9(9.6)	8(7.0)	10(7.5)	10(10.7)	8(6.1)
	41-50세	5(5.3)	9(7.8)	7(5.3)	5(5.4)	11(8.3)
	51-60세	6(6.4)	5(4.3)	7(5.3)	7(7.5)	6(4.5)
	61세 이상	3(3.2)	5(4.3)	3(2.3)	1(1.1)	4(3.0)
	미상	0(0.0)	0(0.0)	0(0.0)	1(1.1)	0(0.0)
불 상	-	3	34	37	62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제추행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여성 피해자의 경우 16-20세인 경우가 2,904명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1-30세가 5,884명으로 38.7%를 차지해, 강간과 비슷하게 전체 피해자의 50% 이상이 16세 이상 30세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21-30세인 경우는 2014년 34.6%에서 2018년 3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31세 이상 40세 이하인 경우가 2014년 11.0%에서 2018년 12.4%로 증가하였으며, 61세 이상인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세 이상 30세 이하인 경우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2014년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피해자의 비율이 22.9%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2.6%인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이 15세 이하인 비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12〉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2014년-2018년)

(단위: 건, %)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합 계	14,576	15,059	16,054	17,947	17,053	
여성	소계	13,631(100.0)	13,938(100.0)	14,603(100.0)	16,257(100.0)	15,205(100.0)
	6세 이하	148(1.1)	125(0.9)	132(0.9)	117(0.7)	94(0.6)
	7-12세	677(5.0)	677(4.9)	688(4.7)	705(4.3)	702(4.6)
	13-15세	1,127(8.3)	990(7.1)	834(5.7)	791(4.9)	642(4.2)
	16-20세	3,102(22.8)	2,975(21.3)	2,997(20.5)	3,445(21.2)	2,904(19.1)
	21-30세	4,712(34.6)	4,998(35.9)	5,281(36.2)	6,154(37.9)	5,884(38.7)
	31-40세	1,499(11.0)	1,619(11.6)	1,786(12.2)	1,973(12.1)	1,886(12.4)
	41-50세	1,238(9.1)	1,307(9.4)	1,419(9.7)	1,451(8.9)	1,465(9.6)
	51-60세	843(6.2)	891(6.4)	1,043(7.1)	1,116(6.9)	1,067(7.0)
	61세 이상	268(2.0)	327(2.3)	357(2.4)	461(2.8)	462(3.0)
	미상	17(0.1)	29(0.2)	66(0.5)	44(0.3)	99(0.7)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남성	소계	945(100.0)	1,105(100.0)	1,065(100.0)	1,356(100.0)	1,406(100.0)
	6세 이하	27(2.9)	28(2.5)	22(2.1)	20(1.5)	22(1.6)
	7-12세	96(10.2)	112(10.1)	101(9.5)	132(9.7)	120(8.5)
	13-15세	83(8.8)	93(8.4)	86(8.1)	73(5.4)	83(5.9)
	16-20세	182(19.3)	207(18.7)	193(18.1)	247(18.2)	250(17.8)
	21-30세	216(22.9)	312(28.2)	321(30.1)	433(31.9)	459(32.6)
	31-40세	162(17.1)	116(10.5)	111(10.4)	181(13.3)	188(13.4)
	41-50세	109(11.5)	132(11.9)	123(11.5)	142(10.5)	130(9.2)
	51-60세	45(4.8)	78(7.1)	78(7.3)	91(6.7)	127(9.0)
	61세 이상	23(2.4)	27(2.4)	30(2.8)	37(2.7)	26(1.8)
	미상	2(0.2)	0(0.0)	0(0.0)	0(0.0)	1(0.1)
불 상	-	16	386	334	442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2018년 기준으로 강간 피해자 6,795명 중 1,749명(25.7%)이 타인이었다.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는 지인이 996명(1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애인이 444명(6.5%)으로 많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향을 살펴봐도 2018년과 비슷하게 매해 타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인, 애인, 동거친족 순으로 나타난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간과 유사하게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더 높다. 2018년 기준 가해자가 타인인 경우는 17,631명 중 9,292명(52.7%)으로 나타난다. 알고 지낸 사람 중에는 지인이 1,617명(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직장 동료가 800명(4.5%)으로 나타난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매해 타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지인, 직장 동료, 친구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13〉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인원)

구분	계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14	5,906	1	25	63	159	348	355	195	68	25	132	769	2,240	191
2015	6,156	1	26	57	146	296	387	215	82	26	132	690	2,258	258
2016	6,427	1	26	53	164	380	475	215	78	37	150	672	2,150	254
2017	6,637	3	36	64	200	365	437	256	82	39	109	711	2,237	189
2018	6,795	0	34	39	150	300	444	247	84	33	107	996	1,749	246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표 II-14〉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인원)

구분	계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14	13,400	7	138	214	444	243	82	212	116	138	402	773	8,642	326
2015	14,488	25	137	219	513	309	96	221	101	141	368	792	9,176	498
2016	16,016	15	193	223	545	419	115	246	110	139	369	841	9,958	512
2017	18,272	12	192	280	709	444	139	238	124	156	353	998	11,082	500
2018	17,631	15	199	225	800	394	127	284	150	141	329	1,617	9,292	579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간의 발생 장소는 2018년 기준으로 숙박업소·목욕탕이 1,699건(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후로는 아파트·연립다세대 1,484건(24.5%), 단독주택 1,247건(20.5%), 기타 501건(8.3%), 유흥접객업소 351건(5.8%), 노상 193건(3.2%) 순으로 나타난다. 숙박업소·목욕탕의 비중은 2014년 27.4%에서 점차 감소하는 듯했으나 2017년 다시 증가하였고, 이후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8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은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2018년에 증가하였다.

〈표 II-15〉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계	5,453	5,669	5,738	5,859	6,069
아파트·연립다세대	950	981	1,128	1,168	1,484
단독주택	1,017	1,074	1,026	995	1,247
고속도로	-	2	3	1	-
노상	279	285	235	220	193
백화점	-	-	1	-	2
슈퍼마켓	-	3	1	3	3
편의점	4	5	3	5	4
대형 할인매장	-	-	1	-	1
상점	34	38	30	18	41
시장·노점	21	23	15	12	23
숙박업소·목욕탕	1,494	1,435	1,400	1,518	1,699
유흥접객업소	317	297	311	268	351
사무실	67	75	75	48	55
공장	4	3	7	2	5
공사장·광산	2	1	4	5	4
창고	12	5	6	2	3
역·대합실	3	3	1	4	2
지하철	-	-	1	-	-
기타 교통수단 내	138	136	151	137	181
흥행장	6	1	4	-	6
유원지	42	36	27	31	29
학교	24	47	37	36	32
금융기관	1	1	-	1	-
의료기관	26	23	23	18	24
종교기관	22	23	14	14	12
산야	35	32	25	10	18
해상	-	-	-	-	1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부대	2	-	-	-	-
구금장소	-	-	-	-	1
공지	3	2	2	3	2
주차장	64	64	57	60	68
공중화장실	53	64	89	58	75
피씨방	4	6	6	2	2
기타	829	1,004	1,055	1,220	501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강제추행의 발생장소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유흥접객업소가 3,456건(2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이후로 노상 3,071건(18.0%), 기타 1,701건(10%), 아파트·연립다세대 1,347건(7.9%), 기타 교통수단 내 1,260건(7.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생장소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노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지만, 2018년에 유흥접객업소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II-16〉 강제추행 범죄 발생 장소(2014년-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계	14,611	15,059	16,054	17,947	17,053
아파트·연립다세대	902	900	887	1,060	1,347
단독주택	790	842	851	840	1,053
고속도로	11	18	12	15	20
노상	3,324	3,121	3,218	3,390	3,071
백화점	9	15	9	19	32
슈퍼마켓	66	56	55	54	110
편의점	158	157	176	218	285
대형 할인매장	13	5	7	13	19
상점	175	152	187	237	309
시장·노점	75	89	117	97	211

구 분	2014년 발생 건수	2015년 발생 건수	2016년 발생 건수	2017년 발생 건수	2018년 발생 건수
숙박업소·목욕탕	671	656	612	670	1,039
유형접객업소	1,639	1,636	1,906	2,170	3,456
사무실	411	396	414	406	490
공장	33	32	46	46	40
공사장·광산	6	9	11	8	12
창고	6	7	7	14	12
역·대합실	222	270	293	359	432
지하철	610	788	786	1,046	840
기타 교통수단 내	860	793	957	972	1,260
홍행장	50	51	53	72	98
유원지	180	222	222	224	243
학교	227	249	276	317	340
금융기관	6	8	13	11	11
의료기관	179	208	220	238	245
종교기관	39	46	38	45	57
산야	26	36	34	26	28
해상	1	1	1	3	1
부대	5	7	11	15	16
구금장소	3	7	7	7	11
공지	2	1	3	-	1
주차장	110	106	96	101	121
공중화장실	66	72	66	61	84
피씨방	43	39	46	44	58
기타	3,693	4,064	4,417	5,149	1,701

출처: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2.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가. 성폭력 관련법

2016년 이후 개정된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법조문의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6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 기간, 등록확인 주기 등이 정비되었다. 또한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 개념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완하였다.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등에서 피해자가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장뿐만 아니라 상담사 및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칙상 성폭력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성범죄자 신고고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됨(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시 그 기간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였다. 2018년 9월 14일 시행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였다. 2019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였다. 2020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국제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예술인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7〉 성폭력 관련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

법명	개정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6.2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신고받은 형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줌) ○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 ○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6.2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12.1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

법명	개정내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3.1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4.1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7.1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할 시, 그 기간에 차등을 둠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을 포함 ○ 부칙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9.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에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9.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0.1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2.1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 ○ 유포의 객체에 촬영물의 복제물 포함 ○ 촬영 당시에 촬영에 동의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에도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

법명	개정내용
예술인 복지법 (2019.1.17.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7.1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6.2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8.2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5.27.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산정방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록기간의 산정방법이 통일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내용을 재구성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수립되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7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숙한 남녀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포함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과제 6개 중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중과제, 15개의 소과제가 설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18>과 같다.

<표 II-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중과제	소과제	주요내용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여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 생산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 지표 개선
	②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 ○ 신상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시 및 전문성 제고
	③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군대 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초·중·고·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 기업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 구현 ○ 여성에 대한 폭력 홍보 관련매체의 다각화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대응체계 마련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기반 마련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중과제	소과제	주요내용
	③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분 성희롱 방지 강화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기업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②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 여성 대중문화 예술인의 폭력 피해 지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③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수사, 재판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④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명예 회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① 성인지적 보건의로 정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 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지역 건강정책 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
	②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 중심의 사회인식 및 관행 개선 ○ 질병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개선
	③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④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파악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난임 여성 지원 강화 ○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지원 강화
	⑤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출처: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재구성.

2)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09.26.)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및 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 II-19〉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09.26.)

구분	주요내용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 개인영상정보 보호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IP 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불법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검사 강화
2.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차단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AI 등 활용, 유포 탐지·차단 기술의 개발 및 적용 ○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 ○ 경제적 이득 몰수 및 추징 ○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 ○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7.11.14.)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실 체감도가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강화,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장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방안 등이 담겼다.

〈표 II-20〉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7.11.14.)

구분	주요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 집중 홍보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강화
2.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권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노사협의회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기능 강화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 앱 개발·보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종 카드뉴스 제작·배포
4.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 조직 문화 개선(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출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재구성

4)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2017.11.29.)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야기됨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성희롱 근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고위직 참여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 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며, 공공부문 대상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2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2017.11.29.)

구분	주요내용
1.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처·청'의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 대상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 점검 실시
2.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 활성화 ○ 성희롱 피해자 조력 및 보호조치 강화 ○ 용역근로자 보호 추진
3.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 ○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4. 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강화 ○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5. 성희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국민인식 개선 활동 활성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7).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5)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02.22.)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가해자 엄정 처벌,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 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표 II-2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02.22.)

구분	주요내용
1.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조치 강화 ○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검토
2.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제공 ○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 피해자에 대해 권리 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3.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구분	주요내용
4.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교육 확대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 정착 ○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6)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02.27.)

정부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 각계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신고를 받을 시 즉시 퇴출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표 II-2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2018.02.27.)

구분	주요내용
1.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69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 실시 ○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운영 ○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 활성화
2.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 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 되도록 권고 ○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 강화
3.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공공부문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 추진
4.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체계 강화 ○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 엄격히 적용 ○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

구분	주요내용
5. 대책 이행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 ○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점검단 설치를 검토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7)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07.)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이어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표 II-24〉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07.)

구분	주요내용
1. 직장에서의 신고·감독 및 권리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장내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 ○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하여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 감독관을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집중 감독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직장 내 예방 교육의 내실화
2.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 간 운영 ○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 ○ 문화 예술 등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대 조치 시행 ○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 교육 콘텐츠를 마련
3.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 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무규정 마련 ○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의 제재 강화

구분	주요내용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 지원 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5. 적극적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경찰 온라인 사이트 외 상담소 및 각종 기관 신고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고망 확대 ○ 경찰청·지방경찰청의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피해사실 공개 사건에 대한 내·수사 가능성 검토 ○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8)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01.24.)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25〉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2019.01.24.)

구분	주요내용
1.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에서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 ○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 ○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러도,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2. 웹하드 카르텔 해체를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 추진 ○ 정부기관,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 DB 구축 ○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간 상호 주식·지분 소유 금지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추진 ○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보도자료」 재구성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현황

가. 성폭력 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소는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③ 피해자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④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⑦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의 업무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기관 현황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 168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26〉 성폭력 상담소 현황(2014-2019)

(단위: 개소)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173 (22)	20 (3)	6 (1)	4	7 (2)	11 (1)	5 (2)	3 (1)	1	35 (3)	6	7 (1)	13 (2)	14 (1)	10 (1)	14 (2)	14 (1)	3 (1)
2015	172 (23)	20 (4)	6 (1)	4	6 (2)	10 (1)	5 (2)	4 (1)	1	36 (3)	6	7 (1)	15 (2)	13 (1)	9 (1)	13 (2)	14 (1)	3 (1)
2016	159 (23)	19 (4)	6 (1)	4	5 (2)	9 (1)	4 (2)	4 (1)	1	33 (3)	7	8 (1)	14 (2)	9 (1)	8 (1)	11 (2)	14 (1)	3 (1)
2017	169 (24)	19 (4)	6 (1)	4 (1)	4 (2)	11 (1)	4 (2)	4 (1)	2 (0)	37 (3)	8 (0)	8 (1)	15 (2)	8 (1)	9 (1)	12 (2)	15 (1)	3 (1)
2018	171 (25)	21 (4)	6 (1)	4 (1)	4 (2)	12 (1)	5 (2)	4 (1)	2 (0)	35 (3)	8 (0)	6 (1)	15 (2)	8 (2)	9 (1)	11 (2)	15 (1)	3 (1)
2019	168 (25)	20 (4)	7 (2)	4 (1)	4 (2)	8 (1)	5 (2)	4 (1)	2 (0)	34 (3)	9 (0)	9 (1)	16 (2)	7 (2)	9 (1)	11 (2)	15 (1)	4 (1)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입
출처: 여성가족부 (각 연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기관 현황」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등 여러 종류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2010년 138,900건에서 2018년 241,3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성폭력 상담은 2010년 68,530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54,378건으로 전체 상담의 64.0%를 차지해 성폭력 상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성폭력 이외의 상담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가정폭력이 13.9%, 가족문제 5.1%, 성상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기타 상담의 분류가 변경되어 데이트폭력과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상담소의 경우 전체 상담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4,310건에서 2018년 44,03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 상담의 경우 2018년 기준 74.8%가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이었으며, 기타 상담에서는 성상담이 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27〉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0-2017)

(단위: 건, %)

연도	계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0	전체	138,900	68,530	70,370	8,878	1,323	3,717	7,604	17,546	7,967	2,086	21,249
		100.0	49.4	50.6	6.4	1.0	2.7	5.5	12.6	5.7	1.5	15.3
	장애인	14,310	9,044	5,266	1,047	214	94	106	770	286	26	2,723
		100.0	63.2	36.8	7.3	1.5	0.7	0.7	5.4	2.0	0.2	19
2011	전체	129,983	65,922	64,061	8,303	1,366	3,381	5,968	16,133	8,230	1,639	19,041
		100.0	50.7	49.3	13.0	2.1	5.3	9.3	25.2	12.8	2.6	29.7
	장애인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전체	144,692	77,099	67,593	8,169	1,179	2,946	6,326	15,468	7,924	2,234	3,347
		100.0	53.3	46.7	5.6	0.8	2.0	4.4	10.7	5.5	1.5	16.1
	장애인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전체	145,446	83,931	61,465	8,466	843	2,361	5,970	16,585	6,743	600	19,897
		100.0	57.7	42.3	5.8	0.6	1.6	4.1	11.4	4.6	0.4	13.7
	장애인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연도	계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4	전체	146,750	89,975	56,775	9,506	746	1,964	5,061	13,358	6,844	886	18,410
		100.0	61.3	38.7	6.5	0.5	1.3	3.4	9.1	4.7	0.6	12.5
	장애인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전체	158,188	98,729	59,459	15,130	713	2,017	4,960	12,612	7,273	367	16,387
		100.0	62.4	37.6	9.6	0.5	1.3	3.1	8.0	4.6	0.2	10.4
	장애인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전체	158,029	100,624	57,405	14,587	646	1,779	3,948	12,533	5,294	385	18,484
		100.0	63.7	36.3	9.2	0.4	1.1	2.5	7.9	3.3	0.2	11.7
	장애인	28,492	21,176	7,655	1,090	113	86	234	2,241	496	7	3,388
		100.0	74.3	26.8	3.8	0.4	0.3	0.8	7.9	1.7	0.0	11.9
2017	전체	180,572	111,123	69,449	18,934	837	1,464	3,355	11,932	8,366	612	23,949
		100.0	61.5	38.5	10.5	0.5	0.8	1.9	6.6	4.6	0.3	13.3
	장애인	34,418	24,606	9,812	1,774	195	25	77	2,793	651	95	4,202
		100.0	71.5	28.5	5.2	0.6	0.1	0.2	8.1	1.9	0.3	12.2

출처: 여성가족부(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표 II-28〉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2018)

(단위: 건, %)

연도	계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 폭력	기타	
2018	전체	241,343	154,378	86,965	33,529	1,033	1,075	12,235	12,356	2,731	24,006
		100.0	64.0	36.0	13.9	0.4	0.4	5.1	5.1	1.1	9.9
	장애인	44,030	32,938	11,092	1,822	347	71	1,044	3,344	52	4,412
		100.0	74.8	25.2	4.1	0.8	0.2	2.4	7.6	0.1	10.0

출처: 여성가족부(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가장 큰 데, 2018년 기준 전체 160,328건 중 92,293건(57.6%)이 심리·정서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로 기타 21.6%, 수사·법적지원 13.0%, 의료지원 5.2%, 시설입소

연계가 2.7% 순으로 나타난다. 심리·정서적 지원의 경우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법적 지원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0년 17.8%에서 2018년 13.0%로 감소하였다.

〈표 II-29〉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내용(2010-2018)

(단위: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기타
2010	74,102	41,941	13,205	5,419	1,350	12,187
	100.0	56.6	17.8	7.3	1.8	16.4
2011	73,938	42,290	12,043	5,724	1,138	12,743
	100.0	57.2	16.3	7.7	1.5	17.2
2012	82,749	45,519	14,713	5,118	1,639	15,925
	100.0	55.0	17.8	6.2	2.0	19.2
2013	89,208	48,473	15,921	5,227	2,076	17,569
	100.0	54.3	17.8	5.9	2.3	19.7
2014	90,584	46,414	15,944	5,652	890	21,684
	100.0	51.2	17.6	6.2	1.0	23.9
2015	100,937	57,469	14,760	5,760	1,199	21,749
	100.0	56.9	14.6	5.7	1.2	21.5
2016	113,979	65,178	16,614	6,326	1,747	24,114
	100.0	57.2	14.6	5.6	1.5	21.2
2017	122,839	68,352	15,736	6,304	3,317	29,130
	100.0	55.6	12.8	5.1	2.7	23.7
2018	160,328	92,293	20,795	8,290	4,371	34,579
	100.0	57.6	13.0	5.2	2.7	21.6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성추행이 37.6%로 가장 많으며, 강간이 37.5%, 기타가 24.9% 순으로 나타난다. 피해 유형에서 성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부터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여 2016년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였다. 강간의 경우에도 2010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3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조금 증가하여 37.5%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II-30〉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피해 유형(2010-2018)

(단위: 건, %)

연도	계	강 간	성추행	기 타
2010	39,299	16,449	16,109	6,741
	100.0	41.9	40.1	17.2
2011	33,749	14,331	12,964	6,454
	100.0	42.5	38.4	19.1
2012	30,642	11,768	12,386	6,488
	100.0	38.4	40.4	21.2
2013	31,323	11,832	13,128	6,363
	100.0	37.8	41.9	20.3
2014	31,764	11,146	13,443	7,175
	100.0	35.1	42.3	22.6
2015	34,489	12,788	14,735	6,966
	100.0	37.1	42.7	20.2
2016	33,044	11,420	15,539	6,085
	100.0	34.6	47.0	18.4
2017	29,695	10,064	11,931	7,700
	100.0	33.9	40.2	25.9
2018	31,345	10,883	11,867	8,795
	100.0	37.5	37.6	24.9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⑦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⑧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9개소였던 보호 시설은 2018년 31개로 증가하였다. 보호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입소 정원도 2010년 209명에서 2018년 3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도 증가하였다.

〈표 II-31〉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황(2010-2018)

(단위: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10	19	209	100	72	28
2011	19	209	90	64	26
2012	22	249	104	96	8
2013	23	264	124	104	20
2014	29	310	153	139	14
2015	30	353	179	150	29
2016	30	363	166	150	16
2017	30	360	172	146	26
2018	31	367	165	161	4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2018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인원은 180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79명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타 16.4%, 자립 지원 14.1%, 학교문제 (전학)지원이 9.0%, 의료 지원 7.4%, 수사·법적 지원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지원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립 지원과 학교문제 (전학)지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3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2010-2018)

(단위: 명)

연 도	구분	입소인원	퇴소인원	연말현원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2017	전체	201	203	285
	장애인	91	97	173
2018	전체	180	181	284
	장애인	79	92	164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표 II-3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0-2018)

(단위: 건, %)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 타
2010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0	69.5	1.7	12.5	3.8	4.8	7.7
2011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0	74.5	1.3	13.3	2.5	2.1	6.4
2012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0	53.9	1.6	13.6	7.3	2.8	20.8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 타
2013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0	54.5	2.6	14.1	6.4	6.1	16.3
2014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0	45.7	4.3	12.9	6	9	22
2015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0	53.8	2.4	12.4	6.9	9.9	14.6
2016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0	51.2	1.0	9.0	7.4	10.9	20.4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0	52.1	1.1	7.4	9.0	14.1	16.4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다. 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거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이름이 각각 달랐던 것을 2014년에 '해바라기 센터'로 통합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에 총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위기지원형은 16개소, 아동형은 7개소, 통합형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34〉 해바라기 센터 현황(2010-2019)

연도	합계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아동·청소년	통합
2010	30개소	17개소	9개소	4개소
2011	31개소	16개소	9개소	6개소
2012	30개소	15개소	8개소	7개소
2013	33개소	17개소	8개소	8개소
2014	34개소	16개소	8개소	10개소(거점1)
2015	36개소	16개소	8개소	12개소(거점1)
2016	37개소	16개소	8개소	13개소
2017	38개소	16개소	8개소	14개소
2018	39개소	16개소	8개소	15개소
2019	39개소	16개소	7개소	16개소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9). 「2019년 해바라기센터 시설안내」

해바라기 센터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이용자는 27,450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20,449명으로 74.5%를 차지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4,147명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내용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398,690건의 지원이 있었고 이 중 상담지원이 125,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이 100,929건, 사회적 지원 등의 기타 지원이 72,419건, 수사 법률 지원이 58,227건, 심리지원 35,866건, 동행서비스 5,902건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4.5건으로, 2013년의 7.37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35〉 해바라기센터 지원현황(전체)(2013-2018)

(단위: 명, 건)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 폭력	가정 폭력	성 매매	기타	계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상담 지원	수사 법률	동행 서비스	기타
2013	27,450	20,597	4,503	227	2,123	202,322	43,043	18,914	87,244	34,799	-	18,322
2014	28,487	20,693	5,517	239	2,038	260,005	62,584	31,577	92,610	47,488	3,493	22,253
2015	28,253	20,218	5,584	188	2,263	277,200	64,958	33,948	98,986	52,989	4,118	22,201
2016	26,878	19,134	5,135	151	2,458	313,523	73,051	30,858	102,880	57,441	4,722	44,571
2017	27,225	19,423	4,817	171	2,814	361,457	87,213	34,619	114,927	56,380	5,119	63,199
2018	27,450	20,449	4,147	182	2,672	398,690	100,929	35,866	125,347	58,227	5,902	72,419

* 동행 서비스: 2014년 신규사업
 ** 기타: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표 II-36〉 해바라기 센터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2013-2018)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서비스 지원(건)	7.37	9.13	9.8	11.7	13.3	14.5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 중 성폭력 피해자만을 분류하여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3.1%, 남성이 5.8%로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 분류하면 19세 이상이 4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9세 미만은 22.3%, 13세 미만 17.2%, 미상 13.9%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총 350,466건 중 상담 지원이 105,5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이 92,38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지원 등의 기타 지원이 63,608건, 수사 법률 지원 48,042건, 심리지원 35,178건, 동행서비스 5,6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1인당 지원 건수는 17.1건으로 2013년 8.5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피해자 1인당 지원 건수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I-37〉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이용 현황(2013-2018)

(단위: 명)

연도	성별	합계	13세 미만	19세 미만	19세 이상	미상
2013	남	1,008	423	206	65	314
	여	19,589	3,234	5,093	8,119	3,143
	전체	20,597	3,657	5,299	8,184	3,457
2014	남	1,075	545	159	72	299
	여	19,618	3,515	4,777	8,389	2,937
	전체	20,693	4,060	4,936	8,461	3,236
2015	남	1,019	433	194	120	272
	여	19,199	3,069	4,352	8,427	3,351
	전체	20,218	3,502	4,546	8,547	3,623
2016	남	1,057	491	212	119	235
	여	17,987	2,749	4,038	8,538	2,662
	모름	90	10	5	0	75
	전체	19,134	3,250	4,255	8,657	2,972
2017	남	1,117	617	223	118	159
	여	18,152	2,917	4,240	8,913	2,082
	모름	154	15	8	2	129
	전체	19,423	3,549	4,471	9,033	2,370
2018	남	1,187	569	247	186	185
	여	19,046	2,953	4,309	9,319	2,465
	모름	216	16	11	4	185
	전체	20,449	3,538	4,567	9,509	2,835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표 II-38〉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2013-2018)

(단위: 건)

연도	합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 법률지원	동행 서비스	기타
2013	176,203	37,054	18,606	73,345	32,044	-	15,154
2014	224,888	53,410	31,256	75,509	42,245	3,493	18,975
2015	238,127	55,687	33,402	80,617	44,774	4,003	19,644
2016	269,164	64,411	30,363	83,659	46,911	4,458	39,362
2017	310,687	77,752	34,130	93,486	45,435	4,860	55,024
2018	350,466	92,383	35,178	105,585	48,042	5,670	63,608

* 동행 서비스: 2014년 신규사업
 ** 기타: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표 II-39〉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1인당 지원 건수(2013-2018)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서비스 지원(건)	8.55	10.87	11.8	14.1	15.9	17.1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라.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대구와 광주의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16개소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4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현황(2010-2019)

(단위: 개소)

연도	운영방법(개소)		
	계	위탁	직영
2010	16	13	3
2011	17	14	3
2012	18	15	3
2013	18	15	3
2014	18	15	3
2015	18	15	3
2016	18	15	3
2017	18	16	2
2018	18	16	2
2019	18	16	2

출처: 1.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 여성가족부(20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황」

1366센터의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총 352,269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189,057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18,350건(33.6%), 성폭력이 27,683건(7.9%), 데이트폭력 13,289건(3.8%), 성매매 3,890건(1.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상담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183,240건에서 2018년 352,2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유형별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2014년 1,591건에서 2018년 13,28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 유형(2010-2018)

(단위: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기타*
2010	183,240	60,489	8,688	1,497	-	112,566
2011	191,050	71,070	9,700	2,027	-	108,253
2012	223,109	94,984	12,156	2,324	-	113,645
2013	253,616	122,229	15,636	2,981	-	112,770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기타*
2014	265,792	137,560	17,007	3,070	1,591	106,564
2015	274,226	159,081	16,239	3,046	2,096	93,764
2016	266,901	164,937	16,526	2,647	4,138	78,653
2017	289,032	180,326	21,470	3,405	8,291	75,540
2018	352,269	189,057	27,683	3,890	13,289	118,350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기존의 성폭력과는 피해양상이 달라 기존의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원 기관을 두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총 33,921건의 지원을 했으며, 이중 삭제 지원이 28,879건, 상담 지원이 4,787건 수사 및 법률 지원이 203건, 의료 지원이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상반기(1.1~6.30)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는 2018년 4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의 총 8개월간의 지원 건수를 넘어서는 결과로, 삭제 지원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8년 지원 현황

(단위: 건)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33,921	4,787	28,879	203	52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표 II-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지원 현황(1.1~6.30)

(단위: 건)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49,156건	2,605건	46,217건	302건	32건

출처: 여성가족부(20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계획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 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1,030명 중 885명(85.9%)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연령을 밝히지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면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대도 118명(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피해가 발생해, 디지털 성폭력이 비단 특정 연령에 국한된 범죄가 아님이 나타난다.

〈표 II-4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세부 현황(1.1~6.30)

(단위: 명, %)

구분(명)	합계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합계	1,030 (100.0)	118 (11.5)	229 (22.2)	72 (7.0)	24 (2.3)	17 (1.7)	570 (55.3)
여	885	101	205	63	12	10	494
남	145	17	24	9	12	7	76

출처: 여성가족부(20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계획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유포불안 304건(15.9%), 기타 224건(11.7%), 유포협박 157건(8.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집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유형별 현황(1.1~6.30)

(단위: 건, %)

합계(건)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기타*
1,910 (100.0)	578 (30.3)	509 (26.6)	157 (8.2)	304 (15.9)	45 (2.4)	91 (4.8)	2 (0.1)	224 (11.7)

* 기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출처: 여성가족부(20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계획 보도자료」

삭제 지원현황을 플랫폼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P2P 사이트가 16,344건(3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검색결과 삭제가 13,932건(30.1%)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사이트가 12,894건(27.9%), SNS가 2,17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지원현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P2P 삭제 지원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반해 SNS의 삭제 지원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P2P의 주된 유포 경로인 토렌트 사이트의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해졌으며,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2019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단속에 들어가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9).

〈표 II-4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1.1~6.30)

(단위: 건, %)

구분	합계(건)	성인 사이트	P2P	SNS	웹하드	검색결과 삭제	기타 (커뮤니티 등)
2019.상 (1.1~6.30)	46,217	12,894	16,344	2,178	115	13,932	754
	(100.0)	(27.9)	(35.4)	(4.7)	(0.3)	(30.1)	(1.6)
2018 (4.30~12.31)	28,879	8,239	2,158	10,312	317	6,705	1,148
	(100.0)	(28.5)	(7.5)	(35.7)	(1.1)	(23.2)	(4.0)

출처: 여성가족부(20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계획 보도자료」

Ⅲ

조사설계

1. 조사개요	57
2. 조사내용	72
3. 조사방법	79
4. 무응답 분석	81
5. 오차분석	91

1. 조사개요

가. 표본설계 개요

1) 모집단 및 추출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 기준 시점(2019년 7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세~64세 일반국민이다.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 내 거주하는 만 19세~64세 일반국민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 추출틀(sampling frame)은 기본적으로 2017년 인구총조사(통계청)를 활용하였고, 해당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정의한 가구는 통계청 가구 정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일반가구 중 만 19세~64세 일반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②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 ③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한편,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단가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①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 ②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 ③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참고로 한국인과 외국인 함께 사는 가구(다문화가정 등)는 일반가구에 해당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므로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였다.

〈표 III-1〉은 2017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모집단의 현황이다. 전체 모집단 조사구는 341,309개이고, 일반가구는 19,568,385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의 경우 각각 전체 조사구의 22.1%, 18.8%를 차지하며, 가구의 경우 각각 23.8%, 19.6%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별 조사구수와 가구수의 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Ⅲ-1〉 시/도별 모집단 현황

시도	조사구		가구		2019년 추계인구		
	조사구 수	구성비 (%)	가구수	구성비 (%)	전체 인구	만 19~64세	포함률 (%)
전국	341,309	100.0	19,568,385	100.0	51,709,098	35,541,683	68.7
서울	64,193	18.8	3,837,690	19.6	9,662,041	6,911,185	71.5
부산	23,209	6.8	1,330,679	6.8	3,372,763	2,294,256	68.0
대구	15,563	4.6	942,747	4.8	2,432,442	1,666,497	68.5
인천	17,923	5.3	1,078,592	5.5	2,943,992	2,081,851	70.7
광주	9,407	2.8	574,837	2.9	1,493,571	1,027,259	68.8
대전	9,477	2.8	594,552	3.0	1,508,753	1,056,036	70.0
울산	7,202	2.1	422,503	2.2	1,146,561	810,551	70.7
세종	1,938	0.6	103,250	0.5	331,136	221,510	66.9
경기	75,544	22.1	4,653,822	23.8	13,237,797	9,285,239	70.1
강원	12,427	3.6	597,782	3.1	1,516,629	995,513	65.6
충북	11,836	3.5	623,449	3.2	1,625,607	1,095,060	67.4
충남	15,057	4.4	832,585	4.3	2,187,752	1,445,698	66.1
전북	13,934	4.1	718,789	3.7	1,803,291	1,151,971	63.9
전남	13,985	4.1	696,001	3.6	1,772,926	1,089,597	61.5
경북	21,564	6.3	1,061,140	5.4	2,664,642	1,728,539	64.9
경남	23,603	6.9	1,274,146	6.5	3,349,656	2,243,015	67.0
제주	4,447	1.3	225,821	1.2	659,539	437,906	66.4

만 19세~64세의 조사 대상 인구는 35,541,68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함 인구는 경기도 9,285,239명(26.1%), 서울특별시 6,911,185명(19.4%), 부산광역시 2,294,256명(6.5%) 순으로 많다.

2) 표본크기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10,000명으로 2016년 7,200명 대비 2,800명이 증가하였다. 표본크기는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기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표본오차의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10,000명 조사 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98\%$ 이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전국에서 1,00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 가구 내에서 만 19세~64세 가구원 중 1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표본 가구 내 응답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랜덤추출이 아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추출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추출 방법을 적용한다(남성 : 여성 = 1 : 3).

3) 모집단의 층화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시·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 동부에 대해서는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와 일반으로 세부 층화한다.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만 19세~64세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로 구성(평균 약 60가구)되어 있는데,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Ⅲ-2>, <표 Ⅲ-3>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표 Ⅲ-2>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III-3〉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이상의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 특성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층수
특·광역시	• 특·광역시 : 8개	• 서울 : 4개 권역/동부 • 6개 광역시 : 동부	동부 내 주택 유형	22
도 지역	• 경기도 : 1개	• 3개 권역/동부 • 3개 권역/읍면부	동부 내 주택 유형	9
	• 그 외 도 : 8개	• 동부 • 읍면부	동부 내 주택 유형	24

이상의 층화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조사구 수와 가구수를 정리하면 각각 다음의 〈표 III-5〉와 〈표 III-6〉과 같다. 광역시의 경우 일부 읍·면 지역이 있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읍·면부에 속한 가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동부와 읍·면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층화하지 않았다.

〈표 Ⅲ-5〉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가구수	일반 가구수			
전국	137,957	132,816	70,536	341,309	
서울	북서	3,660	7,748	-	11,408
	북동	7,981	11,936	-	19,917
	남서	7,481	12,670	-	20,151
	남동	6,235	6,482	-	12,717
부산	11,989	11,220	-	23,209	
대구	8,084	7,479	-	15,563	
인천	9,224	8,699	-	17,923	
광주	5,766	3,641	-	9,407	
대전	4,959	4,518	-	9,477	
울산	4,022	3,180	-	7,202	
세종	1,372	566	-	1,938	
경기	북부	5,486	2,764	8,080	16,330
	중부	14,750	13,421	-	28,171
	남부	13,992	11,756	5,295	31,043
강원	3,510	2,791	6,126	12,427	
충북	3,435	2,624	5,777	11,836	
충남	3,707	2,624	8,726	15,057	
전북	4,923	3,642	5,369	13,934	
전남	3,264	2,098	8,623	13,985	
경북	5,126	4,626	11,812	21,564	
경남	7,792	6,230	9,581	23,603	
제주	1,199	2,101	1,147	4,447	

〈표 III-6〉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8,647,243	7,546,274	3,374,868	19,568,385	
서울	북서	223,964	438,837	-	662,801
	북동	520,519	690,011	-	1,210,530
	남서	471,658	744,385	-	1,216,043
	남동	382,346	365,970	-	748,316
부산	721,116	609,563	-	1,330,679	
대구	518,979	423,768	-	942,747	
인천	585,522	493,070	-	1,078,592	
광주	371,699	203,138	-	574,837	
대전	327,669	266,883	-	594,552	
울산	242,056	180,447	-	422,503	
세종	72,291	30,959	-	103,250	
경기	북부	358,933	161,104	476,239	996,276
	중부	985,551	778,403	-	1,763,954
	남부	904,202	674,348	315,042	1,893,592
강원	213,899	153,361	230,522	597,782	
충북	209,671	155,088	258,690	623,449	
충남	228,605	147,361	456,619	832,585	
전북	303,117	197,266	218,406	718,789	
전남	193,833	110,081	392,087	696,001	
경북	296,819	258,775	505,546	1,061,140	
경남	461,230	351,823	461,093	1,274,146	
제주	53,564	111,633	60,624	225,821	

4) 표본배분

〈표 III-7〉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층별 표본배분 결과이다. 시/도별 표본 배분은 2016년 설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체가중(self-weighting) 특성을 위해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을 적용하였다. 비례배분법을

적용한 또 다른 이유로는 성폭력의 발생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통계조사와 달리 지역별 추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과 표본크기가 2016년 7,200명 대비 10,000명으로 증대된 것을 함께 고려하였다.

동부/읍면부, 아파트/일반 층화변수에 대해서도 모집단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Ⅲ-7〉 층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442	385	173	1,000	
서울	북서	11	23	-	34
	북동	27	35	-	62
	남서	24	38	-	62
	남동	19	19	-	38
부산	37	31	-	68	
대구	26	22	-	48	
인천	30	25	-	55	
광주	19	10	-	29	
대전	17	13	-	30	
울산	13	9	-	22	
세종	3	2	-	5	
경기	북부	19	8	24	51
	중부	50	40	-	90
	남부	46	34	16	96
강원	11	8	12	31	
충북	11	8	13	32	
충남	12	7	24	43	
전북	16	10	11	37	
전남	10	6	20	36	
경북	15	13	26	54	
경남	23	18	24	65	
제주	3	6	3	12	

5) 표본추출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개인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표본추출은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54개의 각 층(시/도(조사구 번호), 동부/읍면부, 아파트/일반)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구의 특성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가 작성 시점 차이로 인하여 조사구 전체가 유고(예. 재건축, 재개발, 기타 사유 등)가 발생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 지역으로 재개발, 주택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등)되었을 경우 표본추출 당시 분류 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조사 대상 가구는 통계청으로부터 수령한 조사구의 가구 명부를 DB화하여 계통추출을 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한다.

표본 가구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고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도록 하여 부재 가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마다 「가구방문 기록표」 양식에 준해 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기록하였다. 4회 방문 시에도 조사대상 가구 또는 가구원을 접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접한 대체 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대체하였다.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는 만 19~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 : 3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목표로 하는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를 따르도록 만들어진 조사구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자 배분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성 및 연령대별 응답자 배분표는 2개의 조사구를 그룹화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구별 성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한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응답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 선정 과정을 통해서 가구 대상 조사에서 과소 조사되기 쉬운 20~30대 젊은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표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 Ⅲ-8〉 접촉 우선 예시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4세
여자	① 3명	② 3명	③ 3명	④ 4명	⑤ 2명
남자	⑥ 1명	⑦ 1명	⑧ 1명	⑨ 1명	⑩ 1명

주 : ①~⑩은 우선순위를 의미함.

성폭력 실태조사는 조사 특성상 조사내용이 민감하고, 여성을 과표집해야 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최근 생일법’ 방식의 가구원 선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생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실태조사에서는 조사구 내 가구단위에서 성별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사구에서는 특정 연령층이 전혀 없는 등 성별 및 연령대별 배분표를 이용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읍 또는 면 지역의 조사구에 대해서는 분류 지표가 동일한 조사구에서 일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진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모수추정

1)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 분포와 표본 구조 분포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 되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정 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3년 세종특별센서스, 2015

년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201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자료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55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최종추출단위는 만 19세~64세 가구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분법에 의해서 한 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착수 가구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수(응답)

가) 설계 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모집단 내 전체 조사구의 가구 중에서 표본 조사구의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1hij} = \frac{\sum_{h=1}^{N_h} M_{hi}}{n_h \cdot M_{hi}}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수,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M_{hi} 는 h 층의 i 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수, M_{hi}^* 는 h 층의 i 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수, m_{hi} 는 h 층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내며, m_{hi} 는 기본적으로 10가구이다. 일반적으로 모집단 가구수와 모집단 적격 가구수가 유사할 것으로 ($M_{hi} \approx M_{hi}^*$) 가정한다.

나)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조사구 당 10가구를 기준으로 응답한 가구수의 역수로 계산하며,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w_{2hi} = \frac{m_{hi}}{r_{hi}}$$

여기서, m_{hi} 는 h 층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수(기본적으로 10가구)를 나타내며, r_{hi} 는 h 층내의 i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수를 나타낸다.

다) 1인 가구 보정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 시 1인 가구의 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2018년 등 록센서스(통계청)의 시도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정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보정한다.

$$BF_{ab} = \frac{G_{ab}}{\sum_a \sum_b (w_{1hi} \times w_{2hi})}$$

여기서, G_{ab} 는 a 시/도, b 가구원수 형태(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의 모집단 가구수를 나타내며, w_{1hi} 와 w_{2hi} 는 각각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를 나타낸다.

라) 표본 가구 내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분법에 의해 응답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w_{3hij} = \left(\frac{1}{e_{hij}} \right)^{-1}$$

여기서, e_{hij} 는 h 층내의 i 조사구, j 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수를 나타낸다.

마) 래킹비(raking ratio) 보정(사후층화 보정 계수) 및 최종가중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 분포와 표본 구조 분포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9년 기준의 「장래추계인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추계인구」 결과에 대해서 레이킹 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장래추계인구」 결과 중 시도별(17)×성별(2)×연령(5) 구분에 대한 만 19세~64세 인구 현황이다. 세부적인 인구 현황은 분량 관계상 생략한다. 최종적으로 표본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begin{aligned} \text{최종 표본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1인 가구 보정 계수} \\ &\times \text{표본 가구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times \text{사후층화 보정 계수} \end{aligned}$$

바) 표준화 가중치

앞서 기술했던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자료처리 결과는 조사 완료 표본 크기로 환원하기 위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준화 가중치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표준화 가중치} = \text{최종 표본 가중치} \times (\text{조사 완료 표본크기} / \text{모집단 크기})$$

2) 모수추정식

가) 추정량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주요 추정량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 방법과 동일하나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 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본 실태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표본추출법을 적용한 복합표본설계를 하여 이에 적합한 추정식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복합표본설계에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dots}}$$

여기서, w_{hij} 는 h 층, i 조사구 내, j 가구(가구원)의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 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h 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m_{hi} 는 h 층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한편,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나)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 효과를 반영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h 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m_{hi} 는 h 층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에서의 오차 한계는 다음과 같다.

$$s.e(\bar{y}) = \sqrt{var(\bar{y})},$$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3)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⁴⁾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나눌 수 있다. 표본오차는 부분 집합인 표본만을 관측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로,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줄어든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에는 표준오차 또는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로, 본 조사에서와 같이 엄밀한 확률 표본 설계 방법에 따라 측정 및 관리가 수월하다.

한편, 비표본오차는 표본오차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오차를 의미하며,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몰이해, 무응답, 거짓응답, 표기 오류, 조사원의 설명, 면접상황, 조사 방법, 자료입력 오류 등 조사 진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세밀한 조사 진행 계획과 관리 기준 마련, 이에 따른 준수 및 확인, 보완작업 수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

4) 본 내용은 2016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집필내용이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의 pp.71~72와 동일함.

여 통계청에서는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해당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조사 전 과정에 있어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기준으로 조사 진행시 모든 과정을 관리하였다.

우선,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부처와 수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표본설계 방안, 조사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통계청의 확인을 거쳤고, 조사표 설계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조사표 디자인(문항 배치, 항목 구성, 직관적 기호, 레이아웃 등) 역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조사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집하였다.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 및 배포한 후 조사회사 담당 연구진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사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필요에 따라 담당 연구진이 배석하여 교육 과정을 감독하였다.

조사 진행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연구진의 즉각적인 검토와 승인을 거쳐 지침이 내려졌고, 조사회사에서는 웹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원의 세부 방문 상황(방문일자, 방문횟수, 시간대, 응답 및 조사불가 사유, 대체여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입력, 관리하였다. 또한, 회수된 조사표는 전량 실사관리자에 의해 에디팅을 거쳐 오류가 발견된 설문지는 재조사 되었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설문지는 랜덤하게 추출하여 실제로 응답자 본인이 응답한 것이 맞는지, 조사표에 기재된 대로 응답했는지, 조사과정은 지침대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입력 단계에서는 조사회사의 전문 편집 시스템인 ‘서베이 크래프트(Survey-Craft)’를 활용하여 자료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기획된 설문 논리체계(내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논리에 맞지 않는 문항 이동이나 응답값 등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료입력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설문은 실사 감독원에게 바로 피드백되어 응답자에게 확인하거나 재조사하였다.

최종적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조사 항목별 빈도 확인을 통해 응답 및 입력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초통계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이상 여부를 확인,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된 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후에는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항목별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 응답값의 신뢰수준을 파악하였다.

2. 조사내용

가. 조사표 개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와의 시계열적 자료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유사 조사(예. 범죄피해자 조사, 사회조사 등)에 포함된 유사문항과의 비교, 최근 성폭력 범죄 양상, 성폭력 관련 법 제도의 변화 검토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 조사항목을 보완하였다. 최근 성폭력 범죄 양상,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 검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사법기관 통계자료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범죄 관련 실태 파악 문항 추가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조사 문항 보완, 둘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 문항 보완, 셋째, 2차 피해 문항의 보완 및 세분화, 넷째, 피해 이후 대응조치 관련 문항 보완, 다섯째, 성폭력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체감도 관련 문항, 여섯째,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 및 범죄 피해 두려움 문항 보완, 일곱째, 시계열 분석을 위한 문항 보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II-9>와 같다.

<표 III-9> 2019년 본 조사 항목 수정 검토(안)

구분	세부내용
① 불법촬영 범죄, 사이버 성폭력 관련 조사 문항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범죄 관련 실태 파악 문항 추가 • 2010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8개 세부유형 중 사이버 성폭력(음란전화/음란 문자/음란메일)의 적절성 검토 후 보완 • ※ 사이버 성폭력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므로,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보완 • 기존 8개 유형(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스토킹,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에 대한 적절성 검토
② 성폭력 피해자 조사 문항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에 비해 본조사 표본규모가 10,000가구로 확대되어 피해실태에 응답할 일정 규모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바 2016년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설문 문항 중 일부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예.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 시기, 경찰 조치 내용 등)
③ 2차 피해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조사표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주변사람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음. 시계열 분석을 위해 문항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자문을 통해 신규문항 보완
④ 피해 이후 대응조치 관련 문항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이후 치료와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추가 정보 파악 (예. 범죄피해자 조사에서 치료 유무, 입원 유무(입원일), 의료비, 신체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등을 조사함)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피해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 관련 사항 보완
⑤ 법제도 관련 인지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인지도 관련 문항에서 2016년 이후 변경 혹은 신규로 실시된 서비스 이나 제도 등을 보기 문항으로 교체 혹은 추가 • (예. 삭제지원 등)
⑥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 인식, 범죄피해 관련 인식, 성폭력 관련 통념 등이 있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간 관련성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구조화하여 문항 보완
⑦ 시계열 비교 관련 문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동안, 지난 1년 동안 두 가지로 성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시계열 비교분석은 평생 동안의 피해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평생 동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비중이 더 높음. •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평생 동안의 피해경험으로 시계열 비교를 할 것인지, 지난 1년 피해경험으로 시계열 비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보완 계획을 토대로 성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문헌 조사, 법률 검토, 2013년과 2016년 실태조사 결과 검토, 연구진 회의/전문가 자문회의/부처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1차적으로 조사표를 마련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항목의 적절성 및 조사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에 대한 이해, 이전 문항과의 연계성, 응답자의 응답 편리를 위한 전체 문항 배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파악하고, 조사 문항 간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응답 경향과 응답 소요시간, 실사 진행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 용어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일부 문항의 배치를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을 거쳐 조사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III-10〉 예비조사 설계 개요

표본크기	구분
표본크기	- 100명(남 25명, 여 75명)
층화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소도시 : 경기도 내의 '시' 지역 - 읍/면 : 경기도 내의 '읍/면' 지역
표본추출틀	- 통/반/리 자료
표본추출	- 성, 연령을 고려한 유의추출
조사기간	- 2019년 7월 5일 ~ 11일(총 7일간)

나. 조사표 내용

1) 2016년과 조사표 비교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조사표는 조사표 보완과정을 거쳐 2016년에 비해 문항 수가 61개 증가하였다.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에서는 8개 문항이 증가하였고,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는 30개 문항이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 대응 영역에서는 23개 문항이 증가하였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문항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표 III-11〉 2016년과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문항 수 비교

2016년		2019년	
영역	문항 수	영역	문항 수
I.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 제도 인식과 서비스 수요	50	I.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	58
II. 성폭력 피해 경험	87	II. 성폭력 피해 경험	117
III. 성폭력 피해 대응	37	III. 성폭력 피해 대응	60
IV. 일반적 사항	12	IV. 일반적 사항	12
합계	186	합계	247

2016년 조사표와 대비하여 2019년 조사표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의 경우 (1)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연관성이 없는 문항을 삭제하고 최근 새롭게 도입된 불법촬영물 관련 내

용을 포함하였다. (2)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수요 문항에서는 보기 문항을 크게 5개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기존 보기 문항을 수정하고 보기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2순위 응답에서 7점 척도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3)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4) 성폭력 관련 인식 문항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고, 기존 문항 중 문항의 목적이 비슷한 중복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문항 전반적으로 성별을 지칭하기보다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문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추가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과 관련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스토킹을 별개 범죄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담기로 하였다. (2) ‘몰래카메라’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불법촬영’으로 대체하였으며, 관련 조사 항목을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분리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몰래카메라’에서 ‘불법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그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의를 수정하였다. (3) 2016년에 ‘성기 노출’로 몰았던 항목을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성기 노출은 성기 노출 행위에 국한한 행위로 인식되어 문항의 목적보다 그 응답 범위가 좁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성기 노출’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다. (4) 음란 전화 등의 피해 경로와 사용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응답 보기를 수정하였다. 자문회의를 거쳐 2016년도 조사표에 있는 보기 중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매체를 삭제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체 위주로 예시를 수정하였다.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1인 미디어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보기에 추가하였다. (5) 가해자 유형을 크게 분류한 후 기존 문항에 있었던 유형을 재분류한 후,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다. 2016년에 ‘아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던 유형을 ‘친인척(가족포함)’,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으로 나누어 기존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또한,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물 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가해자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유형을 대분류로, 세부 유형을 추가하였다. (6) 국민안전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장소문항을 크게 분류한 후, 세부 유형을 수정하였다.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 부담이 증가하고, 응답자에 따라 그 세부 유형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의 분류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피해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

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 장소 문항을 수정하였다.

성폭력 피해 영향에서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2)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병원치료 당시 피해사실 고지 여부와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서비스 안내를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3)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찾아보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4)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유형을 추가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였다. 2차 피해 관련 피해 유형 중 ‘언론보도, 보호 및 진료, 집단 따돌림, 인사상 피해’ 등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자문을 거쳐 2차 피해를 ‘들은 경험’과 ‘일상생활 경험’으로 크게 분류하여 이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5) 통계청 검토의견에 따라 2016년도 조사표에 ‘도움 요청 여부’ 응답 후 선택하게 되어 있는 ‘도움 요청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수사기관’항목을 따로 분리하였다. 2016년도 조사표에 따르면 수사기관 도움 요청 여부에 따라 이후 4개 문항에 대해 응답대상이 구분되었다.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응답 이동 지시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다. (6) 피해 이후 일상생활 변화 문항에서 기존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 및 추가하였다. 사회적 고립, 관계의 단절, 대인 기피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한 번에 여러 경험을 묻는 항목은 각각 분리하였다.

〈표 III-12〉 2016년 대비 2019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주요 변경사항

영역	주요내용
A.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식, 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및 신설된 관련 법과 제도 추가 및 수정: 기존 7개 문항에서 친고죄 폐지, 성폭력 전담 수사관 제도, 부부 간 강간죄 성립 여부 3개 문항은 그대로 두고 불법촬영물 관련 3개 문항은 최근의 내용으로 수정, 1개 문항 삭제 •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구성 수정: 각 정책별로 중요도 순위를 각각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정 •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도 인식 문항 신설: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도 정도 및 그 이유,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도 정도 문항 추가 • 성폭력 관련 인식 문항 수정 및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문항 전반적으로 성별을 지칭하기보다 ‘피해자’라는 용어 사용 디지털 성폭력 관련 1개 문항 삭제, 1개 문항 용어 변경 - (삭제) 문항의 목적이 비슷한 중복 문항 삭제 - (추가) 불법촬영물 3개 문항 추가 • 공공서비스 인지도 문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항목 추가

영역	주요내용
B. 성폭력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문항 삭제: 스토킹을 별개 범죄로 보고 '성폭력 특별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는 범죄 사항만 담기로 결정 • '몰래카메라' 용어 삭제 및 '불법촬영'으로 대체: 정부 권고 사항 •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문항 분리 • '성기 노출'로 몰았던 항목을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문구를 수정 • 음란 전화 등의 피해 경로 및 사용 매체 다양화로 인한 응답 보기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마이크로블로그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예시 추가) 커뮤니티나 카페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메일이나 쪽지, 문자, 전화 → 이메일과 문자 및 전화로 항목 분리 - (삭제) 미니홈피 - (추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1인 미디어 •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 대분류 후 세부 관계 유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문항 공통: 2016년에 아는 사람으로 묶여있던 유형을 '친인척(가족포함)'과 '친인척 이외의 아는사람'으로 분리 후 세부 관계 유형 조정 - 음란 전화 등, 불법촬영 촬영과 유포: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문항 분리 후 세부 유형 추가(게임, 채팅, 커뮤니티, 기타) • 국민안전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피해 장소 보기 문항 대분류 후 세부 장소 추가: 총 7개로 대분류(그 외 장소 포함) 후, 2016년도 조사 항목에서 세부 유형을 더 추가하여 피해 장소를 세분화
C. 성폭력 피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로 인해 경험한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의 유형 보기 문항 추가 • 병원 치료 당시 피해 사실 고지 여부 및 의료기관의 피해자 지원서비스 안내 여부 문항 추가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받은 전문적인 도움의 유형 문항 추가 • 2차 피해 경험 보기 문항 추가 및 직접 겪은 불이익 경험 문항 추가 • 피해 이후 수사기관의 도움 요청 여부와 피해자 지원기관에의 도움 요청 여부 항목 분리 •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보기 문항 추가

2) 2019년 조사표 내용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제도 인식과 서비스 수요,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식과 서비스 수요에서는 성폭력 관련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성폭력 관련 법규정(내용) 인지 여부,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성폭력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는 9개 유형별로 지난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과 평생동안의 피해 경험 유무, 처음 피해 경험 시기,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등 공통

부분과 유형별 특성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대응에서는 신체적 상해 유무, 상해 내용, 병원치료 여부(치료기간 및 치료비용 포함), 신체적 상해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정신적 고통 유무, 고통 내용, 병원치료 및 상담 여부(비용 포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2차 피해 경험, 피해 당시 대응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주위 도움 요청 여부, 각 유형별 도움 요청 여부, 경찰 신고 당사자, 경찰 신고 시기, 수사/사법체계에서의 어려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피해 후 생활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동거가구원 현황, 결혼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일자리 여부, 직업 종류, 일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표 III-13〉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구분	내용
A.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식, 서비스 수요	성폭력 관련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내용 인지 여부,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지난 1년간 성폭력 발생 위험 변화 정도 및 감소·증가 이유, 현재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성폭력 관련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 여부
B. 성폭력 피해 경험	음란전화, 문자, 메일 등을 받은 경험 여부, 처음 경험 시기, 피해유형, 가해자 유형, 가해자 성별, 피해 경로, 자주 사용하는 매체, 1년 사이 피해 여부 및 횟수
	불법촬영 피해 경험 여부,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및 횟수
	불법촬영물의 유포 피해 경험 여부, 처음 경험 시기, 피해유형, 가해자 유형, 유포된 곳, 1년 사이 경험 여부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노출 목격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성추행(폭행/폭력 미수반) 피해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성추행(폭행/폭력 수반) 피해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강간미수 피해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강간 피해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처음 경험 시기, 가해자 유형, 피해 장소, 1년 사이 경험 여부	

구분	내용
C. 성폭력 피해 대응	신체적 상해 유무, 신체적 상해 내용, 신체적 상해로 인한 병원치료 여부, 신체적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 병원치료 시 성폭력 피해사실 고지 여부 및 지원서비스 안내 여부, 신체적 상해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및 기간, 정신적 고통 유무, 정신적 고통 내용, 전문적인 도움 여부, 전문적인 도움내용 및 비용,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및 기간, 2차 피해 경험, 피해 당시 대응여부 및 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수사기관 도움 요청(신고자, 신고 시기, 수사/사법체계에서의 어려움 여부 및 내용),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주위 도움 요청 여부, 각 유형별 도움 요청 여부,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피해 후 생활변화
D. 일반적 사항	성별, 생년, 동거가구원 현황, 결혼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장애종류, 월평균 총 가구소득, 일자리 여부, 직업 종류, 일하지 않은 이유

3. 조사방법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1,0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 선정은 조사구당 10개 가구를 계통추출하였다. 응답자 선정은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가구원 중 우선순위 배분표에 따라 배분표 순서가 가장 빠른 응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배분법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특성상 여성을 과표집해야 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생일법 진행상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배분법 진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자 배분표는 2개의 조사구를 그룹화하여 작성하였으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 선정 과정을 통해서 가구 대상 조사에서 과소 조사되기 쉬운 20~30대 젊은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표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조사구 전체 재개발, 출입불능 건물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구를 대체하여 총 17개 조사구가 대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000개의 본 조사구와 17개의 예비조사구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여성, 가족, 폭력 등 유사 주제에 참여한 적이 있고, 가구방문 조사 경험, 특히,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숙련된 조사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이 조사 취지와 비밀보장 원칙 등을 응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응답자 협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목적과 통계법상 비밀보호의 원칙 조항 등을 교육하고, 응답자에게 배부

할 수 있는 조사 홍보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조사 진행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여성 폭력 연구 및 조사 관련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응답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보장서약서를 제공하고, 조사표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완료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원 신변안전⁵⁾을 위한 조사 진행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응답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할 수 있어서 조사 진행 사실을 응답자 외에는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답자 요청 시 피해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연구진에 보고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7개 실사 지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별 집체교육으로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원칙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숙지와 함께 조사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응답자 협조도 제고와 under-report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상황별 대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 시에는 조사 지침서를 제공하여 조사원별 응답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켰으며, 교육 후 각 실사 지점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만들어 추후 공지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내용의 특성상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원 면접조사를 병행하였고, 자기기입식 조사 시 응답 보기카드를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응답자 자기기입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사원 면접으로 진행하여 불성실 응답에 대응하였다.

조사 진행 시 계통추출에 따라 선정된 본 표본 가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본 표본은 최소 4회 이상 방문한 후에도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대체하도록 하였고, 조사표 외에 여성가족부의 협조공문 3종(응답자용, 지자체용, 공동주거시설 관리사용), 비밀보호용 봉투를 제공하여 응답자 및 관련자의 협조를 얻기 용이하게 하였다.

조사원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안내 및 조사원 비밀보장 서약서가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조사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조사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구축한 실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완료 및 대체 현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5) 조사원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손전등,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행정자치부 「스마트 안전귀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원 간의 일정 및 연락처 공유와 실사 담당자의 관리 하에 조사원의 행적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10,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3일~2019년 11월 10일(89일간)이었다.

〈표 Ⅲ-14〉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19세~64세 일반국민
	조사 모집단	-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제외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제외
표본추출틀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
표본크기		- 10,000명(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98%p)
표본 조사구		- 1,000 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가구당 1명)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 : 특/광역시 11개, 도지역 11개)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동부 내 아파트/일반
표본배분		-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
표본추출		- 1차 추출 단위: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 2차 추출 단위: 가구 → 계통추출 - 3차 추출 단위: 가구원 → 배분법
가중치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1인 가구 보정, 가구원 추출률 보정, 사후 가중치 값 작성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

4. 무응답 분석

무응답 분석은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품질을 검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응답률은 표본에서 적격단위 중 응답에 응한 단위의 수를 전체 적격단위 수로 나눈 비율로, 응답률이 낮을수록 추정결과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조사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응답률을 통계조사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중 하나로 보고, 품질관리 매뉴얼에 무응답 오차와 처리에 대한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⁶⁾.

성폭력실태조사는 일반 타 가구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의 무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본 절은 무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여 본 조사에 무응답 편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가. 응답률 산정 방법⁷⁾

성폭력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을 조사하는 가구조사이다. 표본은 본표본 가구와 예비표본 가구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조사과정 중 본 조사구 외 예비조사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결과는 성공여부, 방문 횟수, 방문시간, 본가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문결과의 유형은 APPOR (2009)에서 정의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실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방문결과는 응답률을 산정하기 위해 크게 완료, 불응, 비접촉, 불능,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방문결과 내용은 '가구 접촉 성공', '조사에 관심 없음', '사생활 침해 및 정보 보호', '가구사정(불화, 이혼, 실업)', '바쁘거나 귀찮음', '조사기관 불신',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식사 등)',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 안 열어줌', '단순 부재', '장기 부재(가구 전원 장기 부재, 여행 등)', '빈집(전출, 이사 등)',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할당 초과' 등으로 구분했다.

본 조사는 선정된 표본 가구에 대해 최고 5회까지 방문하였으며, 방문시간과 일시를 변경하면서 실시했다.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작성은 <표 III-15>와 같다.

6)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 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7)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pp.84~92를 인용 및 수정함.

〈표 III-15〉 방문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구분	결과	내용
완료(I)	가구 접촉 성공	조사 완료한 경우
불응(R)	조사에 관심 없음	조사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거절
	가구사정 (불화, 이혼, 실업)	가구 사정으로 거절
	바쁘거나 귀찮음	바쁘거나 귀찮아서 거절
	조사기관 불신	조사기관 불신을 이유로 거절
	이유 여하 막론 거절 (강력 거절)	특별한 이유없이 강력하게 거절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식사 등)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으로 인해 거절
비접촉(NC)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 안 열어줌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거절
	단순 부재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장기 부재(가구 전원 장기 부재, 여행 등)	가구 전원 여행 등으로 장기 부재인 경우
부적격	반집(전출, 이사 등)	전출, 이사 등으로 비어있는 집인 경우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표본 가구에 본 조사 조사대상이 아예 없을 경우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해당 위치에 가구가 없는 경우,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거처 종류가 가구가 아닌 상가 등으로 변경된 경우
불능(O)	할당초과	해당 표본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조사구 배분표의 할당을 다 채운 층에 해당하는 경우
	응답 불능	고령, 장애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9),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본 조사의 응답률은 APPOR(2009)에서 제시한 응답률 유형을 참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은 부적격 표본을 제외한 적격표본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성폭력실태조사는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할당 초과’와 같이 실제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가구를 부적격 가구로 두고 응답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응

답률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답률(Response rate)

응답률은 조사에서 응답을 한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응답률의 계산 방법은 APPOR(2009)에서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조사 가구 중 응답한 가구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text{응답률} = \frac{I}{I + R + NC + 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2) 접촉률(Contact rate)

접촉률은 적격표본 중에서 접촉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해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text{접촉률} = \frac{I + R + O}{I + R + NC + 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3) 협조율(Cooperation rate)

협조율은 접촉한 표본 중 조사에 응답한 모든 표본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수준과 가구원 수준의 협조율이 있다. 가구 수준의 협조율은 APPOR(2009)에서 제시된 4가지 유형의 협조율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ext{가구 협조율} = \frac{I}{I + R + 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O = 기타

4) 거부율(Refusal rate)

거부율은 이용 가능한 표본 중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기를 거부한 표본 또는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표본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가구)가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APPOR(2009)은 3가지 거부율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본 연구는 다음의 정의로 거부율을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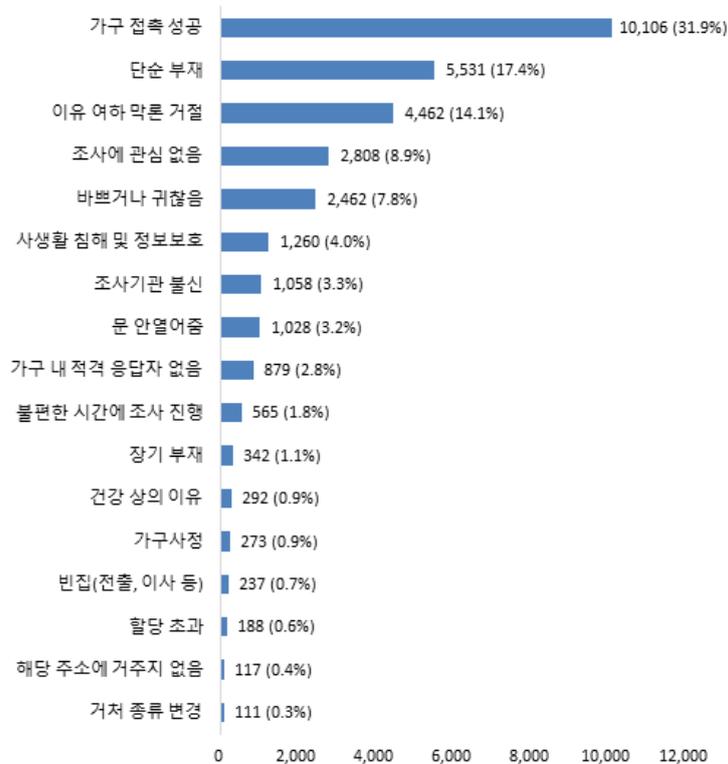
$$\text{거부율} = \frac{R}{I + R + NC + 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

나. 무응답 분석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률은 조사의 전체 과정을 수록한 파라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파라데이터는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횟수, 성별, 연령, 가구원수, 방문시간대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성별, 연령,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조사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어 무응답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일시이며 이들의 특성에 따라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산정했다.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총 31,719가구를 방문했다. 이 중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할당초과(또는 할당 우선 순위 아님)'와 같은 부적격 가구가 1,295가구(4.1%)로 나타났고, 30,424가구(95.9%)가 적격가구이었다. 전체방문가구 중 31.9%인 10,106가구가 조사에 성공했고, 35.0%(13,916가구)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단순 부재, 장기 부재, 빈집)도 19.3%(6,110가구)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 장애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가구는 0.9%(292가구)이었다.



[그림 III-1] 전체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한편, 본 표본가구 10,000가구 중에서 성공한 가구는 4,701가구, 47.0%로 나타났다. 본 표본가구에서 조사를 거부한 가구는 43.9%(4,390가구)이었으며, 집에 아무도 없거나(단순 부재 및 장기 부재, 빈집) 부적격 가구는 각각 5.4%(535가구)와 3.5%(350가구)를 보였다. 한편 고령, 장애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가구는 0.2%(24가구)로 많지 않았다.

<표 III-16>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구분	빈도	비율(%)
가구 접촉 성공	4,701	47.0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2,984	29.8
단순 부재	478	4.8
조사에 관심 없음	410	4.1

구분	빈도	비율(%)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340	3.4
바쁘거나 귀찮음	336	3.4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259	2.6
조사기관 불신	168	1.7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 안 열어줌	127	1.3
할당 초과(또는 할당 우선 순위 아님)	73	0.7
장기 부재(장기 출장, 여행 등)	30	0.3
빈집(전출, 이사 등)	27	0.3
건강 상의 이유(고령, 병, 장애 등)	24	0.2
가구사정(불화, 이혼, 실업 등)	17	0.2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11	0.1
불편한 시간에 조사 진행(식사 등)	8	0.1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7	0.1

이와 같은 방문결과로 응답률을 산정해 보면, 적격가구 중 전체표본의 경우 응답률은 33.5%, 본표본은 48.9%로 2016년과 비교하여 본표본 응답률은 높아졌으나, 전체표본 응답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본 표본을 기준으로 접촉률은 94.7%로 높았지만 협조율은 51.6%이었고 거부율은 45.6%로, 본 조사의 민감성이 높은 조사임을 알 수 있었다.

1) 본 표본 여부별 응답률

조사 원표본 유지율은 표본의 대표성과 품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조사결과를 본 표본과 본 표본 외로 구분하여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계산하면 <표 III-17>과 같다. 먼저 2019년 본 표본의 응답률은 48.9%로 2016년 44.4%, 2013년 36.5%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반면 본표본외까지 합한 전체표본 응답률은 33.5%로 2013년 25.9%보다 높지만 2016년 43.6%와 비교하여 10%p 이상 낮았다. 이는 본 표본 이외에서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으로 2019년 본 표본 외 응답률은 26.3%로 2016년 43.0%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

본 표본의 접촉률은 94.7%로 2013년과 2016년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접촉률 또한 본 표본외를 포함할 경우 80.5%로 이전 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본 표

본 협조율은 51.6%로 접촉한 표본 100명 중 52명 가량만이 응답했고 거부율은 45.6%로 100명 중 46명 가량은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6년과 비교하면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은 본 표본에서는 상승하였으나, 본 표본외에서는 크게 낮아져 전체표본의 경우 2016년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표본의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이 2016년과 비해 높아진 것은 긍정적 결과이나, 본 표본외의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예비표본에 대한 조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본 표본가구 여부별 응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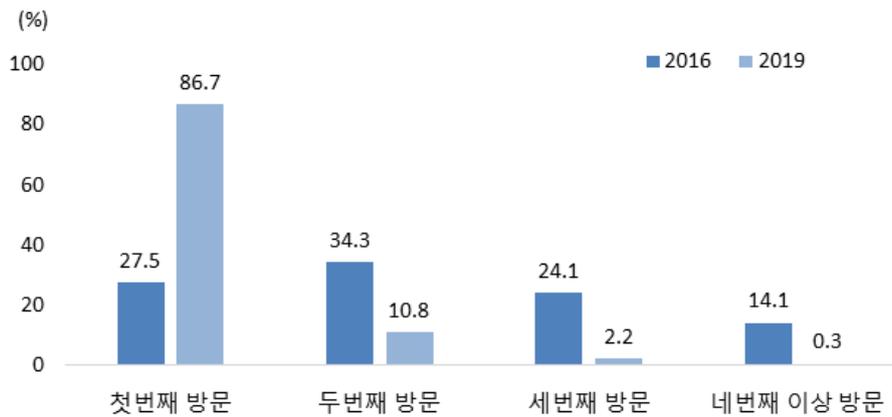
구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2019	본표본	48.9	94.7	51.6	45.6
	본표본외	26.3	73.9	35.6	46.3
	전체표본	33.5	80.5	41.6	46.1
2016	본표본	44.4	89.2	49.8	44.8
	본표본외	43.0	76.5	56.2	33.5
	전체표본	43.6	81.3	53.5	37.8
2013	본표본	36.5	82.6	44.2	43.7
	본표본외	22.9	79.4	28.8	54.2
	전체표본	25.9	80.1	32.3	51.9

2) 방문횟수별 응답률

성폭력 실태조사는 최대 4회까지 방문을 원칙으로 했으나, 실제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회까지도 일시와 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하였다. 방문횟수별 성공 정도를 보면, 성공 가구 중 86.7%가 첫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고, 10.8%가 두 번째 방문에서, 그리고 2.2%가 세 번째 방문에서, 0.3%가 네 번째 이상의 방문에서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방문횟수별 응답 성공률의 특징은 첫 번째 방문 성공률이 매우 높고 응답자의 97.5%가 두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첫 번째 방문에서 27.5%, 두 번째 방문에서 34.3%를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2019년 첫 번째 방문에서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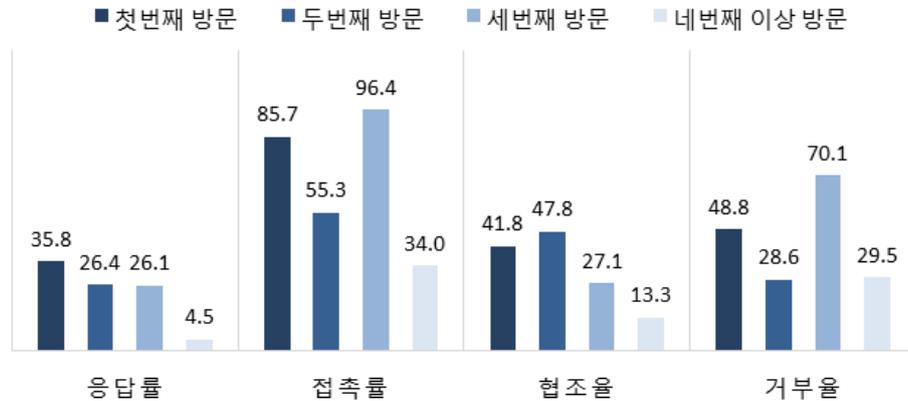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다른 조사와 비교하면 응답률과 협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첫 번째 방문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부재 등의 비접촉 가구 수가 적고

가구조사 시점과 방문시간 등에 대한 조사 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2019년 조사의 경우 본표본외 응답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보면, 본 표본외 가구의 방문 횟수 지침은 본 표본만큼 잘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표본 대체 시에도 가구 방문횟수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Ⅲ-2] 방문횟수별 응답가구의 분포

한편 방문횟수별로 성공률을 살펴보면 응답률의 경우 첫 번째 방문에서 35.8%를 보이며, 두 번째 방문 26.4%, 세 번째 방문 26.1%, 네 번째 이상 방문 4.5%로 첫 방문 이후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률은 방문시간 등이 방문 시마다 변경됨에 따라 세 번째 방문에서 96.4%로 가장 높았고 첫 번째 방문 85.7%, 두 번째 방문 55.3%, 네 번째 이상 방문 34.0% 순으로 높았다. 협조율의 경우는 두 번째 방문에서 47.8%로 가장 높았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방문 순으로 높았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방문의 경우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이 대체로 양호했고 두 번째 방문의 경우 접촉률은 낮으나 협조율은 높은 편이었으며, 세 번째 방문의 경우 접촉률은 높으나 협조율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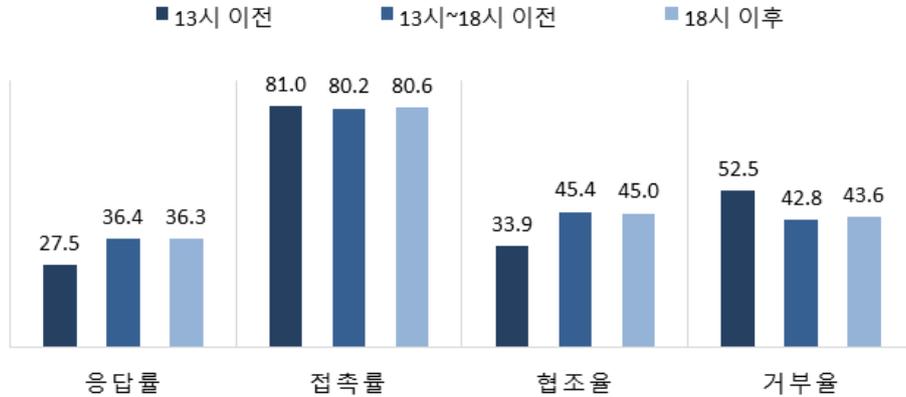
[그림 III-3] 방문횟수별 응답률

3)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총 31,719가구는 재방문 시 방문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하게 된다. 방문시간대 분석은 총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응답률을 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III-4]와 같다. 응답률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시간대는 13~18시 사이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응답률은 36.4%로 나타났고 18시 이후가 36.3%로, 13~18시 사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13시 이전의 응답률은 27.5%로 13시 이후와 비교하면 9%p 가량 낮았다.

시간대별 접촉률은 응답률과 역으로 나타나, 13시 이전이 81.0%로 가장 높았으나, 이외 시간대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협조율은 응답률 순위와 비슷해서 13시 이전 협조율이 가장 낮았고 13~18시 이전 협조율이 높았다.

협조율의 상대적 개념인 거부율의 경우, 13시 이전 방문 시 가장 높았다. 즉, 13시 이전 방문 시 접촉률은 높으나 거부율은 높고 이에 따라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별로 응답하는 사람의 인적 구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향후 전반적인 응답률 특성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 오전보다 오후 방문을 원칙으로 조사된다면 응답률을 높이고 거부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4]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5. 오차분석

가. 오차분석 방법⁸⁾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에서 승인통계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모집단 특성의 고려 여부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이하 RSE) 크기로 평가한다. RSE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통계청은 RSE의 허용기준을 주 자료와 부차 자료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 자료(전국과 대분류 등)의 경우 RSE에 의한 표본규모 적정성을 1% 미만(5), 1~2% 미만(4), 2~5% 미만(3), 5~10% 미만(2), 10~15% 미만(1), 15% 이상(0)으로 구분하고, 부차 자료(시도 중분류 등)의 경우 RSE에 의한 표본 규모의 적정성을 2% 미만(5), 2~5% 미만(4), 5~10% 미만(3), 10~15% 미만(2), 15~20% 미만(1), 20% 이상(0)으로 구분하여 0~5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RSE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⁹⁾을 준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승인통계

8)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pp.93~94 인용 및 수정.

9)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은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활용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미만은 매우 우수(excellent), 5~10% 미만은 우수(very good), 10~15% 미만은 좋음(good), 15~25% 미만은 허용가능(acceptable), 25~35% 미만은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로 두었다.

의 품질관리방법은 비교적 엄격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은 통계 승인에 있어 추정치의 정도와 관련된 오차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시 제시되는 오차는 대부분 전체에 대한 목표 오차로 주요 통계표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오차분석을 통해 통계의 안정성을 검토했다.

오차분석은 조사결과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estimate)와 추정치의 분산추정치(variance of estimate)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구하여, 이들의 상대적 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를 통해 추정한다.

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 1차 추출단위를 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고, 2차 추출단위인 가구 추출은 조사구 당 10개씩 계통추출하고 있다. 오차분석은 가중치를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분산추정치는 테일러 전개 방법(Taylor's expansion method),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 등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AS에 내장된 테일러 전개 방법을 사용하여 분산추정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려 RSE를 계산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통계표에 대해 오차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절은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주요 변수와 통계표를 중심으로 오차분석을 실시했다.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는 10,000명에 대해 성폭력 피해실태 등을 묻고 있다. 이에 본 절은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 되는 통계표와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통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추정량에 대한 RSE 값이 전체 값을 기준으로 5% 이하, 특성별로는 25% 이하이면 적정 공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 조사 주제의 특성상 발생률이 낮아 RSE 값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주요 변수들의 RSE 분석을 통해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측도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대한 RSE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신체적 성폭력, 음란메시지 등, 성기노출, 성희롱의 경우 성별 RSE 값이 25% 미만으로 양호한 값을 보인다. 반면, 폭행/협박이 수반된 성추

행, 강간미수 등의 성폭력 발생과 불법촬영 등에서는 피해율이 매우 낮아 RSE 값이 2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음란 메시지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폭력 유형별로 RSE 값이 25%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신체접촉을 통한 성폭력이 많이 감소하고,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Ⅲ-18〉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메시지 등	불법 촬영	성기 노출 등	성희롱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여성	비율	0.7	0.0	0.0	-	0.8	2.0	0.1	0.6	0.8
	RSE	15.4	100.0	100.0	-	15.4	10.3	53.1	17.9	14.9
남성	비율	0.0	-	-	-	0.0	2.3	0.0	0.1	0.0
	RSE	100.0	-	-	-	100.0	15.7	100.0	60.9	100.0

주: 1) 백분율은 10,0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향이 있는 경우임.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별 성폭력 피해율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학력별, 취업여부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RSE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표 Ⅲ-19〉)를 살펴보면, 성폭력과 여성폭력 노출도가 높은 19세~35세 미만 여성의 경우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과 음란메시지 등과 성희롱에서 RSE가 25% 이내로 낮았고 35세~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음란 메시지 등에서 RSE가 25% 이내로 나타났지만, 50세~64세 여성의 경우 RSE가 25% 이내인 성폭력과 여성폭력 형태는 하나도 없었다. 향후 성폭력 통계의 연령대별 개선을 위해 발현율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 표본의 증가와 더불어 조사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9〉 여성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메시지 등	몰래 카메라	성기 노출	성희롱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19세~35세 미만	비율	1.7	0.1	0.0	-	1.8	2.8	0.1	0.5	1.5
	RSE	17.9	100.0	100.0	-	18.1	15.0	79.8	31.4	18.2
35세~50세 미만	비율	0.3	-	-	-	0.3	2.8	0.1	0.7	0.5
	RSE	38.9	-	-	-	38.9	14.3	99.9	27.1	32.0
50세~65세 미만	비율	0.4	-	-	-	0.4	0.5	0.1	0.5	0.4
	RSE	42.9	-	-	-	42.9	35.4	100.0	31.0	34.3

주: 1) 백분율은 10,0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협이 있는 경우임.

교육정도별로 여성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대해 RSE 값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 음란 메시지 등에서만 25% 이하의 안정적 오차를 보인 반면, 이외 성폭력 피해율에서는 RSE가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중퇴·졸업 이상은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음란 메시지 등, 성기 노출, 성희롱에서 25% 이내의 상대적으로 안정적 오차를 보였다.

〈표 III-20〉 여성의 학력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메시지 등	몰래 카메라	성기 노출	성희롱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	0.5	-	-	-	0.5	1.1	-	0.6	0.6
	RSE	27.0	-	-	-	27.0	18.2	-	28.3	27.1
대학 중퇴·졸업 이상	비율	0.9	0.0	0.0	-	1.0	2.7	0.1	0.5	1.0
	RSE	18.1	100.0	100.0	-	18.3	11.9	53.0	22.4	17.5

주: 1) 백분율은 10,0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협이 있는 경우임.

취업여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성폭력과 여성폭력의 노출 정도가 높은 취업여성의 경우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음란 메시지 등, 성기노출, 성희롱 등에서 25% 미만의 RSE를 보인 반면, 미취업 여성의 경우 음란 메시지 등에서만 RSE가 25% 이내이었고 이외 성폭력 및 여성폭력 형태에서는 모두 25% 이상 높았다.

〈표 III-21〉 여성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메시지 등	몰래 카메라	성기 노출	성희롱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취업	비율	0.8	0.0	0.0	-	0.9	2.0	0.1	0.5	0.9
	RSE	17.7	100.0	100.0	-	17.8	11.6	70.9	21.0	16.9
미취업	비율	0.5	-	-	-	0.5	2.0	0.1	0.6	0.5
	RSE	31.0	-	-	-	31.0	17.1	79.8	33.4	31.8

주: 1) 백분율은 10,0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여성의 경우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음란 메시지 등, 성희롱에서 25% 이내의 RSE를 보였고 기혼여성의 경우 음란 메시지 등 과 성기노출 등, 성희롱에서 25% 이내의 RSE를 보였다.

〈표 III-22〉 여성의 혼인상태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메시지 등	몰래 카메라	성기 노출	성희롱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미혼	비율	1.8	0.1	0.0	-	1.9	3.3	0.2	0.6	1.8
	RSE	18.7	100.0	100.0	-	18.8	15.3	62.6	30.0	17.9
기혼	비율	0.4	-	-	-	0.4	1.5	0.0	0.5	0.4
	RSE	27.3	-	-	-	27.3	13.1	100.0	22.1	23.7

주: 1) 백분율은 10,0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IV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00
2.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04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112
4. 성폭력 피해 실태	127
5. 성폭력 피해 영향	167
6. 성폭력 피해 대응	188

본 장에 수록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유의하도록 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모든 통계 수치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의 2019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수(35,541,683명)로 모수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응답 사례수는 비율(평균) 분석 편의를 위해 표준화 가중치(전체 응답자 수와 가중치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보정)를 적용하였다. 모집단의 총계에 대한 추정 시에는 표본 가중치(가중치의 합계가 모집단의 크기와 일치)를 적용하여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둘째, 각 통계표의 조사대상 기간 시점은 다음과 같다.

- 평생동안 : 출생 이후 현재까지
- 최근 1년 : 2018년 8월 1일 ~ 2019년 7월 31일 동안

셋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넷째,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해당 숫자 없음.
- 0.0, 0.00 : 단위 미만

다섯째, 해당 항목의 RSE(Relative 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값이 클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추정 값의 RSE(Relative 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값이 25%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다소 낮음’으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특성별 통계 수치에서 응답 표본 수가 작은 경우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일부 문항의 경우, 응답 대상의 사례 수가 적어, 전체 결과만 분석하거나 일부 특성별 분석 결과를 생략한 경우가 있다.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0,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유형 등 일반적 특성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 48.7%, 남성 51.3%였다. 연령별로는 19세~35세 미만 30.9%, 35세~50세 미만 34.7%, 50세~65세 미만 3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4.0%, 고등학교 졸업 43.8%, 대학교 졸업 이상 52.2%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응답자가 96%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31.5%, 결혼해서 함께 거주 60.0%, 기타(사실혼, 별거, 이혼, 사별 등) 8.5%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14.6%,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 가구 62.3%,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49.5%,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22.7%, 기타(형제자매, 손자녀 등) 14.2%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2,533	25.1	5,186	51.3
	여성	7,573	74.9	4,920	48.7
	계	10,106	100.0	10,106	100.0
연령	19세~35세 미만	2,869	28.4	3,123	30.9
	35세~50세 미만	3,211	31.8	3,509	34.7
	50세~65세 미만	4,026	39.8	3,474	34.4
	계	10,106	100.0	10,106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4	1.5	90	0.9
	중학교 졸업	556	5.5	316	3.1
	고등학교 졸업	4,698	46.5	4,425	43.8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4,615	45.7	5,173	51.2
	대학원 졸업(석·박사)	80	0.8	101	1.0
	무응답	3	0.0	1	0.0
	계	10,106	100.0	10,106	100.0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결혼상태	미혼	2,559	25.3	3,185	31.5
	동거(사실혼)	265	2.6	226	2.2
	결혼해서 함께 거주	6,499	64.3	6,066	60.0
	결혼했으나 직장/교육문제로 따로 거주	59	0.6	68	0.7
	별거중	51	0.5	48	0.5
	이혼	345	3.4	319	3.2
	사별	326	3.2	193	1.9
	무응답	2	0.0	2	0.0
계	10,106	100.0	10,106	100.0	
동거가구원(복수응답)	혼자 살고 있음	1,199	11.9	1,477	14.6
	배우자(사실혼 포함)	6,764	66.9	6,292	62.3
	자녀	4,779	47.3	4,998	49.5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1,936	19.2	2,290	22.7
	형제자매	1,044	10.3	1,357	13.4
	손자녀	46	0.5	28	0.3
	기타	60	0.6	49	0.5
	계	15,828		16,491	

경제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자 중 78.3%가 취업상태였고, 21.7%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비취업상태를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가사가 51.0%로 가장 많았고, 정규교육기관 통학 26.1%, 육아 6.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인 경우, 직업을 살펴본 결과 사무 종사자가 28.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종사자 27.0%, 판매 종사자 22.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3%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6.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0%, 500만원 이상이 28.7%, 소득 없음이 0.6%로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취업여부	취업	7,214	71.4	7,910	78.3
	미취업	2,892	28.6	2,196	21.7
	계	10,106	100.0	10,106	100.0
일자리가 없는 사람 (비취업자)	일시휴직	45	1.6	41	1.9
	구직활동	47	1.6	59	2.7
	발령대기	1	0.0	-	0.0
	육아	218	7.5	133	6.0
	가사	1,865	64.5	1,120	51.0
	정규교육기관 통학	469	16.2	573	26.1
	입시학원 통학	5	0.2	6	0.3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5	0.5	18	0.8
	취업준비	84	2.9	91	4.1
	진학준비	7	0.2	12	0.6
	연로	9	0.3	6	0.3
	심신장애	12	0.4	15	0.7
	군입대 대기	5	0.2	12	0.6
	결혼 준비	1	0.0	1	0.0
	쉬었음	103	3.6	105	4.8
	기타	-	-	-	-
	무응답	6	0.2	4	0.2
계	2,892	100.0	2,196	100.0	
직업	관리자	109	1.5	166	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0	3.9	335	4.2
	사무 종사자	1,892	26.2	2,248	28.4
	서비스 종사자	2,209	30.6	2,133	27.0
	판매 종사자	1,778	24.6	1,790	22.6
	농림어업 종사자	109	1.5	101	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18	5.8	655	8.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2	1.7	214	2.7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단순노무 종사자	292	4.0	258	3.3	
군인	4	0.1	7	0.1	
기타	-	-	-	-	
무응답	1	0.0	2	0.0	
계	7,214	100.0	7,910	100.0	
월 평균 총 가구소득	소득 없음	73	0.7	62	0.6
	100만원 미만	142	1.4	128	1.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31	7.2	559	5.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64	15.5	1,432	14.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573	25.5	2,495	24.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382	23.6	2,529	25.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032	20.1	2,195	21.7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74	4.7	548	5.4
	1000만원 이상	135	1.3	159	1.6
계	10,106	100.0	10,106	100.0	

장애 유무에서는 1.3%가 장애가 있다고 대답했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67.4%, 시각장애 8.2%, 청각장애 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단위 : 명, %)

구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빈도	%	빈도	%	
장애유무	장애 있음	117	1.2	130	1.3
	장애 없음	9,989	98.8	9,976	98.7
	계	10,106	100.0	10,106	100.0
장애유형(복수응답)	지체장애	78	66.7	88	67.4
	뇌병변장애	5	4.3	5	3.8
	시각장애	7	6.0	11	8.2
	청각장애	7	6.0	7	5.6
	언어장애	5	4.3	5	4.1
	지적장애	4	3.4	5	3.9
	자폐성장애	-	-	-	-
	정신장애	2	1.7	3	2.3
	신장장애	1	0.9	0	0.4
	심장장애	3	2.6	1	1.1
	호흡기장애	2	1.7	1	0.9
	간장애	1	0.9	1	1.1
	안면장애	1	0.9	0	0.3
	장루·요루장애	2	1.7	4	3.1
	간질장애	2	1.7	2	1.3
	무응답	3	2.6	2	1.3
	계	123		135	

2.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가.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인지도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 중 72.0%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4.3%, ‘전혀 모른다’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69.7%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

고, 15.6%가 ‘전혀 모른다’, 14.7%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0.4%p 높은 가운데 14%대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1.9%p 높았다.

〈표 IV-4〉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혀 모른다	14.6	13.7	15.6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70.8	72.0	69.7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4.5	14.3	14.7
계	100.0	100.0	100.0

주: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가장 많이 접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5%가 ‘TV’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인터넷, SNS’로 26.4%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여성의 64.9%와 남성의 62.1%가 ‘TV’를 통해, 여성의 25.6%와 남성의 27.2%가 ‘인터넷, SNS’를 통해 정부의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인지경로)

(단위: %)

구분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SNS ④ 신문, 잡지 ⑤ 성폭력 예방 교육 ⑥ 대형 전광판 ⑦ 관련 기관 소식지/발행자료 ⑧ 지인(친·인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⑨ 기타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63.5	1.0	26.4	1.6	4.5	0.2	0.5	2.2	0.1	100.0
여성	64.9	0.6	25.6	1.0	4.0	0.2	0.7	2.8	0.1	100.0
남성	62.1	1.3	27.2	2.2	4.9	0.2	0.4	1.6	0.1	100.0

주: 1) 백분율은 8,613명(여성 6,476명/남성 2,13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폭력 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임.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여성 90.0%, 남성 90.6%),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여성 90.0%, 남성 90.6%),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이다’(여성 86.8%, 남성 86.1%)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여성 63.6%, 남성 63.7%),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친고죄 폐지)으로 변경되었다’(여성 66.5%, 남성 68.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법 제도와 그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IV-6〉 성폭력 관련법·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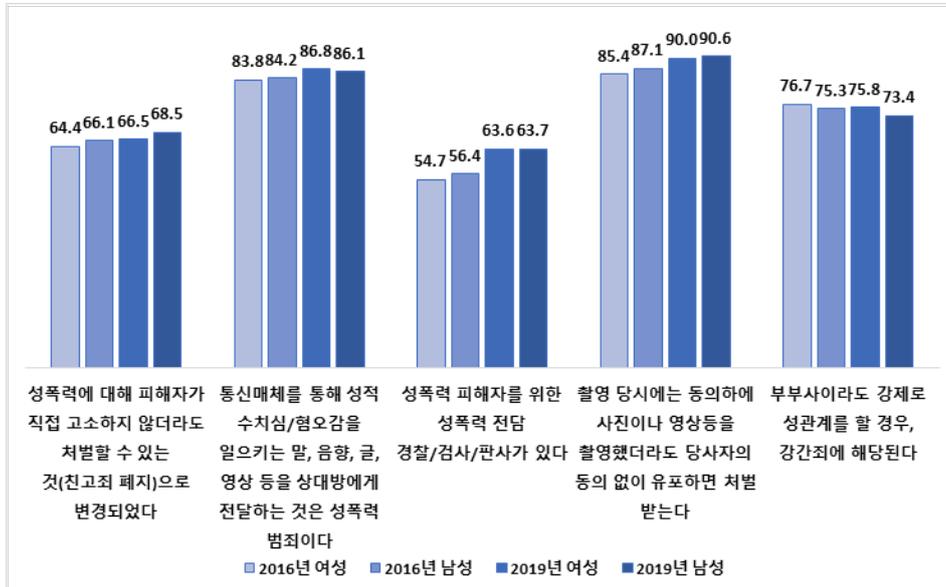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친고죄 폐지)으로 변경되었다	67.5	32.5	66.5	33.5	68.5	31.5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이다	86.5	13.5	86.8	13.2	86.1	13.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	63.7	36.3	63.6	36.4	63.7	36.3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다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90.3	9.7	90.0	10.0	90.6	9.4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90.3	9.7	90.0	10.0	90.6	9.4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	74.6	25.4	75.8	24.2	73.4	26.6

주: 백분율은 8,613명(여성 6,476명/남성 2,13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016년과 2019년 조사 중 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2019년 기준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를 제외한 5개 문항이 동일하다.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⑤)’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2016년 대비 여성과 남성 응답자의 인지도는 상승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③)’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대비 2019년에 남성 7.3%p, 여성 8.9%p 증가하였다. 반면,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⑤)’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대비 남성 1.9%p, 여성 0.9%p 감소하였다.

(단위: %)



[그림 IV-1] 성폭력 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비교(2016, 2019)

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68.0%)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49.8%), ‘여성긴급전화 1366’(49.0%),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45.0%),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제도’(43.7%)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25.9%)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27.4%)에 대한 인지도는 20% 대로 다른 공공서비스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72.0%, ‘여성긴급전화 1366’ 58.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4.0%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남성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6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5.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44.0%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50% 이상이 ‘안다’고 응답한 항목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한 개 항목이었으며, 여성 응답자 중 40% 이상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모르고 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2019년에 처음 포함된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제도’에 대해 여성은 31.6%, 남성은 29.0%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7〉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여성긴급전화 1366	49.0	51.0	58.4	41.6	40.0	60.0
성폭력 피해 상담소	68.0	32.0	72.0	28.0	64.2	35.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49.8	50.2	54.0	46.0	45.9	54.1
해바라기센터	35.2	64.8	40.1	59.9	30.5	69.5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34.0	66.0	35.6	64.4	32.4	67.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제도	43.7	56.3	44.5	55.5	42.9	57.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번호인 제도	45.0	55.0	46.1	53.9	44.0	56.0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27.4	72.6	28.6	71.4	26.3	73.7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25.9	74.1	27.6	72.4	24.3	75.7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제도	30.3	69.7	31.6	68.4	29.0	71.0

주: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조사결과를 2013년, 2016년과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13년 43.2%, 2016년 44.3%, 2019년 49.0%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번호인 제도’는 2013년 35.2%, 2016년 35.4%, 2019년 45.0%로, 매 조사마다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2013년 25.7%에서 2016년 20.5%로 인지도가 감소했으나, 2019년에 35.2%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8〉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2013, 2016, 2019)

(단위: %)

구분	2019년			2016년			2013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여성긴급전화 1366	49.0	58.4	40.0	44.3	50.2	38.6	43.2	50.3	36.4
성폭력 피해 상담소	68.0	72.0	64.2	73.5	76.1	71.0	74.6	76.7	72.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49.8	54.0	45.9	41.0	42.7	39.4	47.9	47.9	47.9
해바라기센터	35.2	40.1	30.5	20.5	22.9	18.2	25.7	28.9	22.6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34.0	35.6	32.4	29.8	28.7	30.9	31.7	30.7	32.7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제도	43.7	44.5	42.9	39.8	38.2	41.4	43.3	41.2	45.4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45.0	46.1	44.0	35.4	33.5	37.2	35.2	33.0	37.3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27.4	28.6	26.3	25.3	25.1	25.6	23.6	22.3	24.9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25.9	27.6	24.3	21.7	21.6	21.9	28.4	29.8	27.0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제도	30.3	31.6	29.0	-	-	-	-	-	-

주: 1) 각각의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9년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3) 2016년 백분율은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4) 2013년 백분율은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 순위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다. 3순위부터는 순위별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3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4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3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5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로 응답하였다. 6순위는 남녀 모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7순위로 여성은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남성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9〉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단위: 점, 순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범죄 예방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6.1	1.0	12	6.1	0.9	12	6.0	1.0	1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법용 CCTV 설치, 안전벨 설치, 방법활동 등)	6.3	0.8	3	6.4	0.8	4	6.2	0.9	3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6.3	0.9	4	6.4	0.8	3	6.2	0.9	5
수사 기관의 개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6.4	0.8	2	6.4	0.8	2	6.3	0.8	2
	수사기관의 성 인지 감수성 강화	6.1	0.9	11	6.2	0.9	11	6.1	1.0	10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6.2	0.9	9	6.2	0.9	7	6.1	0.9	9
처벌 수준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6.4	0.8	1	6.5	0.8	1	6.4	0.8	1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6.3	0.9	5	6.3	0.8	5	6.2	0.9	4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6.2	0.9	8	6.2	0.8	8	6.1	0.9	8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6.2	0.9	6	6.3	0.8	6	6.1	0.9	6
사회적 인식 개선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 인 인식 개선	6.2	0.9	7	6.2	0.9	9	6.1	0.9	7
	시민 대상 성 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6.1	0.9	10	6.2	0.9	10	6.1	0.9	11

주: 1)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보통이다(4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균을 산출함.
 2)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가.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2019년 조사에서는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해 1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2016년도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문항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문항을 삭제하고, 특정한 성별을 지칭하기보다는 이를 ‘피해자’라는 단어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1) 전체 응답 결과

조사결과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문항의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53.2%)’,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52.6%)’,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52.3%)’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응답 비율이 높을수록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항목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3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은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39.9%)’,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7.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36.2%)’,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32.7%)’ 4개 항목이다.

앞서 언급된 항목 중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항목에서도 40%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와 더불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목은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30% 이상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 미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긴 했으나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29.3%)’,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

는 것은 불가능 하다(27.0%)’,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26.2%)’ 항목에서 각각 2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1/4 이상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폭력 관련 인식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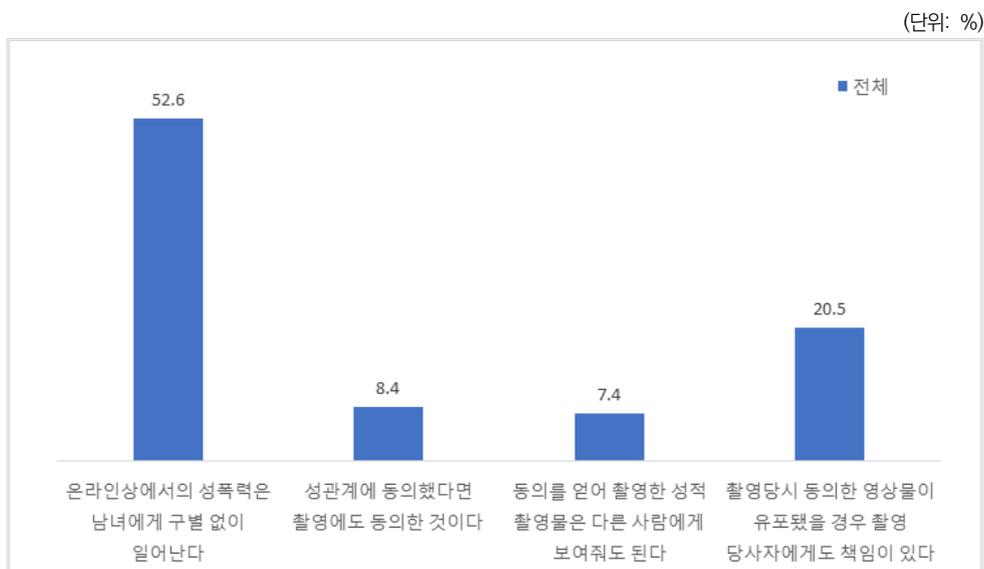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11.9	35.8	44.8	7.5	0.0	100.0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13.5	33.2	41.2	12.0	0.0	100.0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25.1	37.9	31.7	5.3	0.1	100.0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8.9	44.0	22.2	4.8	0.2	100.0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38.9	43.9	14.6	2.5	0.1	100.0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16.7	43.3	35.6	4.3	0.1	100.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21.1	42.7	29.7	6.5	0.0	100.0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	31.0	39.6	24.9	4.4	0.1	100.0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	48.9	38.5	10.6	1.9	0.1	100.0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26.0	41.4	28.9	3.8	0.0	100.0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	16.0	31.4	39.6	13.0	0.0	100.0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	31.0	42.7	23.3	2.9	0.1	100.0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	63.3	28.3	7.2	1.2	0.0	100.0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	65.9	26.6	6.3	1.1	0.1	100.0
촬영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46.2	33.3	16.0	4.5	0.0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0(0.4)

주 : 1) 백분율은 10,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평균 산출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는 역코딩하여 산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항목은 총 4개로 ‘성관계에 동의 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에 8.4%가,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

다’에 7.4%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촬영물 범죄에 있어 성관계의 동의를 촬영에 동의가 아니라는 점, 촬영에 동의가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목에 20.5%가 ‘그렇다’고 응답해 불법촬영물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IV-2]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인식(전체 응답자의 ‘그렇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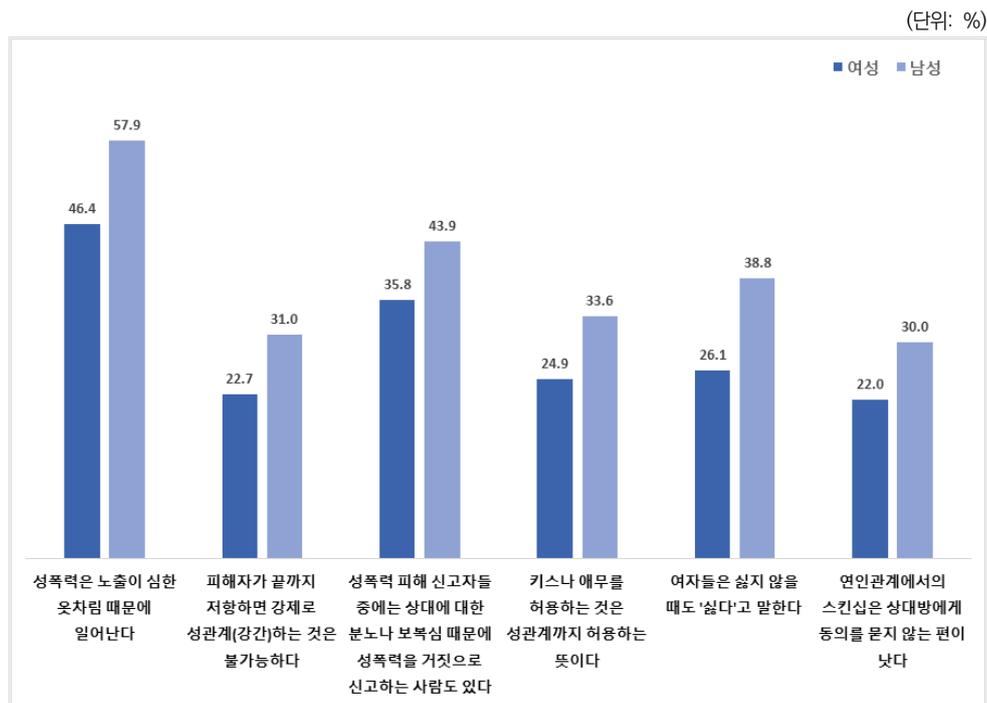
2) 성별 응답 결과

성폭력 관련 인식 항목 15개 항목을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개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10%p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2개 항목으로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에 여성은 26.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38.8%가 ‘그렇다’고 응답해 12.7%p 차이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의사표시에 대해 남성이 좀 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항목에서는 여성은 46.4%가, 남성은 57.9%가 ‘그렇다’고 응답해 11.5%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성폭력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남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10%p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의 4개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성에게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 간 인식 차가 대부분 5%p 이상으로 나타나 성별 간 성폭력 관련 인식에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 성별 성폭력 관련 인식 차가 큰 항목(‘그렇다’ 응답 차 8%p 이상)

〈표 IV-11〉 성폭력 관련 인식 : 여성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14.3	39.3	40.5	5.9	0.1	100.0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15.5	34.4	38.1	12.0	0.0	100.0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29.7	36.9	28.2	5.1	0.1	100.0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4.3	42.8	18.4	4.3	0.2	100.0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42.6	41.6	13.2	2.4	0.1	100.0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18.8	45.3	32.2	3.6	0.1	100.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20.2	39.6	31.5	8.6	0.0	100.0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	36.3	38.7	21.0	3.9	0.1	100.0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	54.9	34.4	8.6	2.0	0.0	100.0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31.0	42.9	22.7	3.4	0.0	100.0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	18.3	31.3	37.0	13.3	0.0	100.0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	35.6	42.3	19.4	2.6	0.1	100.0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	67.7	25.0	6.1	1.2	0.0	100.0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	69.5	23.6	5.8	1.0	0.1	100.0
촬영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49.4	30.6	15.3	4.8	0.0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0(0.4)		

주 : 1) 백분율은 7,5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평균 산출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는 역코딩하여 산출

〈표 IV-12〉 성폭력 관련 인식 : 남성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9.7	32.5	48.8	9.1	-	100.0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11.5	32.1	44.3	12.1	-	100.0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20.6	38.8	34.9	5.5	0.0	100.0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9	45.1	25.8	5.2	0.1	100.0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35.4	46.0	16.0	2.5	-	100.0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14.8	41.3	38.8	5.1	0.0	100.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21.9	45.5	28.0	4.6	-	100.0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	26.0	40.4	28.7	4.9	-	100.0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	43.3	42.5	12.4	1.7	0.1	100.0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21.2	39.9	34.7	4.1	0.0	100.0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	13.9	31.4	42.0	12.7	-	100.0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	26.7	43.2	26.9	3.1	0.1	100.0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	59.0	31.4	8.3	1.3	0.0	100.0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	62.4	29.5	6.8	1.2	0.0	100.0
촬영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43.2	35.9	16.6	4.3	0.0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1(0.4)

주 : 1) 백분율은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평균 산출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는 역코딩하여 산출

나.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은 2019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현재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로 문항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감소한 이유와 1년 전보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1)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지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을 7점 척도(매우 감소했다(1점), 그대로이다(4점), 매우 증가했다(7점))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가 4.7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4.7	1.2	4.9	1.2	4.5	1.2

주 : 1) 매우 감소했다(1점) - 그대로이다(4점) - 매우 증가했다(7점)로 구성

2)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가)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매우 감소했다(1), 감소했다(2), 조금 감소했다(3)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미투 운동의 영향과 이를 통한 성의식의 변화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미투 운동과 그 영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발생 위험 감소 이유를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를 감소 이유로 꼽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감소 이유로 응답했다.

〈표 IV-14〉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32.5	29.2	34.6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신고 증가	10.7	9.7	11.3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성폭력 전과자 감시 강화	15.0	17.5	13.4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	41.1	42.8	40.0
기타	-	-	-
무응답	0.8	0.7	0.8

주 : 1)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매우 감소했다(1), 감소했다(2), 조금 감소했다(3)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조사함.

2) 백분율은 1,253명(여성 848명/남성 40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조금 증가했다(5), 증가했다(6), 매우 증가했다(7)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이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잘 되지 않음(18.3%)’,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16.8%)’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위험 증가 이유를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여성은 57.8%가, 남성은 54.9%가 증가 이유로 응답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였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이 응답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라는 응답이 전체 기준 3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이라는 응답이 전체 기준 56.5%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5〉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	56.5	57.8	54.9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	16.8	15.8	17.9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잘 되지 않음	18.3	17.6	19.2
성 갈등, 여성혐오 확산	7.8	8.1	7.4
기타	0.4	0.5	0.4
무응답	0.3	0.3	0.2

주 : 1)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조금 증가했다(5), 증가했다(6), 매우 증가했다(7)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조사함.

2) 백분율은 5,822명(여성 4,635명/남성 1,18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7점 만점에 평균이 5.0점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평균은 5.2점, 남성 응답자의 평균은 4.8점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 모두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있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현재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5.0	1.1	5.2	1.0	4.8	1.0

주 : 1) 전혀 위험하지 않다(1점) - 보통이다(4점) - 매우 위험하다(7점)로 구성

2)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 전체 및 성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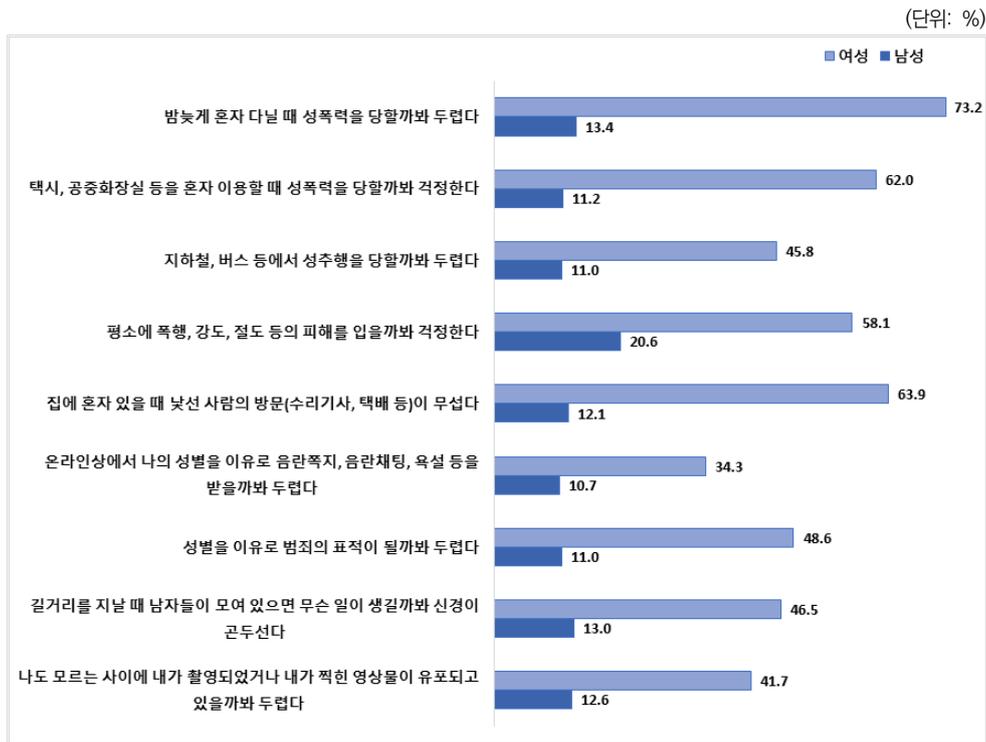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총 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73.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3.9%, ‘택시,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62.0%,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58.1%,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48.6%,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46.5%,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45.8%,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41.7%,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34.3%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20.6%,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13.4%,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13.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2.6%,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2.1%, ‘택시,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11.2%,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1.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11.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10.7%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에서 여성은 73.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13.4%가 ‘그렇다’고 응답해 약 60%p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항목에서 여성은 63.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2.1%가 ‘그렇다’고 응답해 51.8%p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택

시나 공중화장실 이용, 집에서 낯선 사람의 방문,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그렇다’ 응답 기준)

<표 IV-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체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23.3	37.8	34.3	4.6	0.0	100.0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33.4	38.7	21.6	6.3	0.0	100.0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32.3	31.7	26.6	9.3	0.0	100.0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31.3	26.2	29.8	12.7	0.0	100.0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31.8	30.8	29.3	8.1	0.1	10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37.7	35.5	22.4	4.4	0.0	100.0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신경이 곤두선다	35.2	35.4	24.3	5.0	0.0	100.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35.4	35.3	25.1	4.2	0.0	100.0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썹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36.6	41.2	19.3	2.9	0.0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1(0.8)

주: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V-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여성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7.8	34.0	50.2	7.9	0.0	100.0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11.6	42.5	35.5	10.3	0.1	100.0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8.9	29.0	45.3	16.8	0.1	100.0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8	20.0	49.6	23.5	0.1	100.0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7.9	28.0	49.2	14.7	0.1	100.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8.3	39.9	34.3	7.4	0.0	100.0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신경이 곤두선다	15.1	38.3	37.6	8.9	0.0	100.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14.3	37.1	41.3	7.4	0.0	100.0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썹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18.1	47.6	29.3	4.9	0.0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2.5(0.6)

주: 백분율은 7,5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V-19〉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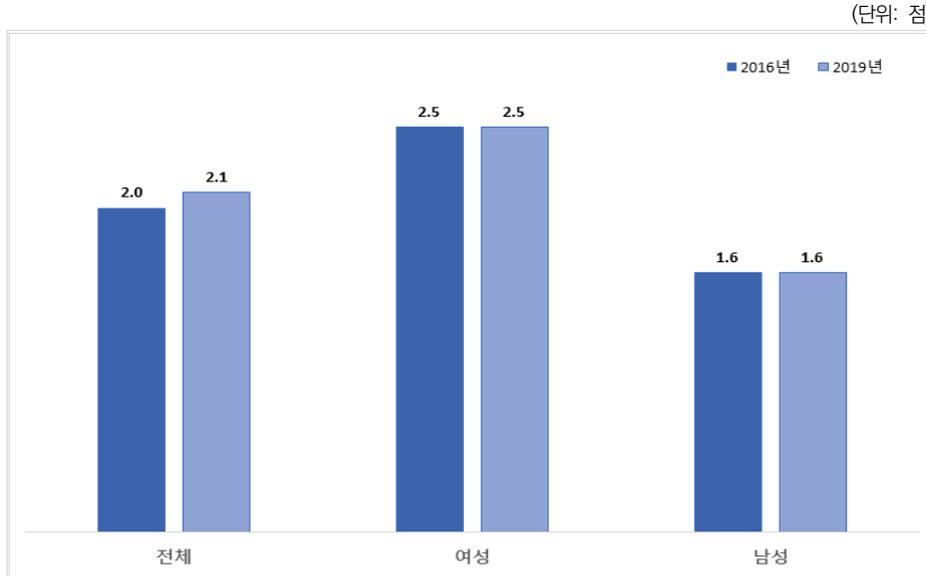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37.9	41.4	19.2	1.4	-	100.0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려다	54.0	35.1	8.4	2.5	-	100.0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54.6	34.2	9.0	2.2	-	100.0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려다	54.6	32.0	10.9	2.5	-	100.0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54.5	33.3	10.4	1.7	0.0	100.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려다	56.2	31.3	11.0	1.6	-	100.0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54.3	32.7	11.7	1.3	-	100.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다	55.4	33.7	9.7	1.3	-	100.0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려다	54.1	35.2	9.7	1.0	-	100.0
전체 문항 평균 (표준편차)				1.6(0.6)		

주: 백분율은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2016년 결과와의 비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를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2016년과 2019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6년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0점, 여성 응답자 평균은 2.5점, 남성 응답자 평균은 1.6점으로 2016년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1점, 여성 응답자 평균은 2.5점, 남성 응답자 평균은 1.6점으로 성별 응답자 평균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면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V-5]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2016, 2019)

2016년과 2019년 모두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해 9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2016년 조사 문항에서 단어를 조금씩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범죄피해 두려움 9개 문항에서,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로 총 4개 항목이며, 이 외의 문항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같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그런데도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은 불법촬영물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두려움, 온라인상에서의 음란성 메시지 수신이나 언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 문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 폭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문항의 경우 2016년 23.7%에서 26.8%로 3.1%p 증가했으며,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문항의 경우 2016년 18.5%에서 2019년 22.2%로 3.7%p 증가했다. 9개 문항 중 위의 두 문항은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문항만 큰 폭으로 응답 비율이 상승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물 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를 종식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은 27.6%에서 27.9%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항목은 37.3%에서 37.4%로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표 IV-20〉 범죄피해두려움 문항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2016년 2019년 결과 비교
(단위: %)

문항	구분	2016년	2019년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전체	39.4	38.9
	여성	61.5	58.1
	남성	18.3	20.6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전체	27.6	27.9
	여성	49.3	45.8
	남성	6.7	11.0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전체	36.0	36.0
	여성	64.5	62.0
	남성	8.6	11.2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전체	43.2	42.5
	여성	76.3	73.2
	남성	11.4	13.4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전체	37.3	37.4
	여성	65.3	63.9
	남성	10.4	12.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전체	23.7	26.8
	여성	36.1	41.7
	남성	11.6	12.6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전체	32.7	29.3
	여성	52.0	46.5
	남성	14.3	13.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전체	30.7	29.3
	여성	50.9	48.6
	남성	11.2	11.0

문항	구분	2016년	2019년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전체	18.5	22.2
	여성	29.8	34.3
	남성	7.7	10.7

주: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합산

4. 성폭력 피해 실태

이 절에서는 만 19세~64세 성인들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는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음란메시지 수신,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성희롱의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강간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 강간 미수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 PC, 휴대전화,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은 경우(단, 광고성 스팸문자, 스팸메일 등을 받은 것은 제외)
- 불법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 유포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성폭력 피해경험은 지난 1년(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과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조사하였고,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는 9가지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평생 동안의 피해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에서는 처음으로 피해를 경험한 연령, 가해자 유형, 발생장소 등을 분석하였고,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된 피해실태 문항을 분석하였다. 일부 피해유형의 경우 남성 응답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면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성폭력 피해율

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106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난 1년간의 성폭력 피해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가 0.4%였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다¹⁰⁾.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인 신체적 성폭력은 0.4%였다. 음란전화 등 피해는 2.1%,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0.3%, 성희롱 0.4%로 나타났으며,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0.7%, 음란전화 등 수신 2.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0.6%, 성희롱 0.8%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¹¹⁾,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2.3%, 성기노출 0.1%로 나타났으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불법촬영, 성희롱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¹²⁾,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는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반올림하여 수치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0.0%로 기술된 것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11)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반올림하여 수치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0.0%로 기술된 것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12)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반올림하여 수치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0.0%로 기술된 것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강간미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유형은 여성 응답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험한 피해유형 중 음란전화 등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율이 높았고, 그 외 피해유형에서는 여성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3>과 <표 IV-24>를 보면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은 19세~3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남성은 3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피해유형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음란전화 등 피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또는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음란전화 등 피해 비율만이 다른 성폭력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aU _b U _c U _d)					
	(a)	(b)	(c)	(d)						
전체	0.4	0.0	0.0	-	0.4	2.1	0.1	-	0.3	0.4
여성	0.7	0.0	0.0	-	0.8	2.0	0.1	-	0.6	0.8
남성	0.0	-	-	-	0.0	2.3	0.0	-	0.1	0.0

- 주: 1)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3) 성폭력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 강간 미수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강간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 음란전화 등 : PC, 핸드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은 행위(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제외)
 · 불법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 유포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전체 응답자가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 보았다. 성폭력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 경우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피해자 발생한 성폭력 유형 대부분에서 19세~35세 미만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19세~35세 미만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0.8%, 음란전화 등 2.2%,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3%, 성희롱 0.8%였다. 35세~50세 미만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0.2%, 음란전화 등 2.6%,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4%, 성희롱 0.2%였고, 50세~65세 미만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0.2%, 음란전화 등 1.6%, 불법촬영 0.0%, 성기노출 등 0.2%, 성희롱 0.2%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대학 중퇴·졸업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중퇴·졸업 이상에서 신체적 성폭력 0.4%, 음란전화 등 2.3%,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0.3%, 성희롱 0.5%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3%, 음란전화 등 1.9%,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4%, 성희롱 0.3%였다. 가구소득수준의 경우 피해 유형별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신체적 성폭력에서는 200만원 미만 0.5%, 200만원~400만원 미만 0.2%, 400만원 이상 0.5%였고, 음란전화 등에서는 200만원 미만 2.7%, 200만원~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이 각각 2.1%였다. 성기노출 등에서는 200만원 미만 0.3%, 200만원~400만원 미만 0.2%, 400만원 이상 0.4%였고, 성희롱에서는 200만원 미만 0.1%, 200만원~400만원 미만 0.4%, 400만원 이상 0.5%이었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 중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4%, 음란전화 등 2.2%,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3%, 성희롱 0.4%였고, 비취업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4%, 음란전화 등 1.9%,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6%, 성희롱 0.3%였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에서 신체적 성폭력 0.2%, 음란전화 등 2.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3%, 성희롱 0.2%였고, 미혼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8%, 음란전화 등 2.5%,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4%, 성희롱 0.8%였다.

〈표 IV-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체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a)	(b)	(c)	(d)	(aUbUc Ud)					
연령										
19세~35세 미만	0.8	0.0	0.0	-	0.8	2.2	0.1	-	0.3	0.8
35세~50세 미만	0.2	-	-	-	0.2	2.6	0.1	-	0.4	0.2
50세~65세 미만	0.2	-	-	-	0.2	1.6	0.0	-	0.2	0.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3	-	-	-	0.3	1.9	0.1	-	0.4	0.3
대학 중퇴·졸업 이상	0.4	0.0	0.0	-	0.4	2.3	0.1	-	0.3	0.5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0.5	-	-	-	0.5	2.7	0.1	-	0.3	0.1
200만원~400만원 미만	0.2	0.0	-	-	0.2	2.1	0.1	-	0.2	0.4
400만원 이상	0.5	-	0.0	-	0.5	2.1	0.1	-	0.4	0.5
취업여부										
취업	0.4	0.0	0.0	-	0.4	2.2	0.1	-	0.3	0.4
비취업	0.4	-	-	-	0.4	1.9	0.1	-	0.6	0.3
결혼여부										
미혼	0.8	0.0	0.0	-	0.8	2.5	0.1	-	0.4	0.8
기혼	0.2	-	-	-	0.2	2.0	0.1	-	0.3	0.2

주: 1) 백분율은 10,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여성 응답자가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거나, 높을수록, 취업중이고, 미혼일 경우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성폭력 유형 대부분 19세~35세 미만에서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19세~35세 미만

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1.8%, 음란전화 등 2.8%,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5%, 성희롱 1.5%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 중퇴·졸업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부분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대학 중퇴·졸업 이상에서 신체적 성폭력 1.0%, 음란전화 등 2.7%,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5%, 성희롱 1.0%였다.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대체로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에서 피해율이 높았다. 200만원 미만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0.9%, 음란전화 등 3.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6%, 성희롱 0.2%였으며, 400만원 이상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0.9%, 음란전화 등 2.4%,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6%, 성희롱 0.9%였다. 취업여부에서도 취업 중인 경우, 대부분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취업 중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9%, 음란전화 등 2.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0.5%, 성희롱 0.9%였고, 비취업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0.5%, 음란전화 등 2.0%, 성기노출 등 0.6%, 성희롱 0.5%이었다. 결혼여부의 경우 대체로 미혼이 높아서, 신체적 성폭력 1.9%, 음란전화 등 3.3%, 불법촬영 0.2%, 성기노출 등 0.6%, 성희롱 1.8%였다.

남성 응답자가 응답한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서는 여성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거의 모든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성희롱 피해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경우 19세~35세 미만에서 모든 유형의 피해율이 높았던 여성과 달리 19세~35세 미만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란전화 등(1.6%), 성기노출 등(0.2%), 성희롱(0.1%)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50세 미만(2.5%)과 50세~65세 미만(2.7%)에서도 음란전화 등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피해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수준에서는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0.1%, 음란전화 등 2.8%,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성희롱 피해가 각각 0.1%였다. 취업한 경우에는 음란전화 등 2.4%,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피해가 각각 0.1%였고, 비취업은 음란전화 등 1.7%, 성기노출 등 0.5%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0.1%, 음란전화 등 2.0%, 성기노출 0.3%, 성희롱 0.1%였고, 기혼의 경우 음란전화 등 2.4%, 불법촬영 0.1%였다. 남성은 음란전화 등에서는 50세~6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0만원~400만원 미만, 취업 중이거나, 기혼인 경우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여성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a)	(b)	(c)	(d)	(aUbUc Ud)					
연령										
19세~35세 미만	1.7	0.1	0.0	-	1.8	2.8	0.1	-	0.5	1.5
35세~50세 미만	0.3	-	-	-	0.3	2.8	0.1	-	0.7	0.5
50세~65세 미만	0.4	-	-	-	0.4	0.5	0.1	-	0.5	0.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5	-	-	-	0.5	1.1	-	-	0.6	0.6
대학 중퇴·졸업 이상	0.9	0.0	0.0	-	1.0	2.7	0.1	-	0.5	1.0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0.9	-	-	-	0.9	3.0	0.1	-	0.6	0.2
200만원~400만원 미만	0.4	0.1	-	-	0.4	1.2	-	-	0.4	0.7
400만원 이상	0.9	-	0.0	-	0.9	2.4	0.1	-	0.6	0.9
취업여부										
취업	0.8	0.0	0.0	-	0.9	2.0	0.1	-	0.5	0.9
비취업	0.5	-	-	-	0.5	2.0	0.1	-	0.6	0.5
결혼여부										
미혼	1.8	0.1	0.0	-	1.9	3.3	0.2	-	0.6	1.8
기혼	0.4	-	-	-	0.4	1.5	0.0	-	0.5	0.4

주: 1) 백분율은 7,5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표 IV-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남성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a)	(b)	(c)	(d)	(aUbUc Ud)					
연령										
19세~35세 미만	-	-	-	-	-	1.6	-	-	0.2	0.1
35세~50세 미만	0.1	-	-	-	0.1	2.5	0.1	-	0.2	-
50세~65세 미만	-	-	-	-	-	2.7	-	-	-	-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1	-	-	-	0.1	2.7	0.1	-	0.1	-
대학 중퇴·졸업 이상	-	-	-	-	-	2.0	-	-	0.1	0.1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	-	-	-	-	2.3	-	-	-	-
200만원~400만원 미만	0.1	-	-	-	0.1	2.8	0.1	-	0.1	0.1
400만원 이상	-	-	-	-	-	1.8	-	-	0.1	-
취업여부										
취업	0.0	-	-	-	0.0	2.4	0.1	-	0.1	0.0
비취업	-	-	-	-	-	1.7	-	-	0.5	-
결혼여부										
미혼	0.1	-	-	-	0.1	2.0	-	-	0.3	0.1
기혼	-	-	-	-	-	2.4	0.1	-	-	-

주: 1) 백분율은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2)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

10,106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9.3%,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0.9%, 강간미수 0.3%, 강간 0.1%로 나타났다.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인 신체적 성폭력은 9.6%였다. 음란전화 등 10.5%, 불법촬영 0.3%, 불법촬영물 유포 0.1%, 성기노출 등 12.1%, 성희롱 5.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등에서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율을 보면 여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7%, 강간미수 0.6%, 강간 0.2%였고,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수반 모두),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18.5%였다.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등 22.9%, 성희롱 9.8%였다. 남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2%,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1%, 음란전화 등 10.5%,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1.9%, 성희롱 1.6%였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피해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모든 유형에서 피해율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및 수반),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성희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간, 강간미수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유형은 여성 응답자에게서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전화 등에서만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율이 0.1%p 높았고, 그 외 피해유형에서는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경우 여성 17.9%, 남성 1.2%, 성기노출 등의 경우 여성 22.9%, 남성 1.9%, 성희롱의 경우 여성 9.8%, 남성 1.6%로 성별 피해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IV-25〉 평생 성폭력 피해율

(단위: %)

구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희롱
	(a)	(b)	(c)	(d)	(aUbUc Ud)					
전체	9.3	0.9	0.3	0.1	9.6	10.5	0.3	0.1	12.1	5.6
여성	17.9	1.7	0.6	0.2	18.5	10.4	0.5	0.2	22.9	9.8
남성	1.2	0.1	-	-	1.2	10.5	0.1	-	1.9	1.6

- 주: 1) 백분율은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3) 성폭력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 강간 미수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강간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 음란전화 등 : PC, 핸드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희롱/비하/공격하는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은 행위(단,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 제외)
 · 불법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 유포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전체 응답자가 응답한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35세~50세 미만,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대체로 35세~50세 미만에서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신체적 성폭력 9.9%, 음란전화 등 11.3%, 성기노출 등 13.8%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신체적 성폭력 9.8%, 성기노출 등 13.7%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높은 반면, 대학 중퇴·졸업 이상에서는 음란전화 등 10.7%, 불법촬영 0.4%, 성희롱 6.0%로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에서는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200만원 미만의 피해율이 높았는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10.0%,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1.6%, 강간미수

0.5%, 강간 0.2%, 음란전화 등 12.5%, 불법촬영 0.6%, 불법촬영물 유포 0.3%, 성기 노출 등 11.4%, 성희롱 6.7%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서는 비취업에서의 피해율이 대부분 높았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13.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1.0%, 강간미수 0.6%, 강간 0.0%, 음란전화 등 9.2%, 불법촬영 0.3%, 불법촬영물 유포 0.1%, 성기노출 등 18.4%, 성희롱 6.6%로, 신체적 성폭력, 성기노출 등, 성희롱 피해율이 취업 중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8.3%,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1.0%, 강간미수 0.4%, 강간 0.1%, 음란전화 등 11.1%, 불법촬영 0.4%, 불법촬영물 유포 0.1%, 성기노출 등 8.5%, 성희롱 6.6%였고, 기혼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9.7%,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0.8%, 강간미수 0.3%, 강간 0.1%, 음란전화 등 10.2%, 불법촬영 0.3%, 불법촬영물 유포 0.0%, 성기노출 등 13.8%, 성희롱 5.2%였다.

〈표 IV-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전체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a)	(b)	(c)	(d)	(aUbUc Ud)						
연령											
19세~35세 미만	9.3	1.1	0.4	0.1	9.8	10.7	0.6	0.1	9.1	6.9	
35세~50세 미만	9.7	0.7	0.3	0.1	9.9	11.3	0.3	0.1	13.8	5.8	
50세~65세 미만	8.9	0.9	0.2	0.0	9.3	9.4	0.1	0.1	13.2	4.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	0.9	0.2	0.1	9.8	10.1	0.2	0.1	13.7	5.1	
대학 중퇴·졸업 이상	9.1	0.9	0.4	0.1	9.5	10.7	0.4	0.1	11.1	6.0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0.0	1.6	0.5	0.2	11.0	12.5	0.6	0.3	11.4	6.7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0.7	0.2	0.1	8.0	10.8	0.2	0.0	11.0	5.1	
400만원 이상	10.3	0.9	0.3	0.1	10.7	9.9	0.3	0.1	13.0	5.9	
취업여부											
취업	8.1	0.8	0.2	0.1	8.4	10.8	0.3	0.1	10.4	5.4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a)	(b)	(c)	(d)	(aUbUc Ud)					
비취업	13.6	1.0	0.6	0.0	14.1	9.2	0.3	0.1	18.4	6.6
결혼여부										
미혼	8.3	1.0	0.4	0.1	8.7	11.1	0.4	0.1	8.5	6.6
기혼	9.7	0.8	0.3	0.1	10.0	10.2	0.3	0.0	13.8	5.2

주: 1) 백분율은 10,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여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중이거나, 미혼인 경우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19세~35세 미만에서 각 유형별 피해율이 대체로 높았다.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2.2%, 강간미수 0.8%, 강간 0.3%, 음란전화 등 11.8%, 불법촬영 1.0%,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등 17.7%, 성희롱 12.1%로 나타났다. 35세~50세 미만에서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19.0%), 성기노출 등(26.0%)의 피해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 중퇴·졸업 이상에서 피해율이 높았는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9.3%,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9%, 강간미수 0.8%, 강간 0.2%, 음란전화 등 11.7%, 불법촬영 0.8%,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22.9%, 성희롱 11.5%이었다. 가구소득수준에서는 400만원 이상에서 피해율이 높았다.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9.2%,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8%, 강간미수 0.7%, 강간 0.1%, 음란전화 등 10.7%, 불법촬영 0.6%,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등 24.0%, 성희롱 10.2%였다. 200만원 미만에서는 400만원 이상보다 폭행과 협박을 미수반한 성추행을 제외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6.0%,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2.3%, 강간미수 1.0%, 강간 0.4%였으며, 또한 음란전화 등 10.8%, 불법촬영 0.9% 불법촬영물 유포 0.6%로 다른 가구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취업 여부에서는 취업 중인 경우에는 성추행(폭행/협박 수반)(1.9%),

강간(0.2%), 음란전화 등(10.9%), 불법촬영(0.6%), 성희롱(10.4%)의 피해율이 높은 반면, 비취업인 경우에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18.3%), 강간미수(0.8%), 성기노출 등(24.6%)의 피해율이 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결혼 여부에 서는 기혼인 경우 성기노출 등(24.6%)의 피해율이 미혼보다 높았고, 그 외의 피해 유형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이 기혼보다 높았다. 미혼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8.1%,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2.4%, 강간미수 1.0%, 강간 0.3%, 음란전화 등 12.7%, 불법촬영 1.0%, 불법촬영물 유포 0.4%, 성기노출 등 18.2%, 성희롱 12.9%의 피해율을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평생 동안 모든 유형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응답자와 달리,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율은 조사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및 수반),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성희롱에서의 전반적인 피해율 또한 여성에 비해 낮았다. 전반적으로는 19세~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업 중인 경우, 미혼인 경우에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1.6%), 불법촬영(0.2%), 성희롱(2.2%) 피해율이 19세~35세 미만에서 소폭 높은 반면, 음란전화 등(11.2%), 성기노출 등(2.2%)의 피해율은 35세~50세 미만에서 피해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에서 모든 유형의 피해율이 높았다. 200만원 미만에서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3.5%,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7%, 음란전화 등 14.4%, 불법촬영 0.4%, 성기노출 등 3.0%, 성희롱 3.5%였다. 취업 중인 경우에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1.3%), 음란전화 등(10.7%), 성기노출 등(2.1%), 성희롱(1.8%)의 피해율이 높았고, 비취업인 경우에는 성추행(폭행/협박 수반)(0.5%), 불법촬영(0.3%) 피해율이 높았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1.6%), 성희롱(1.8%) 피해율이 높은 반면, 기혼인 경우에 성추행(폭행/협박 수반)(0.2%), 음란전화 등(10.8%), 성기노출 등(2.0%)의 피해율이 높았다.

〈표 IV-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여성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a)	(b)	(c)	(d)	(aU _b U _c U _d)					
연령										
19세~35세 미만	17.9	2.2	0.8	0.3	19.0	11.8	1.0	0.2	17.7	12.1
35세~50세 미만	19.0	1.2	0.7	0.2	19.5	11.3	0.4	0.2	26.0	10.4
50세~65세 미만	16.7	1.6	0.5	0.1	17.2	8.3	0.3	0.1	24.2	7.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1	1.4	0.4	0.1	16.6	8.8	0.3	0.1	22.9	8.0
대학 중퇴·졸업 이상	19.3	1.9	0.8	0.2	20.1	11.7	0.8	0.2	22.9	11.5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6.0	2.3	1.0	0.4	17.5	10.8	0.9	0.6	19.1	9.7
200만원~400만원 미만	16.1	1.3	0.5	0.2	16.6	9.7	0.3	0.0	22.0	9.3
400만원 이상	19.2	1.8	0.7	0.1	19.9	10.7	0.6	0.2	24.0	10.2
취업여부										
취업	17.6	1.9	0.6	0.2	18.3	10.9	0.6	0.2	22.1	10.4
비취업	18.3	1.2	0.8	0.1	18.9	9.3	0.4	0.2	24.6	8.8
결혼여부										
미혼	18.1	2.4	1.0	0.3	19.1	12.7	1.0	0.4	18.2	12.9
기혼	17.8	1.4	0.5	0.1	18.3	9.6	0.4	0.1	24.6	8.7

주: 1) 백분율은 7,5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표 IV-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 성폭력 피해율: 남성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 희 롱
	(a)	(b)	(c)	(d)	(aUbUc Ud)					
연령										
19세~35세 미만	1.6	0.1	-	-	1.6	9.7	0.2	-	1.4	2.2
35세~50세 미만	0.8	0.1	-	-	0.8	11.2	0.1	-	2.2	1.5
50세~65세 미만	1.1	0.2	-	-	1.2	10.5	-	-	2.2	1.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	0.2	-	-	1.4	11.7	0.1	-	2.2	1.5
대학 중퇴·졸업 이상	1.1	0.1	-	-	1.1	9.9	0.1	-	1.8	1.7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5	0.7	-	-	3.8	14.4	0.4	-	3.0	3.5
200만원~400만원 미만	1.0	0.2	-	-	1.0	11.6	0.1	-	2.2	1.7
400만원 이상	1.0	-	-	-	1.0	9.1	0.1	-	1.6	1.3
취업여부										
취업	1.3	0.1	-	-	1.3	10.7	0.1	-	2.1	1.8
비취업	0.3	0.5	-	-	0.5	8.8	0.3	-	0.7	0.4
결혼여부										
미혼	1.6	0.1	-	-	1.6	10.0	0.1	-	1.8	2.2
기혼	0.9	0.2	-	-	0.9	10.8	0.1	-	2.0	1.3

주: 1) 백분율은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함.
 3) 신체적 성폭력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3) 성폭력 피해율 추이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3년 이후 각 조사마다 피해 유형의 분류기준 및 각 피해유형별 정의가 수정되었다. 즉,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피해 유형(몰래카메라)이 추가되었고 각 피해 유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법률적 근거

에 부합하고 최근 피해양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2019년에도 최근의 피해양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피해 유형을 수정(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추가, 스토킹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III장의 '2. 조사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먼저 2013년, 2016년, 2019년 세 번의 조사에서 피해유형의 분류기준과 정의가 동일한 유형인 강간미수, 강간, 성희롱, 성기노출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세 번의 조사결과에서(전체 응답자 기준)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을 보면, 강간미수 경우 2013년 0.03%, 2016년 0.0%, 2019년 0.0%, 강간의 경우 2013년 0.1%, 2016년 0.0%, 2019년 피해 발생 없음, 성희롱의 경우 2013년 0.9%, 2016년 0.5%, 2019년 0.4%, 성기노출 등의 경우 2013년 1.7%, 2016년 1.0%, 2019년 0.3%로, 이 네 개 유형에서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감소하였다.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율에서는 강간미수 경우 2013년 0.5%, 2016년 0.5%, 2019년 0.3%, 강간의 경우 2013년 0.4%, 2016년 0.1%, 2019년 0.1%, 성희롱의 경우 2013년 5.3%, 2016년 3.9%, 2019년 5.6%, 성기노출 등의 경우 2013년 21.3%, 2016년 16.9%, 2019년 12.1%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이 네 유형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은 성희롱을 제외하고 다른 세 유형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전년도 피해율과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6년 대비 2019년 평생 피해율이 증가한 성희롱의 경우, 2018년 이후의 미투 운동,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 효과로 인해 과거의 성희롱 피해가 드러나는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조사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2019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된 결과(성추행(폭력/협박 미수반), 성추행(폭력/협박 수반), 음란전화 등)에서도 지난 1년간 피해율과 평생 동안 피해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피해율을 보면, 성추행(폭력/협박 미수반)의 경우 2016년 0.8%, 2019년 0.4%로 감소하였으며, 성추행(폭력/협박 수반)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각각 0.0%로 동일하였다. 음란전화 등의 경우에도 2016년 5.5%, 2019년 2.1%로 감소하였다. 평생 동안 피해율의 경우, 성추행(폭력/협박 미수반)은 2016년 10.7%, 2019년 9.3%로 줄어든 반면, 성추행(폭력/협박 수반)은 2016년 0.4%, 2019년 0.9%로 증가하였으며, 음란전화 등은 2016년 13.6%, 2019년 10.5%로 감소하였다.

〈표 IV-29〉 2013년, 2016년, 2019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단위: %)

구 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a)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b)	강간 미수 (c)	강간 (d)	신체적 성폭력 (aUbU cUd)	성 희 롱	음란 전화 등	성기 노출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스 토 킹
지난 1년간	전체	1.4	0.2	0.03	0.1	1.5	0.9	27.8	1.7		0.2
	2013 여성	2.4	0.4	0.1	0.1	2.7	1.9	26.4	3.0		0.5
	남성	0.3	0.0	0.0	0.0	0.3	0.0	29.2	0.3		0.0
	2016 전체	0.8	0.0	0.0	0.0	0.8	0.5	5.5	1.0	0.1	0.1
	여성	1.5	0.0	0.0	0.0	1.5	0.9	4.0	1.6	0.1	0.3
	남성	0.1	-	-	-	0.1	0.1	7.0	0.4	-	-
	2019 전체	0.4	0.0	0.0	-	0.4	0.4	2.1	0.3	0.1	-
	여성	0.7	0.0	0.0	-	0.8	0.8	2.0	0.6	0.1	-
	남성	0.0	-	-	-	0.0	0.0	2.3	0.1	0.0	-
평생 동안	전체	9.9	1.1	0.5	0.4	10.2	5.3	51.0	21.3		1.7
	2013 여성	18.7	2.3	1.0	0.7	19.5	10.1	52.3	36.8		2.9
	남성	1.3	0.0	0.0	0.0	1.3	0.7	49.6	6.4		0.6
	2016 전체	10.7	0.4	0.5	0.1	11.0	3.9	13.6	16.9	0.1	0.9
	여성	20.6	0.9	0.9	0.2	21.3	7.2	12.1	30.4	0.2	1.5
	남성	1.2	-	-	-	1.2	0.8	15.0	4.0	-	0.3
	2019 전체	9.3	0.9	0.3	0.1	9.6	5.6	10.5	12.1	0.3	0.1
	여성	17.9	1.7	0.6	0.2	18.5	9.8	10.4	22.9	0.5	0.2
	남성	1.2	0.1	-	-	1.2	1.6	10.5	1.9	0.1	-

주: 1) 표 구분은 2019년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 2019년 피해 유형에 준하여 2013, 2016년 피해 유형을 배치함.
 2) 2013년 성추행은 '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a)'와 '심한 성추행(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b)'로 조사되어, 2016년, 2019년 정의와 차이가 있으며, 2013년 '음란전화 등'에는 음란전화/음란 문자/음란메일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되는 스팸문자나 스팸메일까지 포함하여 조사되어 이를 제외한 2016년, 2019년 정의와 차이가 있음.
 3) 2016년 음란전화 등은 'PC, 핸드폰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피해 유형의 정의는 2019년과 동일함. 반면, 2016년에 조사된 '몰래카메라'에는 2019년의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의 정의가 모두 포함됨.
 4) 스토킹의 경우 2013, 2016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이후 실시 될 성폭력이외의 여성폭력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항목에서는 제외됨.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갈수록 2013년 이후 3차례의 조사에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연계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이나 성희롱 평생 피해율과 같이 이전 조사 대비 평생 피해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3년간 진행된 미투 운동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그간 감추어졌던 성폭력 피해가 일부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¹³⁾

1) PC,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음란 전화 등 수신

가) 피해율 추이

2013년도에도 음란 전화 등의 피해 조사를 했으나 2013년에는 음란 전화 등의 정의에 ‘광고 및 스팸성 문자 및 전화’도 포함되어 있어 함께 비교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5.5%에서 2019년 2.1%로 감소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피해율은 2016년 4.0%에서 2.0%로, 남성 응답자의 피해율은 2016년 7.0%에서 2019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30〉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단위: %)

	2016년	2019년
전체	5.5	2.1
여성	4.0	2.0
남성	7.0	2.3

주: 백분율은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평생 동안의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3.6%에서 10.5%로 감소하였고, 여성 응답자의 피해율은 2016년 12.1%에서 2019년 10.4%로, 남성 응답자의 피해율은 2016년 15.0%에서 10.5%로 지난 1년간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는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IV-31〉 음란 전화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6년	2019년
전체	13.6	10.5
여성	12.1	10.4
남성	15.0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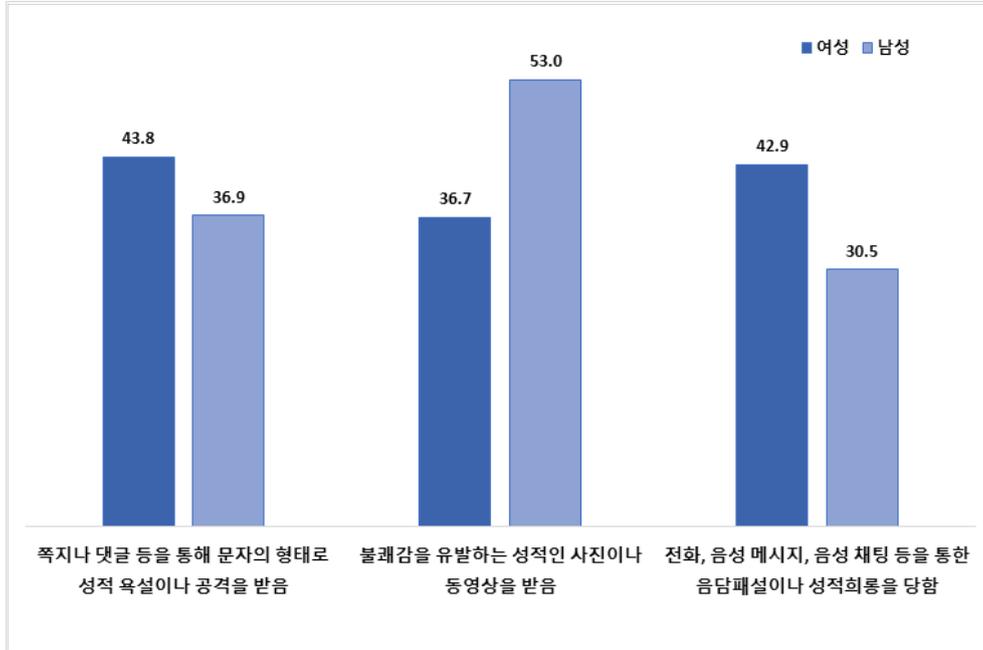
주: 백분율은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2.1%, 35세~50세 미만 23.7%, 19세 미만 14.8% 순이었고,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18.0%, 없는 비율 80.8%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빈도에서는 2~4회 9.0%, 1회 5.7%, 10회 이상 2.5%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유형(복수응답)에서는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43.8%,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42.9%,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36.7%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6.3%,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3.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6.9% 순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 49.3%, 잘 모름 46.2%, 여성 4.5% 순이었다. 피해 경로(복수응답)는 ‘문자 및 전화’ 61.1%, ‘인스턴트 메신저’ 29.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2.5%, 이메일 12.2%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49.0%, 35세~50세 미만 27.7%, 19세 미만 12.4% 순이었고,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20.9%, 없는 비율은 78.3%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빈도는 2~4회 8.5%, 1회 6.4%, 10회 이상 4.0%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53.0%,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36.9%,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30.5%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전혀 모르는 사람 65.2%,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6.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4.8% 순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잘 모름 57.8%, 남성 33.4% 순이었고, 피해경로(복수응답)는 ‘문자 및 전화’ 53.7%, ‘인스턴트 메신저’ 42.1%, ‘이메일’ 1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0.6%, ‘게임 사이트 및 게임 채팅’ 9.7%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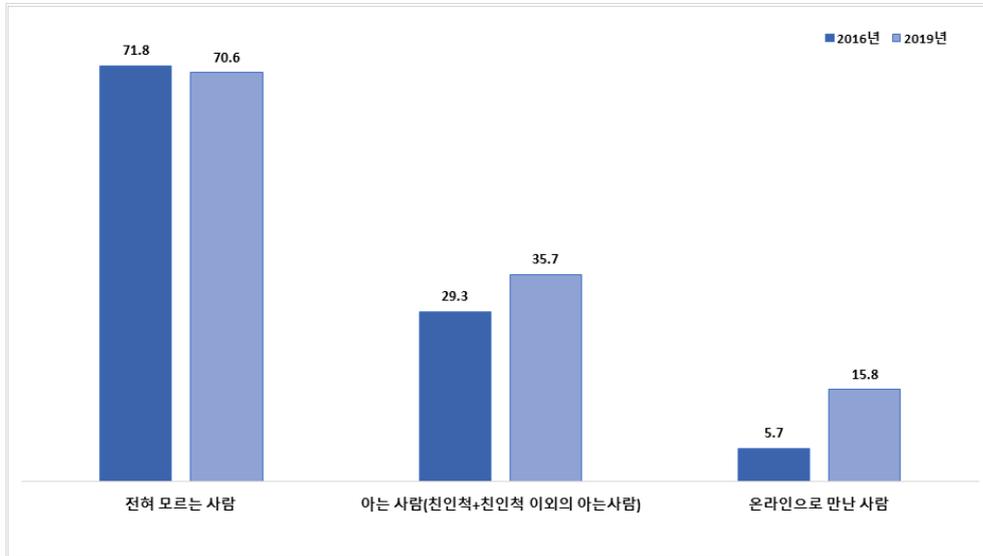


[그림 IV-6] 성별 음란전화 등의 피해 유형

여성과 남성 모두 첫 피해 연령대는 19세~35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은 남성이 조금 더 높았고, 피해 횟수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2~4회가 많았다. 피해 유형에서는 여성은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한 피해율이 높았는데, 남성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은 피해율이 높았다. 가해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모르는 사람,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순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의 경우 2016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6년과 2019년 모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6년에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가 5.7%였던 반면, 2019년에는 15.8%로 나타나 가해자 중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의 유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의 생활 환경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그림 IV-7] 음란 전화 등의 가해자 유형 비교(2016년, 2019년)

피해 경로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문자 및 전화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피해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살펴보면 인스턴트 메신저, 포털 사이트에서의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경향이 비슷했고, 게임 사이트 및 게임채팅에서는 남성(22.1%)이 여성(8.8%)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게임 사이트나 게임채팅이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로에서의 응답률은 여성(7.4%)과 남성(9.7%)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게임 사이트나 게임채팅에서의 여성 피해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2> 음란전화 등의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13.6	14.8	12.4
19세~35세 미만	50.5	52.1	49.0
35세~50세 미만	25.8	23.7	27.7
50세 이상	9.7	8.5	10.9
무응답	0.4	0.9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100.0	100.0
1년 사이 피해 빈도수			
1회	6.0	5.7	6.4
2~4회	8.7	9.0	8.5
5~9회	1.4	0.8	2.0
10회 이상	3.2	2.5	4.0
없음	79.5	80.8	78.3
무응답	1.0	1.3	0.8
계	100.0	100.0	100.0
피해 유형(복수응답)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40.2	43.8	36.9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45.1	36.7	53.0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36.5	42.9	30.5
기타	-	-	-
무응답	0.5	0.4	0.7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1.0	1.6	0.5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4.7	33.1	36.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5.8	16.9	14.8
전혀 모르는 사람	70.6	76.3	65.2
가해자 성별			
남성	41.1	49.3	33.4
여성	6.7	4.5	8.8
잘 모름	52.2	46.2	57.8
계	100.0	100.0	100.0
피해 경로(복수응답)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36.1	29.6	4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11.5	12.5	10.6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4.0	4.0	4.0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시 인사이트 등)	7.3	8.2	6.4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온 등)에서의 댓글 (각종 뉴스, 기사 등)	5.0	6.8	3.3
이메일	11.7	12.2	11.2
문자 및 전화	57.3	61.1	53.7
게임 사이트 및 게임채팅	8.6	7.4	9.7
채팅 어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소개팅 앱 등)	2.7	2.5	2.9
1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트위치 등)	1.8	2.1	1.4
기타	-	-	-
무응답	0.3	0.6	-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1, 2, 3순위 응답)	전체	여성	남성
	1 2 3 1+2+3	1 2 3 1+2+3	1 2 3 1+2+3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60.4 22.6 7.9 88.4	63.7 20.0 9.1 90.0	57.4 25.1 6.8 87.0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7.5 21.5 17.9 42.9	10.1 26.5 16.6 48.7	5.0 16.8 19.1 37.3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1.9 9.3 13.3 21.9	2.7 9.9 13.8 23.4	1.2 8.8 12.8 20.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시 인사이트 등)	5.7 14.1 16.3 32.7	3.6 14.5 16.8 31.2	7.7 13.6 15.8 34.2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온 등)에서의 댓글 (각종 뉴스, 기사 등)	17.6 19.3 19.6 52.4	14.4 18.6 21.5 49.6	20.6 20.0 17.9 55.0
게임 사이트 및 게임채팅	2.6 5.3 9.6 15.6	2.1 2.0 5.9 8.8	3.1 8.3 13.0 22.1
채팅 어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소개팅 앱 등)	0.9 1.0 1.5 3.1	0.1 1.3 1.8 2.9	1.6 0.6 1.2 3.2
1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트위치 등)	2.7 6.9 13.9 21.0	2.1 7.2 14.5 20.9	3.3 6.7 13.4 21.1
기타	0.2 - - 0.2	0.5 - - 0.5	- - - -
무응답	0.3 - - 0.3	0.7 - - 0.7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백분율은 995명(여성 737명/남성 25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피해 유형, 가해자 유형, 피해 경로 및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불법촬영

가) 피해율 추이

2013년도 조사에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피해를 조사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촬영과 유포를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조사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으나, 흐름을 보는 차원에서 비교를 하였다. 2019년도의 불법촬영물 촬영 피해율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율을 단순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2016년과의 비교에서 피해율을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어 2019년도 조사의 불법촬영물 촬영 피해 응답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에서 2016년에는 피해율이 0.1%였고, 2019년에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여성 응답자에서만 피해 응답이 있었으나, 2019년에는 남성 응답자에서도 피해 응답이 있었다.

〈표 IV-33〉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단위: %)

	2016년	2019년
전체	0.1	0.1
여성	0.1	0.1
남성	-	0.0

주: 백분율은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6년에는 피해율이 0.1%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피해율이 0.3%인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2019년의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여성의 피해율은 0.2%였으나 2019년에는 0.5%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2016년에는 피해 응답이 없었으나, 2019년에는 0.1%의 피해율을 보인다.

2016년에는 촬영과 유포 모두를 포함하여 조사했지만 2019년에는 촬영과 유포를 따로 조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율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 당시에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숨어 있는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IV-34〉 불법촬영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6년	2019년
전체	0.1	0.3
여성	0.2	0.5
남성	-	0.1

주: 백분율은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4.6%가 가장 높고, 35세~50세 미만 17.9%, 19세 미만 13.4% 순이었으며, 평생 동안 불법촬영 피해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 없는 경우는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4.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4.6%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다.

〈표 IV-35〉 불법촬영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11.2	13.4
19세~35세 미만	70.5	64.6
35세~50세 미만	14.9	17.9
50세 이상	3.4	4.1
계	100.0	100.0
1년 사이 피해 빈도수		
1회	3.9	4.6
2~4회	7.7	-
5~9회	-	-
10회 이상	1.2	1.4
없음	80.1	85.2
무응답	7.2	8.7

구분	전체	여성
계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1.9	2.3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2.7	24.6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3.0	3.6
전혀 모르는 사람	66.8	74.9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22.2	6.6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6.2	7.5
학교 및 학교 주변	2.1	2.6
인구 밀집 상업지	20.1	24.2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54.1	65.0
그 외의 장소	-	-
무응답	3.4	4.1

주: 1) 백분율은 41명(여성 3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불법촬영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남성 응답자 중 피해 경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였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49.0%,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45.6%, ‘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12.4%,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6.1%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51.8%,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48.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38.5%였다.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복수응답)는 ‘인스턴스 메신저’ 5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38.5%, ‘블로그’ 33.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5.5%, ‘P2P 사이트’ 6.9% 순이었고, ‘기타’ 응답도 16.8%가 있었다.

〈표 IV-36〉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21.8	21.8
19세~35세 미만	69.3	69.3
35세~50세 미만	8.9	8.9
50세 이상	-	-
계	100.0	100.0
피해 유형(복수응답)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49.0	49.0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45.6	45.6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6.1	6.1
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12.4	12.4
기타	-	-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	-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48.2	48.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38.5	38.5
전혀 모르는 사람	51.8	51.8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복수응답)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55.2	5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38.5	38.5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33.1	33.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등)	25.5	25.5
웹하드 사이트	-	-
P2P 사이트(토렌트 등)	6.9	6.9
성인사이트	-	-
기타	16.8	16.8

주: 1) 백분율은 11명(여성 1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3) 피해 유형, 가해자 유형,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4)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노출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2013년에서 2016년, 2019년까지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피해율은 1.7%였으나 2016년에는 1.0%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0.3%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피해율 또한 전체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37〉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1.7	1.0	0.3
여성	3.0	1.6	0.6
남성	0.3	0.4	0.1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21.3%, 2016년 피해율은 16.9%, 2019년 피해율은 12.1%로 나타나 지난 1년간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에서 모두 피해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율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8〉 성기 노출 등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21.3	16.9	12.1
여성	36.8	30.4	22.9
남성	6.4	4.0	1.9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69.6%, 19세~35세 미만 23.6%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8.1%, 3회 이상 31.3%, 2회 30.6%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및 학교 주변 59.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39.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0.6%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57.6%, 19세~35세 미만 30.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1.5%, 2회 30.7%, 3회 이상 27.8%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주변 39.1%,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23.2%, 인구 밀집 상업지 17.8% 순이었다.

발생장소에서 학교 및 학교 주변이 여성은 59.0%, 남성은 39.1%로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노출의 발생 양상이 다른 성폭력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며, 첫 피해 연령 또한 19세 미만인 비율이 전체 기준 68.7%로 높게 나타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39〉 성기 노출 등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68.7	69.6	57.6
19세~35세 미만	24.1	23.6	30.0
35세~50세 미만	5.5	5.3	7.3
50세 이상	1.8	1.5	5.1
계	100.0	100.0	100.0
피해 횟수			
1회	38.4	38.1	41.5
2회	30.6	30.6	30.7
3회 이상	31.0	31.3	27.8
계	100.0	100.0	100.0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3.2	3.0	5.6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38.2	39.5	23.2
학교 및 학교 주변	57.4	59.0	39.1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밀집 상업지	9.4	8.6	17.8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1.5	1.4	2.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0.4	30.6	28.2
그 외의 장소	0.1	0.1	-

주: 1) 백분율은 1,739명(여성 1,690명/남성 4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5) 성희롱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2013년에서 2016년, 2019년까지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피해율은 0.9%였으나 2016년에는 0.5%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0.4%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피해율은 여성의 경우 전체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 2016년에 0.1%로 2013년보다 증가했다가 2019년에 0.0%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0.9	0.5	0.4
여성	1.9	0.9	0.8
남성	0.0	0.1	0.0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5.3%, 2016년 피해율은 3.9%로 감소했으나 2019년 피해율은 5.6%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 10.1%에서 2016년 7.2%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9.8%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2013년 0.7%, 2016년 0.8%, 2019년 1.6%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희롱 피해에서도 매 조사마다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성희롱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5.3	3.9	5.6
여성	10.1	7.2	9.8
남성	0.7	0.8	1.6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8.4%, 19세 미만 24.2%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49.5%, 1회 25.4%, 2회 25.0%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113.3%, 전혀 모르는 사람 35.1%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인구 밀집 상업지 49.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3.0%,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9.2%, 학교 및 학교 주변 25.9%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82.9%, 19세 미만 16.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68.6%, 1회 16.1%, 2회 15.3%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103.1%, 전혀 모르는 사람 10.4%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0.9%, 인구 밀집 상업지 22.3% 순이었으며,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중에서는 기업, 회사 사무실(28.4%), 인구 밀집 상업지 중에서는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20.2%)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첫 피해 연령이 19세~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19세 미만인 응답도 여성은 24.2%, 남성은 16.0%로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희롱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1회 또는 2회 비율이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아는 사람 비율이 모르는 사람에 비해 높았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인구 밀집 상업지의 비율이 높았는데, 남성은 22.3%, 여성은 49.5%이었고, 기업, 회사 사무실의 비율은 여성 30.9%, 남성은 28.4%였다. 가해자 유형, 발생 장소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성희롱이 주로 직장의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임을 알 수 있으며, 학교 비율도 높게 나타나 직장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위계 관계에서도 발생함을 시사한다.

〈표 IV-42〉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22.9	24.2	16.0
19세~35세 미만	70.6	68.4	82.9
35세~50세 미만	4.2	4.7	1.1
50세 이상	1.1	1.3	-
무응답	1.2	1.4	-
계	100.0	100.0	100.0
피해 횟수			
1회	24.0	25.4	16.1
2회	23.6	25.0	15.3
3회 이상	52.4	49.5	68.6
계	100.0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2.8	3.3	-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111.8	113.3	103.1
전혀 모르는 사람	31.4	35.1	10.4
무응답	0.1	0.1	-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7.1	7.1	7.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9.1	9.5	6.8
학교 및 학교 주변	22.9	25.9	5.8
인구 밀집 상업지	45.5	49.5	22.3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2.7	33.0	30.9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6.3	29.2	9.8
그 외의 장소	5.2	1.6	25.9
무응답	0.4	0.5	-

주: 1) 백분율은 731명(여성 693명/남성 3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6)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2013년에서 2016년, 2019년까지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피해율은 1.4%였으나 2016년에는 0.8%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0.4%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피해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전체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43〉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1.4	0.8	0.4
여성	2.4	1.5	0.7
남성	0.3	0.1	0.0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9.9%, 2016년 피해율은 10.7%로 증가했으나 2019년 피해율은 9.3%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피해율이 감소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 18.7%에서 2016년 20.6%로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17.9%로 감소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2013년 1.3%, 2016년 1.2%로 감소하였고, 2019년 1.2%로 변동이 없었다.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에서도 조사마다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에 피해 15%p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9.9	10.7	9.3
여성	18.7	20.6	17.9
남성	1.3	1.2	1.2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2%, 19세 미만 32.4%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7.7%, 2회 32.4%, 3회 이상 29.9%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 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81.1%,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9.4% 순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81.0%, 인구 밀집 상업지 20.9%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6.5%, 19세 미만 24.8%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4.6%, 3회 이상 33.4%, 2회 21.9%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83.7%, 전혀 모르는 사람 37.0%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5.8%, 인구 밀집 상업지 34.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22.5%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등에서의 피해 경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19세~35세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는 19세 미만 피해율도 32.4%로 높았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여성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이 81.1%로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29.4%에 비해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 37.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3.7%로 여성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과 인구 밀집 상업지 순이었는데, 남성보다 여성은 교통 시설 내부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표 IV-4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31.9	32.4	24.8
19세~35세 미만	59.7	59.2	66.5
35세~50세 미만	5.3	5.6	1.6
50세 이상	1.0	0.9	2.4
무응답	2.2	2.0	4.8
계	100.0	100.0	100.0
피해 횟수			
1회	38.2	37.7	44.6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회	31.7	32.4	21.9
3회 이상	30.1	29.9	33.4
계	100.0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2.3	2.3	3.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3.0	29.4	83.7
전혀 모르는 사람	78.2	81.1	37.0
무응답	0.6	0.6	-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3.1	3.1	3.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3.9	4.0	3.0
학교 및 학교 주변	7.2	6.9	10.7
인구 밀집 상업지	21.8	20.9	34.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7.6	6.6	22.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78.1	81.0	35.8
그 외의 장소	1.4	0.6	11.9
무응답	0.1	0.1	-

주: 1) 백분율은 1,305명(여성 1,275명/남성 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7)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2013년에서 2016년에 감소하였으며, 2016년과 2019년에는 0.0%로 피해가 거의 잡히지 않았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에는 0.4%였으나 2016년과 2019년에는 0.0%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2013년에는 0.0%였으나 2016년과 2019년에는 피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1.1%, 2016년 피해율은 0.4%로 감소했으나 2019년 피해율은 0.9%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 2.3%에서 2016년 0.9%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1.7%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2013년

구분	전체	여성
3회 이상	28.8	26.4
계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7.9	8.5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3.6	81.8
전혀 모르는 사람	19.3	19.4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20.7	18.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6.4	6.9
학교 및 학교 주변	8.8	7.7
인구 밀집 상업지	45.0	46.7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9.6	10.4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1	28.5
그 외의 장소	-	-
무응답	0.3	0.4

주: 1) 백분율은 118명(여성 11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8) 강간미수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시행한 3개 연도에서 피해율이 거의 잡히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 2016년과 2019년에는 피해 응답이 없었다.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0.5%, 2016년 피해율은 0.5%로 동일했으나 2019년 피해율은 0.3%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피해율이 감소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 1.0%에서 2016년 0.9%로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0.6%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2013년 0.0%였으나 2016년과 2019년에는 피해 응답이 없었다.

〈표 IV-48〉 강간미수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0.5	0.5	0.3
여성	1.0	0.9	0.6
남성	0.0	-	-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남성 응답자 중 강간미수 피해 경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7.4%, 19세 미만 25.5%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73.3%, 2회 20.0% 순으로 1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68.7%, 전혀 모르는 사람 31.3%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42.4%, 집 23.9%, 인구 밀집 상업지 19.5%,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15.1% 순이었다.

〈표 IV-49〉 강간미수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25.5	25.5
19세~35세 미만	67.4	67.4
35세~50세 미만	3.4	3.4
50세 이상	-	-
무응답	3.7	3.7
계	100.0	100.0
피해 횟수		
1회	73.3	73.3
2회	20.0	20.0
3회 이상	6.7	6.7
계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구분	전체	여성
친인척(가족포함)	6.6	6.6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68.7	68.7
전혀 모르는 사람	31.3	31.3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23.9	23.9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15.1	15.1
학교 및 학교 주변	3.2	3.2
인구 밀집 상업지	19.5	19.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42.4	42.4
그 외의 장소	3.5	3.5

주: 1) 백분율은 45명(여성 4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3)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9) 강간

가) 피해율 추이

지난 1년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시행한 3개년도에서 피해율이 거의 잡히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는 지난 1년간 강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없었다.

평생 동안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 2013년 피해율은 0.4%, 2016년 피해율은 0.1%로 감소했고 2019년 피해율은 0.1%로 나타나 2016년과 동일하였다. 성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13년 0.7%에서 2016년 0.2%로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0.2%로 2016년과 동일하였다. 남성의 경우 2013년 0.0%였으나 2016년과 2019년에는 피해 응답이 없었다.

〈표 IV-50〉 강간의 피해율 추이: 평생

(단위: %)

	2013년	2016년	2019년
전체	0.4	0.1	0.1
여성	0.7	0.2	0.2
남성	0.0	-	-

주: 백분율은 2013년 3,500명(여성 2,588명/남성 912명)(응답인원), 2016년 7,200명(여성 5,400명/남성 1,800명)(응답인원), 2019년 10,106명(여성 7,573명/남성 2,53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피해실태

남성 응답자 중 강간 피해 경험자는 없었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0%, 19세 미만 28.3%, 35세~50세 미만 12.7%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58.9%, 2회 21.1%, 3회 이상 20.0%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0.9%, 전혀 모르는 사람 17.7%, 친인척(가족포함) 12.7%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집 45.2%, 인구 밀집 상업지 42.8%,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13.5% 순이었다.

〈표 IV-51〉 강간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첫 피해 연령		
19세 미만	28.3	28.3
19세~35세 미만	59.0	59.0
35세~50세 미만	12.7	12.7
50세 이상	-	-
계	100.0	100.0
피해 횟수		
1회	58.9	58.9
2회	21.1	21.1
3회 이상	20.0	20.0
계	100.0	100.0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친인척(가족포함)	12.7	12.7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0.9	80.9
전혀 모르는 사람	17.7	17.7
발생장소(복수응답)		
집	45.2	45.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9.9	9.9
학교 및 학교 주변	-	-
인구 밀집 상업지	42.8	42.8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13.5	13.5

구분	전체	여성
그 외의 장소	-	-

주: 1) 백분율은 14명(여성 1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3) 가해자 유형 및 발생장소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5. 성폭력 피해 영향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성폭력 피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생 동안 9개 유형(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에 대하여 신체적 문제,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및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가. 신체적 문제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6.9%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고, 3.1%는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3.7%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성 응답자 중에서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였다.

〈표 IV-52〉 신체적 문제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1	96.9	100.0
여성	3.7	96.3	100.0
남성	1.5	98.5	100.0

주: 백분율은 평생 동안 9개의 성폭력 피해유형을 하나 이상 경험한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신체적 접촉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의 경우 6.3%가,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11.5%가 신체적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표 IV-53〉 신체적 문제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6.7	93.3	100.0
여성	6.3	93.7	100.0
남성	11.5	88.5	100.0

주: 백분율은 1,352명(여성 1,321명/남성 3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 경험과 신체적 문제와의 관계를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피해유형 별로 음란전화 등 6.2%, 불법촬영 15.5%, 불법촬영물 유포 19.2%, 성기노출 등 3.3%, 성희롱 6.1%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는, 음란전화 등 1.4%, 불법촬영 45.7%, 성기노출 등 4.2%, 성희롱 6.3%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다.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 경험자에 대해 폭력피해의 수위가 심각해질수록 신체적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⁴⁾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만 있는 경우(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폭행/협박 미수반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6%, 강간을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U강간)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6%였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질수록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폭행/협박 미수반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6%였으며, 강간미수와 강간 피해는 피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14)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은 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경험은 반드시 있되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는 강간미수 경험은 반드시 있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혹은 수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U강간은 강간 경험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표 IV-54〉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의 관계

(단위: %)

구 분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U 폭행/ 협박 수반)	성추행 U 강간 미수 U 강간	성추행 U 강간 미수 U 강간
신체 증상 있음	3.7	20.5	19.2	3.4	6.1	4.0	19.1	36.6	69.6
전체 신체 증상 없음	96.3	79.5	80.8	96.6	93.9	96.0	80.9	63.4	3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체 증상 있음	6.2	15.5	19.2	3.3	6.1	3.6	17.4	36.6	69.6
여성 신체 증상 없음	93.8	84.5	80.8	96.7	93.9	96.4	82.6	63.4	3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체 증상 있음	1.4	45.7	-	4.2	6.3	8.5	36.6	-	-
남성 신체 증상 없음	98.6	54.3	-	95.8	93.7	91.5	63.4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주: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995명(여성 737명/남성 258명), 41명(여성 38명/남성 3명), 11명(여성 11명), 1,739명(여성 1,690명/남성 49명), 731명(여성 693명/남성 38명), 1,197명(여성 1,170명/남성 27명), 100명(여성 96명/남성 4명), 41명(여성 41명), 14명(여성 1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신체적 문제를 입었던 경우에 대해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을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두통 경험 57.3%, 수면 장애를 겪음 49.3%,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14.9%, 섭식장애를 겪음 8.3%, 성기에 상처를 입음 6.2%, 복통 경험 4.7%, 성병에 걸림 2.4%, 임신 1.1% 순이었다.

〈표 IV-55〉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임신했다	성병에 걸림	성기에 상처를 입음	신체부위 (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두통을 경험	수면 장애를 겪음	섭식 장애를 겪음	복통을 경험	기타
전체	0.9	2.1	5.4	13.0	56.6	52.2	7.3	4.1	-
여성	1.1	2.4	6.2	14.9	57.3	49.3	8.3	4.7	-

주: 1) 신체적 문제의 내용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110명(여성 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주로 어떠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음란전화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신체적 문제로 수면장애 55.3%, 두통 40.5%, 섭식장애 3.6%, 복통 2.1%를 경험하였다.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신체적 문제로 수면장애 71.6%, 두통 29.3%, 섭식장애와 복통 각각 20.8%를 경험하였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수면장애와 두통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23.0%이었다. 성기노출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신체적 문제는 두통 56.7%, 수면장애 53.6%, 섭식장애 7.1%, 복통 5.8%이었고,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두통 53.2%, 수면장애 49.0%, 복통 6.3%, 섭식장애 3.7%를 신체적 문제로 경험하였다.

〈표 IV-5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전체	두통을 경험	39.9	55.6	23.0	56.8	60.4
	수면장애를 겪음	56.8	82.2	23.0	58.3	48.5
	섭식장애를 겪음	2.9	13.1	-	6.4	3.2
	복통을 경험	1.7	13.1	-	5.2	5.4
	기타	-	-	-	-	-
여성	두통을 경험	40.5	29.3	23.0	56.7	53.2
	수면장애를 겪음	55.3	71.6	23.0	53.6	49.0
	섭식장애를 겪음	3.6	20.8	-	7.1	3.7
	복통을 경험	2.1	20.8	-	5.8	6.3
	기타	-	-	-	-	-

주: 1)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48명(여성 45명), 7명(여성 6명), 3명(여성 3명), 59명(여성 57명), 44명(여성 42명)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 경험자에 대해 폭력피해의 수위가 심각해질수록 신체적 문제의 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⁵⁾.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두통과 수면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모든 폭력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임신, 성병에 걸림, 성기에 상처를 입음,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두통, 수면장애, 섭식장애, 복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만 있는 경우에는 두통을 경험한 비율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폭행/협박 미수반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에는 수면장애를 겪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기에 상처를 입었다는 응답과,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

15)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은 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경험은 반드시 있되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는 강간 미수 경험은 반드시 있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혹은 수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U강간은 강간 경험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미수) 수면장애를 겪었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피해자에 비해 성기에 상처를 입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강간을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U강간) 두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문제의 전 유형에 걸쳐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이 나타나 폭력의 수위가 심각해질수록 여러 유형의 신체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평생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U 강간미수	성추행U 강간미수U 강간
임신	-	-	-	12.5
성병에 걸림	-	-	-	28.5
성기에 상처를 입음	-	9.3	13.8	25.4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	37.6	32.0	27.5
전체 두통을 경험	66.4	54.0	34.1	58.3
수면장애를 겪음	43.6	59.5	71.0	45.2
섭식장애를 겪음	4.7	11.4	7.5	5.1
복통을 경험	3.4	10.6	-	9.3
기타	-	-	-	-
여성	-	-	-	12.5
성병에 걸림	-	-	-	28.5
성기에 상처를 입음	-	11.2	13.8	25.4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	45.3	32.0	27.5
여성 두통을 경험	67.1	44.6	34.1	58.3
수면장애를 겪음	44.5	51.3	71.0	45.2
섭식장애를 겪음	5.4	13.7	7.5	5.1
복통을 경험	4.0	12.8	-	9.3
기타	-	-	-	-

주: 1) 성폭력 피해와 신체적 문제 내용과의 관계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43명(여성 41명), 21명(여성 20명), 15명(여성 15명), 10명(여성 1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9.1%가 병원치료를 받았고 90.9%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신체적 문제 관련 병원치료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1.0	89.0	100.0
여성	9.1	90.9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10명(여성 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신체적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여성의 경우, 총 치료기간은 2주~4주 45.1%, 4주 이상 30.6%, 2주 미만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신체적 문제 관련 총 치료기간

(단위: %)

구분	2주 미만	2주~4주 미만	4주 이상	계
전체	17.6	60.4	22.1	100.0
여성	24.3	45.1	30.6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1명(여성 1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신체적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치료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10.6%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렸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0〉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피해사실 고지 여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5.4	64.6	100.0
여성	10.6	89.4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1명(여성 1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신체적 문제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부담한 신체적 증산 관련 치료비용은, 여성의 경우 10만원~50만원 미만 51.5%, 50만원 이상 32.9%, 10만원 미만 15.6% 순이었다.

〈표 IV-61〉 피해자가 부담한 신체적 문제 관련 치료비용

(단위: %)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전체	11.3	65.0	23.8	100.0
여성	15.6	51.5	32.9	100.0

-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1명(여성 1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로 인해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영업을 못하거나, 가사나 돌봄을 하지 못하는 등의 시간적 손실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9.8%가 시간적 손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2〉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20.3	79.7	100.0
여성	19.8	80.2	100.0

-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10명(여성 10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시간적 손실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시간적 손실 기간을 살펴보면, 2주 미만 37.9%, 2주~4주 미만 35.2%, 4주 이상 26.8%로 나타났다.

〈표 IV-63〉 신체적 문제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단위: %)

구분	2주 미만	2주~4주 미만	4주 이상	계
전체	47.2	30.0	22.8	100.0
여성	37.9	35.2	26.8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21명(여성 2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정신적 고통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7%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응답자 중 24.4%, 남성 응답자 중 7.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여성 응답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정신적 고통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9.7	80.3	100.0
여성	24.4	75.6	100.0
남성	7.1	92.9	100.0

주: 백분율은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신체적 접촉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34.3%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여성의 경우 34.8%, 남성의 경우 27.5%가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65〉 정신적 고통 유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4.3	65.7	100.0
여성	34.8	65.2	100.0
남성	27.5	72.5	100.0

주: 백분율은 1,352명(여성 1,321명/남성 3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피해유형 별로 음란전화 등 26.5%, 불법촬영 60.6%, 불법촬영물 유포 38.6%, 성기노출 등 21.9%, 성희롱 47.0%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는, 음란전화 등 4.8%, 불법촬영 45.7%, 성기노출 등 11.2%, 성희롱 31.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불법촬영에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 경험자에 대해 폭력 피해의 수위가 심각해질수록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⁶⁾.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만 있는 경우(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0.6%였다. 여성은 30.9%, 남성은 26.4%로,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폭행/협박 미수반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여성의 58.1%, 남성의 36.6%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에는 여성의 71.5%가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으며, 강간을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U강간)에는 여성의 86.8%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신체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질수록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은 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경험은 반드시 있되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 미수는 강간미수 경험은 반드시 있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혹은 수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U강간은 강간 경험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표 IV-66〉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

(단위: %)

구 분	음란 전화 등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성기 노출 등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U폭행/ 협박 수반)	성추행 U 강간 미수	성추행 U 강간 미수 U 강간
정신적 고통 있음	15.3	58.1	38.6	21.1	44.7	30.6	56.2	71.5	86.8
전체 정신적 고통 없음	84.7	41.9	61.4	78.9	55.3	69.4	43.8	28.5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신적 고통 있음	26.5	60.6	38.6	21.9	47.0	30.9	58.1	71.5	86.8
여성 정신적 고통 없음	73.5	39.4	61.4	78.1	53.0	69.1	41.9	28.5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신적 고통 있음	4.8	45.7	-	11.2	31.1	26.4	36.6	-	-
남성 정신적 고통 없음	95.2	54.3	-	88.8	68.9	73.6	63.4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주: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995명(여성 737명/남성 258명), 41명(여성 38명/남성 3명), 11명(여성 11명), 1,739명(여성 1,690명/남성 49명), 731명(여성 693명/남성 38명), 1,197명(여성 1,170명/남성 27명), 100명(여성 96명/남성 4명), 41명(여성 41명), 14명(여성 1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신적 고통의 내용(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4%,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6%,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6.8%, ‘불안 및 우울’ 20.7%,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3.1%,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1.8%,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0.2%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2%, ‘불안 및 우울’ 30.1%,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27.3%,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4.9%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67〉 정신적 고통 내용(복수응답)

(단위: %)

구분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	불안 및 우울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감정 기복이 심해짐	수치심/모욕감	죄책감	기타
전체	32.1	24.5	11.3	21.6	12.2	2.3	10.6	7.4	59.3	3.0	0.2
여성	32.6	26.8	11.8	20.7	13.1	2.5	10.2	7.8	59.4	3.3	0.2
남성	27.3	3.3	7.2	30.1	4.3	-	14.9	3.6	59.2	-	-

주: 1) 정신적 고통 내용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백분율은 695명(여성 672명/남성 2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주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음란전화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수치심/모욕감 57.5%,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2%, 불안 및 우울 30.2%의 순이었다.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경험한 정신적 고통은 수치심/모욕감이 68.0%, 불안 및 우울 41.9%,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39.2% 순이었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모두 수치심/모욕감을 경험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짐 82.0%, 불안 및 우울 82.0%,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51.9%,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한 경우가 각각 49.8%이었다. 성기노출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1.8%,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4.0%도 수치심/모욕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8〉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1.3	41.6	51.9	31.0	39.5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19.6	34.0	27.4	31.0	25.9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1.7	22.2	38.4	11.1	13.3
불안 및 우울	31.5	49.5	82.0	22.5	23.6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1.1	7.3	-	13.9	14.4
전체 죽고 싶다는 생각	2.2	9.9	49.8	1.7	2.9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2.9	30.7	49.8	10.8	13.1
감정기복이 심해짐	9.1	22.6	82.0	8.1	9.3
수치심/모욕감	55.9	59.1	100.0	60.6	63.4
죄책감	3.6	13.9	15.9	2.5	4.4
기타	0.7	-	-	-	0.4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2	32.8	51.9	29.0	40.3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3.4	39.2	27.4	31.8	28.9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1.4	25.6	38.4	11.6	13.3
불안 및 우울	30.2	41.9	82.0	21.3	21.5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3.3	8.5	-	13.7	15.1
여성 죽고 싶다는 생각	2.6	11.4	49.8	1.8	3.2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1.8	20.2	49.8	9.6	13.6
감정기복이 심해짐	9.6	26.0	82.0	7.7	10.3
수치심/모욕감	57.5	68.0	100.0	61.8	64.0
죄책감	4.3	16.0	15.9	2.6	4.9
기타	0.8	-	-	-	0.5

주: 1)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204명(여성 193명), 25명(여성 24명), 5명(여성 5명), 360명(여성 354명), 336명(여성 32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 경험자에 대해 폭력피해의 수위가 심각해질수록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⁷⁾.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폭력 피해 유형에서 수치심/모욕감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만 있는 경우에는 수치심/모욕감을 경험한 비율이 61.8%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경험한 비율이 3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폭행/협박 미수반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에는 수치심/모욕감을 경험한 비율이 58.3%로 나타났으며,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낫다는 응답과 불안 및 우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8.4%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 수치심/모욕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51.0%였으며 불안 및 우울이 48.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낫다는 응답도 45.9%로 높게 나타났다. 강간을 경험한 경우(성추행U강간미수U강간) 수치심/모욕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77.9%로 나타났으며, 불안 및 우울을 느꼈다는 응답이 56.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을 느꼈다는 응답이 50.0%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여러 유형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9〉 평생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 유형과의 관계(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복수응답)

(단위: %)

구 분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U 강간미수	성추행U 강간미수U 강간
전체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1.7	31.8	37.0	49.1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7.3	26.7	45.9	41.8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2.9	8.7	19.7	50.0
불안 및 우울	17.1	32.6	48.6	56.7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3.7	10.0	25.8	24.5
죽고 싶다는 생각	1.0	3.6	20.6	37.6

17)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은 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경험은 반드시 있되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는 강간미수 경험은 반드시 있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혹은 수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집단이며, 성추행U강간미수U강간은 강간 경험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구 분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U폭행/협박 수반)	성추행U 강간미수	성추행U 강간미수U 강간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9.9	15.9	35.1	28.9
감정기복이 심해짐	5.0	18.5	25.4	47.5
수치심/모욕감	62.9	54.9	51.0	77.9
죄책감	2.0	9.6	17.4	16.5
기타	0.4	-	-	-
여성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0	27.6	37.0	49.1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8.9	28.4	45.9	41.8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3.7	9.2	19.7	50.0
불안 및 우울	16.2	28.4	48.6	56.7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4.5	10.6	25.8	24.5
죽고 싶다는 생각	1.1	3.8	20.6	37.6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9.7	10.7	35.1	28.9
감정기복이 심해짐	4.6	19.6	25.4	47.5
수치심/모욕감	61.8	58.3	51.0	77.9
죄책감	2.1	10.2	17.4	16.5
기타	0.4	-	-	-

주: 1) 성폭력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유형과의 관계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각 유형별로 365명(여성 357명), 58명(여성 57명), 29명(여성 29명), 12명(여성 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이상에서 경험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3.4%, 남성 응답자 중 6.5%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0〉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7	96.3	100.0
여성	3.4	96.6	100.0
남성	6.5	93.5	100.0

주: 백분율은 695명(여성 672명/남성 2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심리치료 및 상담 84.3%, 약물 치료 29.0%,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1〉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약물 치료	기타
전체	74.1	18.4	37.0	-
여성	84.3	22.2	29.0	-

- 주: 1)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문적인 도움 요청 유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23명(여성 2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 병원치료나 상담 등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하였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10만원~50만원 미만 59.4%, 10만원 미만 26.2%, 50만원 이상 14.4% 순이었다.

〈표 IV-72〉 평생 성폭력 피해자가 부담한 정신적 고통 관련 치료나 상담비용

(단위: %)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전체	25.8	62.2	12.0	100.0
여성	26.2	59.4	14.4	100.0

-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23명(여성 2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병원 치료나 상담 등으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영업을 못 하거나, 가사나 돌봄을 하지 못하는 등 시간적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64.7%가 시간적 손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73〉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70.7	29.3	100.0
여성	64.7	35.3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23명(여성 2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시간적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시간적 손실의 기간을 질문한 결과, 여성은 2주~4주 미만 48.8%, 4주 이상 40.5%, 2주 미만 10.7%로 손실의 기간이 긴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응답자는 모두 2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4〉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기간

(단위: %)

구분	2주 미만	2주~4주 미만	4주 이상	계
전체	32.2	37.0	30.7	100.0
여성	10.7	48.8	40.5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16명(여성 1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다. 2차 피해

2019년도 조사에서는 2차 피해 문항을 추가하여 여러 유형의 2차 피해 유형을 담고자 하였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11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2차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11개 문항 모두에 대해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0% 미만이었으며, 여성의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보아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6.3%,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6.2%,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6%,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3.8%,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3.7%, ‘친해서 한 행

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8%,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2.6% 순이었다. 즉,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여성의 2차 피해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75〉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계
전체				
끝까지 저항했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1.2	36.3	62.5	100.0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	0.6	36.9	62.5	100.0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5.3	94.7	-	100.0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5.5	94.5	-	100.0
네가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1.8	98.2	-	100.0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3.3	96.7	-	100.0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4	98.6	-	100.0
회사(학교)를 잘 다니는 걸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6	53.4	45.0	100.0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2.0	43.7	54.3	100.0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3	33.9	62.9	100.0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2	32.8	63.0	100.0
여성				
끝까지 저항했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1.6	46.4	52.0	100.0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	0.7	47.2	52.0	100.0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6.3	93.7	-	100.0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6.2	93.8	-	100.0
네가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2.2	97.8	-	100.0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3.8	96.2	-	100.0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6	98.4	-	100.0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계
회사(학교)를 잘 다니는 걸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7	52.6	45.7	100.0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2.0	43.6	54.4	100.0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7	35.9	60.4	100.0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6	35.0	60.4	100.0
남성				
끝까지 저항했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0.2	8.7	91.1	100.0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	0.4	8.6	91.1	100.0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2.6	97.4	-	100.0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3.7	96.3	-	100.0
네가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0.7	99.3	-	100.0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2.0	98.0	-	100.0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0.9	99.1	-	100.0
회사(학교)를 잘 다니는 걸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1.3	55.6	43.1	100.0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1.9	43.8	54.3	100.0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2.0	28.4	69.5	100.0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8	26.9	70.3	100.0

주: 1) 백분율은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피해 경험만 있는 경우, '끝까지 저항했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와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에 비해당 응답을 하도록 함.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7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생활하는 중에 2차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생활하는 중에 겪은 2차 피해 문항은 2019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2차 피해에는 주변에서 듣는 것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겪는 불합리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7개 문항 모두

에 대해 생활하는 중에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 미만이었다.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4%,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0.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8%,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0.6% 순이었다.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1.8%,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6% 순이었고,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나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를 경험한 남성 피해자는 없었다.

<표 IV-76>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생활에서의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계
전체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7	99.3	-	100.0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1.1	98.9	-	100.0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4	98.6	-	100.0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0.3	57.2	42.4	100.0
파면, 해임, 해고 및 감봉, 강등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0.1	54.7	45.2	100.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0.4	45.2	54.3	100.0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	0.1	54.8	45.0	100.0
여성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8	99.2	-	100.0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0.9	99.1	-	100.0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4	98.6	-	100.0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0.3	55.9	43.7	100.0
파면, 해임, 해고 및 감봉, 강등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0.1	54.0	45.9	100.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0.6	45.1	54.4	100.0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	0.2	54.1	45.7	100.0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계
남성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2	99.8	-	100.0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1.8	98.2	-	100.0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6	98.4	-	100.0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0.3	60.8	38.9	100.0
파면, 해임, 해고 및 감봉, 강등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0.2	56.7	43.1	100.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	45.7	54.3	100.0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	-	56.9	43.1	100.0

주: 백분율은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라.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제시된 16개 항목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했지만, 남성은 10개 항목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27.3%,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19.7%, ‘혼자서 밖을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겼다’ 18.2%, ‘다니던 직장(학교)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13.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49.8%,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2.9%,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19.5%,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헤어졌다’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가 각각 1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7〉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변화(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4.2	34.4	32.9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22.5	19.7	49.8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26.6	28.3	9.7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24.7	27.3	-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겼다	17.4	18.2	9.7
다니던 직장(학교)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12.9	13.6	6.7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1.7	1.8	-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	1.5	1.6	-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헤어졌다	3.8	3.1	10.7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	6.6	6.2	10.7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5.3	3.8	19.5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3	1.7	8.8
활동하던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예전처럼 하기 어려워졌다	1.4	1.6	-
기존에 활동하던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0.9	1.0	-
교회나 절을 다니는 등 종교 활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다	0.8	0.4	4.5
기타	1.0	1.1	-

주: 1)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백분율은 475명(여성 459명/남성 1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6. 성폭력 피해 대응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평생 동안 9개 유형(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기노출 등, 성희롱,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성폭력 대응방법,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성폭력 관련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가. 성폭력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방법(복수응답)으로 여성의 경우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64.1%, ‘소리를 질렀다’ 22.1%, ‘화를 냈다’ 17.6%, ‘몸을 빼거나 화제를 돌렸다’ 13.7%,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11.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59.9%,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16.8%,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갔다’ 14.9%, ‘화를 냈다’ 13.5% 순이었다. 앞서 피해 응답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 간 성폭력 피해 유형에 차이가 있어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8〉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경우, 대응방법(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54.6	64.1	16.8
소리를 질렀다	19.2	22.1	7.7
빌고 애원하거나 설득하려 했다	0.9	1.1	-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했다	3.6	3.1	5.9
무기나 물건 등을 가지고 대항했다	0.6	0.8	-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했다	2.4	2.5	1.7
경찰이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2	1.5	-
경찰이나 경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0.7	0.8	0.6
화를 냈다	16.8	17.6	13.5
몸을 빼거나 화제를 돌렸다	11.7	13.7	3.5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려 했다	0.3	0.4	-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갔다	6.6	4.6	14.9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20.9	11.1	59.9
기타	-	-	-
무응답	0.1	0.1	-

주: 1)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경우, 대응방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백분율은 1,766명(여성 1,637명/남성 12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 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9%,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5%,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11.1%,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7.8%,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6.5%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

서)가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2.3%,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5% 순이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피해를 경험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IV-79〉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3.3	18.5	32.3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5.1	7.8	-
술이나 잠에 취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0.6	1.0	-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7.4	11.1	0.4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나 상해를 입을 것 같아서	1.3	1.3	1.4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8	23.9	23.5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4.9	6.5	1.9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	43.3	44.0	42.0
기타	0.7	0.8	0.6
무응답	1.0	0.9	1.3

주: 1)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백분율은 1,369명(여성 1,168명/남성 20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평생 동안 9개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1.7%, 남성의 0.7%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0〉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4	98.6	100.0
여성	1.7	98.3	100.0
남성	0.7	99.3	100.0

주: 백분율은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여성은 61.7%가 본인인, 40.1%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1〉 경찰에 신고한 사람(복수응답)

(단위: %)

구분	본인	본인 이외의 사람
전체	67.0	34.6
여성	61.7	40.1

- 주: 1)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49명(여성 4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경찰에 신고한 시기(복수응답)를 여성 응답 기준으로 보면, 피해 직후(3일 이내) 95.8%, 한 달 이상 2.7%, 일주일 이내 1.6% 순이었다.

〈표 IV-82〉 경찰 신고 시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피해 직후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	한 달 이상
전체	87.7	1.4	8.6	2.3
여성	95.8	1.6	-	2.7

- 주: 1) 경찰 신고 시기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49명(여성 4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경찰 수사단계 및 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체계에 서 불편함이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험했다는 응답이 여성은 40.1%이었다.

〈표 IV-83〉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지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43.2	56.8	100.0
여성	40.1	59.9	100.0

주: 1)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2) 백분율은 49명(여성 4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경험한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57.1%,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 46.0%,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 45.9%, ‘증거 확보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26.2%, ‘피해자(나)의 신변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20.1%, ‘가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 19.0%, ‘협박·폭행·저항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았다’ 12.2%,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4〉 수사/사법체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불편함(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45.7	57.1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	36.7	45.9
가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	15.2	19.0
협박·폭행·저항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았다	9.7	12.2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2.0	2.6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	56.7	46.0
신고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며 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	-
증거 확보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21.0	26.2
피해자(나)의 신변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16.1	20.1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겁을 줬다	-	-
기타	-	-

주: 1) 수사/사법체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2) 남성 응답 결과는 사례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3) 백분율은 19명(여성 1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2.4%,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5% 순으로, 남성 응답자의 경우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 여성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0.3%,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8.3%,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8.2%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6.8%,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6.5%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8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0	4.0	4.2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3.5	2.4	6.5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5.7	32.4	44.7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8.3	10.3	2.8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0.4	0.5	-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6.7	8.2	2.5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3.1	3.5	2.2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3	29.5	29.0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7.9	8.3	6.8
기타	0.1	0.1	-
무응답	1.0	0.8	1.4
계	100.0	100.0	100.0

주: 백분율은 3,086명(여성 2,759명/남성 32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다. 관련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평생 동안 9개 유형의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7.6%, 남성은 2.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6〉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6.2	93.8	100.0
여성	7.6	92.4	100.0
남성	2.5	97.5	100.0

주: 백분율은 3,135명(여성 2,805명/남성 33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각 대상별로 도움 요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이웃이나 친구’ 61.7%, ‘가족이나 친척’ 39.6%, ‘선후배’ 16.7%,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7.1%,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7.0%,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2.7%, ‘여성긴급전화 1366’ 2.1%, ‘해바라기센터’ 1.8%,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웃이나 친구’ 52.7%, ‘선후배’ 43.2%,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18.3%, ‘가족이나 친척’ 14.0% 순이었고, 이 외 성폭력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7〉 주위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가족이나 친척	36.9	63.1	39.6	60.4	14.0	86.0
선후배	19.5	80.5	16.7	83.3	43.2	56.8
이웃이나 친구	60.7	39.3	61.7	38.3	52.7	47.3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6.3	93.7	7.0	93.0	-	100.0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8.3	91.7	7.1	92.9	18.3	81.7
여성긴급전화 1366	1.9	98.1	2.1	97.9	-	100.0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2.4	97.6	2.7	97.3	-	10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100.0	-	100.0	-	1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00.0	-	100.0	-	100.0
해바라기센터	1.6	98.4	1.8	98.2	-	100.0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1.2	98.8	1.4	98.6	-	100.0
디지털 장의사	-	100.0	-	100.0	-	100.0
기타	-	-	-	-	-	-

주: 백분율은 219명(여성 210명/남성 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6.4%,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22.0%,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14.9%,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각각 18.0%,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1.4%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10명 중 3명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 응답률이 소폭 높았다. 또한 여성 10명 중 2명, 남성 10명 중 1명은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0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88〉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타	무응답	계
전체	20.8	36.6	6.0	15.3	16.7	-	3.1	1.5	100.0
여성	22.0	36.4	6.7	14.9	16.6	-	1.7	1.7	100.0
남성	11.4	38.6	-	18.0	18.0	-	14.0	-	100.0

주: 백분율은 206명(여성 197명/남성 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정책 방안

- | | |
|---------------|-----|
|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 199 |
| 2. 정책제언 | 212 |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0,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48.7%, 남성 51.3%였다. 연령별로는 19세~35세 미만 30.9%, 35세~50세 미만 34.7%, 50세~65세 미만 3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응답자가 96%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31.5%, 결혼해서 함께 거주 60.0%, 기타(사실혼, 별거, 이혼, 사별 등) 8.5%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14.6%,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 가구 62.3%로 나타났다.

2)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자 중 78.3%가 취업상태였고, 21.7%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비취업상태를 나눠서 살펴본 결과 가사가 51.0%로 가장 많았고, 정규 교육기관 통학 26.1%, 육아 6.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인 경우, 직업을 살펴본 결과 사무 종사자가 28.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종사자 27.0%, 판매 종사자 22.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3%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6.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0%, 500만원 이상이 28.7%, 소득 없음이 0.6%로 나타났다.

나.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성 응답자 중 72.0%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4.3%, '전혀 모른다'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69.7%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15.6%가 '전혀 모른다', 14.7%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경

로 알게 되었는지 가장 많이 접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5%가 'TV'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인터넷, SNS'로 26.4%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여성의 64.9%와 남성의 62.1%가 'TV'를 통해, 여성의 25.6%와 남성의 27.2%가 '인터넷, SNS'를 통해 정부의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다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여성 90.0%, 남성 90.6%),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여성 90.0%, 남성 90.6%),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이다'(여성 86.8%, 남성 86.1%)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여성 63.6%, 남성 63.7%),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친고죄 폐지)으로 변경되었다'(여성 66.5%, 남성 68.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2)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68.0%)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입소시설)'(49.8%), '여성긴급전화 1366'(49.0%),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45.0%),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제도'(43.7%)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25.9%)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27.4%)에 대한 인지도는 20%대로 다른 공공서비스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9년에 처음 포함된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제도'에 대해 여성은 31.6%가, 남성은 29.0%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조사결과를 2013년, 2016년과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13년 43.2%, 2016년 44.3%, 2019년 49.0%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는 2013년 35.2%, 2016년 35.4%, 2019년 45.0%로, 매 조사마다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2013년 25.7%에서 2016년 20.5%로 인

지도가 감소했으나, 2019년에 35.2%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 순위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다. 3순위부터는 순위별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3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4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3순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순위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5순위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로 응답하였다. 6순위는 남녀 모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7순위로 여성은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남성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성폭력 관련 인식

1)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2019년 조사에서는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해 1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문항의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53.2%)',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52.3%)'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3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은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39.9%)',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7.0%)',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36.2%)',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32.7%)' 4개 항목이다. 앞서 언급된 항목 중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목은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30% 이상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항목에서도 40%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는 항목에 52.6%가 그렇다고 응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50% 이상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폭력 관련 인식 항목 15개 항목을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15개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10%p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2개 항목으로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에 여성은 26.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38.8%가 ‘그렇다’고 응답해 12.7%p 차이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의사표시에 대해 남성이 좀 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항목에서는 여성은 46.4%, 남성은 57.9%가 ‘그렇다’고 응답해 11.5%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성폭력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남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3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성관계에 동의 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에 8.4%가,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에 7.4%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촬영물 범죄에 있어 성관계의 동의가 촬영에 동의가 아니라는 점, 촬영에 동의가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항목에 20.5%가 ‘그렇다’고 응답해 불법촬영물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있음이 나타났다.

2)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은 2019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현재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로 문항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을 7점 척도(매우 감소했다(1점), 그대로이다(4점), 매우 증가했다(7점))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가 4.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

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미투 운동의 영향과 이를 통한 성의식의 변화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미투 운동과 그 영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증가했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이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잘 되지 않음(18.3%)’,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16.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7점 만점에 평균이 5.0점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평균은 5.2점, 남성 응답자의 평균은 4.8점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 모두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있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총 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73.2%,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3.9%, ‘택시,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62.0%,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58.1%,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48.6%,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46.5%,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45.8%,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41.7%,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34.3%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20.6%,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13.4%,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13.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2.6%,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2.1%, '택시,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11.2%,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1.0%,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11.0%,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10.7%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항목에서 여성은 73.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은 13.4%가 '그렇다'고 응답해 약 60%p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폭력 피해실태

1) 성폭력 피해 발생률

가)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지난 1년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0.7%, 음란전화 등 수신 2.0%,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0.6%, 성희롱 0.8%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2.3%, 성기노출 0.1%로 나타났으며,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불법촬영, 성희롱의 경우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간미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유형은 여성 응답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험한 피해유형 중 음란전화 등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율이 높았고, 그 외 피해유형에서는 여성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 평생 성폭력 피해율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나눠서 보면 여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7%, 강간미수 0.6%, 강간 0.2%였고,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수반 모두),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18.5%였다.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성기노출 등 22.9%, 성희롱 9.8%였다. 남성의 경우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2%,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1%, 음란전화 등 10.5%, 불법촬영 0.1%, 성기노출 등 1.9%, 성희롱 1.6%였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피해 경험 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모든 유형에서 피해율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및 수반),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성기노출 등, 성희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간, 강간미수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유형은 여성 응답자에게서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전화 등에서만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율이 0.1%p 높았고, 그 외 피해유형에서는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의 경우 여성 17.9%, 남성 1.2%, 성기노출 등의 경우 여성 22.9%, 남성 1.9%, 성희롱의 경우 여성 9.8%, 남성 1.6%로 성별 피해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가) PC,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음란 전화 등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2.1%, 35세~50세 미만 23.7%, 19세 미만 14.8% 순이었고,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18.0%, 없는 비율 80.8%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빈도에서는 2~4회 9.0%, 1회 5.7%, 10회 이상 2.5%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유형(복수응답)에서는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43.8%,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42.9%,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받음’ 36.7%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6.3%,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3.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6.9%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49.0%, 35세~50세 미만 27.7%, 19세 미만 12.4% 순이었고,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20.9%, 없는 비율은 78.3%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빈도는 2~4회 8.5%, 1회 6.4%, 10회 이상 4.0%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에서는 ‘불

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음' 53.0%, '쪽지나 댓글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 36.9%, '전화, 음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함' 30.5%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전혀 모르는 사람 65.2%,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36.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14.8% 순이었다.

나) 불법촬영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4.6%가 가장 높고, 35세~50세 미만 17.9%, 19세 미만 13.4% 순이었다. 지난 1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 없는 경우는 85.2%였으며,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74.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4.6%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다.

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

불법촬영물 유포에서는 남성 응답자 중 피해 경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였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49.0%,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45.6%, '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12.4%,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6.1%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51.8%,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48.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38.5%였다.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복수응답)는 '인스턴스 메신저' 5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38.5%, '블로그' 33.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5.5%, 'P2P 사이트' 6.9% 순이었고, '기타' 응답도 16.8%가 있었다.

라) 성기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노출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69.6%, 19세~35세 미만 23.6%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8.1%, 3회 이상 31.3%, 2회 30.6%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및 학교 주변 59.0%,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39.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0.6%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 57.6%, 19세~35세 미만 30.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1.5%, 2회 30.7%, 3회 이상 27.8%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학교 주변 39.1%,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23.2%, 인구 밀집 상업지 17.8% 순이었다.

마) 성희롱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8.4%, 19세 미만 24.2%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49.5%, 1회 25.4%, 2회 25.0%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113.3%, 전혀 모르는 사람 35.1%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인구 밀집 상업지 49.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3.0%,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9.2%, 학교 및 학교 주변 25.9%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82.9%, 19세 미만 16.0%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3회 이상 68.6%, 1회 16.1%, 2회 15.3%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103.1%, 전혀 모르는 사람 10.4%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30.9%, 인구 밀집 상업지 22.3% 순이었다.

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2%, 19세 미만 32.4%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37.7%, 2회 32.4%, 3회 이상 29.9%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전혀 모르는 사람 81.1%,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29.4% 순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81.0%, 인구 밀집 상업지 20.9%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 기준으로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6.5%, 19세 미만 24.8%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44.6%, 3회 이상 33.4%, 2회 21.9%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83.7%, 전혀 모르는 사람 37.0%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35.8%, 인구 밀집 상업지 34.5%,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22.5% 순이었다.

사)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피해 경험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8.4%, 19세 미만 22.8% 순으로, 35세 미만이 대다수였다. 피해 횟수는 1회 50.2%, 3회 이상 26.4%, 2회 23.4%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1.8%, 전혀 모르

는 사람 19.4% 순이었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인구 밀집 상업지 46.7%,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28.5%, 집 18.0%,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10.4% 순이었다.

아) 강간미수 피해 경험

남성 응답자 중 강간미수 피해 경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67.4%, 19세 미만 25.5%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73.3%, 2회 20.0% 순으로 1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68.7%, 전혀 모르는 사람 31.3%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42.4%, 집 23.9%, 인구 밀집 상업지 19.5%,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15.1% 순이었다.

자) 강간 피해 경험

남성 응답자 중 강간 피해 경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 피해 연령은 19세~35세 미만 59.0%, 19세 미만 28.3%, 35세~50세 미만 12.7% 순이었고, 피해 횟수는 1회 58.9%, 2회 21.1%, 3회 이상 20.0%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80.9%, 전혀 모르는 사람 17.7%, 친인척(가족포함) 12.7%였다.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집 45.2%, 인구 밀집 상업지 42.8%,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13.5% 순이었다.

마. 성폭력 피해 영향

1) 신체적 문제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신체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6.9%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고, 3.1%는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3.7%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성 응답자 중에서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였다.

신체적 문제를 입었던 경우에 대해 신체적 문제의 내용(복수응답)을 여성 응답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통 경험 57.3%, 수면 장애를 겪음 49.3%, 신체부위(성기 제외)에 상처를 입음 14.9%, 섭식장애를 겪음 8.3%, 성기에 상처를 입음 6.2%, 복통 경험 4.7%, 성병에 걸림 2.4%, 임신 1.1% 순이었다.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 9.1%가 병원치료를 받았고 90.9%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은 비율은 낮았다. 신체적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치료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 10.6%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렸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시간적 손실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시간적 손실 기간을 살펴보면, 2주 미만 37.9%, 2주~4주 미만 35.2%, 4주 이상 26.8%로 나타났다.

2) 정신적 영향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7%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응답자 중 24.4%가, 남성 응답자 중 7.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여성 응답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의 내용(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4%,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2.6%, '계속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생각이 남' 26.8%, '불안 및 우울' 20.7%,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13.1%,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11.8%,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0.2%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수치심/모욕감' 59.2%, '불안 및 우울' 30.1%,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27.3%,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4.9%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경험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3.4%, 남성 응답자 중 6.5%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 심리치료 및 상담 84.3%, 약물 치료 29.0%,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22.2% 순으로 나타났다.

3) 2차 피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11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

고 질문하여 2차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6.3%,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6.2%,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6%,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3.8%,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3.7%,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8%,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2.6% 순이었다.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7개 문항에 대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생활하는 중에 2차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4%,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0.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0.8%,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0.6% 순이었다. 남성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1.8%,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1.6% 순이었고,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나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를 경험한 남성 피해자는 없었다.

4)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제시된 16개 항목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했지만, 남성은 10개 항목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27.3%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고, 남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49.8%,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2.9%,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19.5%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다.

바. 성폭력 피해 대응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방법(복수응답)으로 여성의 경우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64.1%, '소리를 질렀다' 22.1%, '화를 냈다' 17.6%, '몸을 빼거나 화제를 돌렸다' 13.7%,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11.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59.9%,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16.8%,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갔다' 14.9%, '화를 냈다' 13.5%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 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9%,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5%,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11.1%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가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2.3%,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23.5% 순이었다.

2)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61.7%가 본인인, 40.1%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경찰 수사단계 및 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험했다는 응답이 여성은 40.1%이었다. 수사/사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여성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음' 57.1%,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음' 46.0%, '불쾌함/수치심을 느낌' 45.9% 등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경험한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2.4%,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5% 순으로, 남성 응답자의 경우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9.0%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관련 기관 및 주변을 통한 대응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각 대상별로 도움 요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이웃이나 친구’ 61.7%, ‘가족이나 친척’ 39.6%, ‘선후배’ 16.7%,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7.1%,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7.0%,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2.7%, ‘여성긴급전화 1366’ 2.1%, ‘해바라기센터’ 1.8%,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웃이나 친구’ 52.7%, ‘선후배’ 43.2%,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18.3%, ‘가족이나 친척’ 14.0% 순이었고, 이 외 성폭력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성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6.4%,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22.0%,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14.9%,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각각 18.0%,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1.4% 순이었다.

2. 정책제언

가.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생 동안의 경험을 기준으로 불법촬영 피해율이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6년에 촬영과 유포를 하나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지만 2019년에는 촬영과 유포를 따로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율은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과 수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18년부터 시행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다른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

조사결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에서 60% 이상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혼자’ 있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안전’ 관점에서 선제적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과 조치를 막고, 피해 신고 의지를 약화시킨다.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대응이 요구되며,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성폭력 피해를 가중하는 무거운 범죄임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 양상을 파악하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지원 정책 내실화

이번 조사를 통해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40% 이상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성폭력 피해를 겪었으나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8%가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라고 응답하여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 지원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경로 조사결과에서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공익광고 송출 등 TV 매체 활용과 더불어 SNS 홍보,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여러 플랫폼으로의 홍보 경로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피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인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4) 성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격차 해소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인을 찾던 가부장적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성폭력에 있어 왜곡된 인식이 나타나며 특히 여성과 남성 간 인식에 격차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항목에서는 여성은 46.4%가, 남성은 57.9%가 ‘그렇다’고 응답해 11.5%p 차이를 보인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성폭력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보이나 그 정도가 남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은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을 야기하는 위험한 요인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성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5) 중장기적 관점의 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체계 구축

UN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접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은 국가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국가계획 수립 시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지속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 둘째,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보장할 것, 계획 수립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구조를 갖출 것, 셋째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행정·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끝으로 여성폭력 감소의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세부계획, 재정지원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를

국가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미투 이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폭력 현안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여성폭력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속적 정책과제 개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향후 실태조사 개선방안

1) 성폭력 실태조사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대응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data)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폭력의 경험자들은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으며 중복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조사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중복피해의 결과를 밝혀낼 수 없다. 각 폭력에 대한 중복 피해의 경험률이나 성폭력 유형별 2차 피해의 차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발생현황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 가는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9년도의 조사에서는 피해 이후의 2차 피해를 알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문항이 개발되었다. 2차 피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피해경험의 과소추정 문제 해소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꾸준히 표본 수를 늘려왔으나, 피해 경험 유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 설계의 한계 때문에 피해율이 과소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2016년도 조사대상수 7,000명을 2019년에는 10,000명으로 증대했다. 그러나 아직은 피해율이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30,000명 정도까지 표본수를 증대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성폭력 피해율의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성폭력 조사 문항은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의 특정한 피해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 여부를 피해자가 쉽게 드러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가 어떤 유형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작아질 수 있다. 이것이 성폭력실태조사의 피해경험률이 상담소의 상담건수나 경찰의 성폭력 발생건수와 비교할 때 낮게 나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피해 경험의 과소추정을 해결하고 가능한 현실성 있는 피해율을 조사에서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 경험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선별(screening)문항을 개발하고, 이 피해추정문항의 결과와 기존조사의 피해경험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현황 파악 방안 마련

현재의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19세~64세 이하의 성인 인구를 조사대상이 정해져 있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현황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촬영과 유포가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18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2014-2018) 「범죄통계」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11.14.)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7.09.26.)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7.11.28.)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02.22.)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발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02.27.)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마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03.0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01.24.)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 대검찰청(2018) 「2017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2017) 보도자료 “젠더폭력범부처종합대책 1차회의 개최” (2017.07.31.)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폭력 상담소 현황」
-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4월 성폭력 상담소 현황」
- 여성가족부(2018) 「2019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2019)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 상반기 피해영상물 4만
6천여 건 삭제 지원” (2019.08.27.)
-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 지침」
- 최준혁(2019).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토론문 1.”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움 자료집,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pp.69-80
- 황정임·안상수·주재선·김동식·정수연·권인숙·이경환·윤수경(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황정임·박선영·주재선·안상수·동제연·신상숙·이영희(2018) 「2018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

가족부

황지태·김지영·박희정(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대검찰청

2. 해외 문헌

UN Women (2012)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3.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최종 검색일: 2019.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최종 검색일: 2019.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최종 검색일: 2019.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최종 검색일: 2019.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최종 검색일: 2019.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16086,20181224\)](http://www.law.go.kr/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16086,20181224)) (최종 검색일: 2019.12.1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최종 검색일: 2019.12.20.)

UN Women <https://www.unwomen.org/en> (최종 검색일: 2019.11.22.)



부 록

■ 부록 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지

221

부록 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지



승인번호
제 154012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No.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사용하고자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8월

- ♣ 본 조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승인(협의)통계입니다.
-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표본가구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조사표 기입방법	① 자기 기입식		② 조사원 면접식				

주 소	사도	사군구	읍면동	번지	공동주택명	동호수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 수			

조사 주관



여성가족부

조사 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실사 기관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기영 차장, ☎ 02-3702-2696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적어주세요 : _____)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주원 응답**은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I.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인식, 서비스 욕구

1 귀하는 정부가 성폭력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3 페이지 **3** 항목으로 이동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1 그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가장 많이 접한 **1**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TV
- ② 라디오
- ③ 인터넷, SNS
- ④ 신문, 잡지
- ⑤ 성폭력 예방 교육
- ⑥ 대형 전광판
- ⑦ 관련 기관 소식지/발행자료
- ⑧ 지인(친·인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귀하는 다음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항 목	안다-	모른다
(1)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친고죄 폐지)으로 변경되었다	①	②
(2)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이다	①	②
(3) 성폭력 피해를 위한 성폭력전담 경찰/검사/판사가 있다	①	②
(4)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①	②
(5)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①	②
(6)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	①	②

3 귀하는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 류	항 목	←----- 보통 이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범죄 예방	(1)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법은 CCTV 설치, 안전벨 설치, 방범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사기관의 개선	(4)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수사기관의 성 인지 감수성 강화 ※ 성 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처벌 수준 강화	(6) 수사기관 내 성폭력 전문 전담인력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가해자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해자 보호	(8) 불법촬영물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적 인식 개선	(10)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시민 대상 성 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감소했다			←----- 그대로이다 / 변화 없다 -----→				매우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항목으로 이동					
<p>4-1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성폭력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됨 ②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신고 증가 ③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성폭력 전과자 감시 강화 ④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정의의식 변화 ⑤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p>					<p>4-2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 ②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 ③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사가 잘되지 않음 ④ 성 갈등, 여성 혐오 확산 ⑤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p>			

5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사회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어느 쪽도 아니다 -----→				매우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귀하는 다음 성(性) 관련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2)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3)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5)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6)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①	②	③	④
(7)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8)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9)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1)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12)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는 편이 낫다	①	②	③	④
(13)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	①	②	③	④
(15)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경우 피해를 입은 촬영 대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귀하는 다음 범죄피해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예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2)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3)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4)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5)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①	②	③	④
(6)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7)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①	②	③	④
(8)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9)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8

귀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음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항 목	안다	모른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전화	①	②
(2)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지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①	②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소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 및 자활 교육, 취업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	①	②
(4)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	①	②
(5)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건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①	②
(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제도	①	②
(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번호인 제도	①	②
(8)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함	①	②
(9) 성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①	②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지원을 하는 기관	①	②

9-5 지금까지 주로 어떤 경로에서 위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 ③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 ④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자인사이드 등)
- ⑤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온 등)에서의 댓글(각종 뉴스, 기사 등)
- ⑥ 이메일
- ⑦ 문자 및 전화
- ⑧ 게임 사이트 및 게임채팅
- ⑨ 채팅 어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소개팅 앱 등)
- ⑩ 1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트위치 등)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9-6 귀하가 가장 빈번하게 많은 시간동안 이용하시는 매체를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 ③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 ④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자인사이드 등)
- ⑤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온 등)에서의 댓글(각종 뉴스, 기사 등)
- ⑥ 게임 사이트 및 게임채팅
- ⑦ 채팅 어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소개팅 앱 등)
- ⑧ 1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트위치 등)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9-7 이 일을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 ~ 2019년 7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8페이지 10 항목으로 이동

9-7-1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 ~ 2019년 7월)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 ① 1회
- ② 2~4회
- ③ 5~9회
- ④ 10회 이상

20 귀하는 지금까지 9 ~ 17 항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9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10 불법촬영, 11 불법촬영물 유포, 12 성기노출 등 성적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노출행위, 13 성희롱 항의 피해 경험만 있는 경우는 항목 (1), (2)에서 비해당에 응답)

항 목	있다	없다	비해당
(1) 끝까지 저항했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①	②	③
(2) 가해자를 스스로 따라갔다는 건 네가 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성폭력이 아니다	①	②	③
(3)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줘야 너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①	②	
(4)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①	②	
(5) 네가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①	②	
(6) 네가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①	②	
(7)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①	②	
(8) 회사(학교)를 잘 다니는 걸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①	②	③
(9)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①	②	③
(10)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11)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21 귀하는 지금까지 9 ~ 17 항의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있다	없다	비해당
(1)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①	②	
(2)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①	②	
(3) 나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나의 탓을 하거나, 나를 폄평하는 듯한 글 혹은 댓글을 보았다	①	②	
(4)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5) 파면, 해임, 해고 및 감봉, 강등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①	②	③
(6)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7) 나에게 퇴사 혹은 전학을 강요하였다	①	②	③

22

귀하는 9 ~ 17 항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에 대응을 했습니까?
 귀하께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대응을 한 경험이 있다면 "① 예"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22-1 그럼,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 ② 소리를 질렀다
- ③ 발고 애원하거나 설득하려 했다
- ④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했다
- ⑤ 무기나 물건 등을 가지고 대항했다
- ⑥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했다
- ⑦ 경찰이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⑧ 경찰이나 경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⑨ 화를 냈다
- ⑩ 몸을 빼거나 화제를 돌렸다
- ⑪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려 했다
- ⑫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갔다
- ⑬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②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2-2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 ③ 술이나 잠에 취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 ④ 공포심에 몸이 굳어서
- ⑤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나 상해를 입을 것 같아서
- ⑥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 ⑦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 ⑧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몰라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25 항은 모든 성폭력 피해 중 하나 이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모든 사람이 응답합니다.

25 귀하는 지금까지 9 ~ 17 항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4 페이지 D-1 항으로 이동

25-1 그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 ②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 ③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 ④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 ⑤ 혼자서 밖을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겼다
- ⑥ 다니던 직장(학교)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 ⑦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 ⑧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
- ⑨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헤어졌다
- ⑩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
- ⑪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 ⑫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⑬ 활동하던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예전처럼 하기 어려워졌다
- ⑭ 기존에 활동하던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 ⑮ 교회나 절을 다니는 등 종교 활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다
- ⑯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성명	
	전화번호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짜	2019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총 ()분간 응답	

에디팅(editing) 및 검증 기록표

조사원	성명					
	I D					
	1차(현장)에 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감독원	성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명					
	I 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2019년 12월 11일 인쇄

2019년 12월 13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999-12